

- 국민행복을 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案

2014. 8

관계부처 합동

◇ 현재 우리사회는 글로벌 저성장, 급속한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 심리는 다시 저출산, 저성장, 저소비로 연결
- '20년 전후 인구변동이 본격화되기 전 향후 10여년의 대응이 매우 중요

◇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불안 요인의 해소가 필수적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 추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8% 정도에 불과,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의 정서적·육체적 건강 및 가치관과 공동체의 상황에 의해 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월)

목 차

I. 수립배경 및 그간 정책 평가	1
II.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10
III. 기본방향	21
IV. 주요 정책과제	29
IV-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31
1.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 32	
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54	
3.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 78	
4.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 99	
IV-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26
IV-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54
V. 자원규모 및 조달방안	177
〈별 첨〉 과제별 소관부처	181

I. 수립배경 및 그간 정책 평가

1. 수립 배경

2. 그간 정책 평가

1

수립 배경

-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13.1)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비교〉

구 분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 기본계획
성 격	장기방향으로서 구속력 약함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 강함
내 용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전달체계 등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전달체계, 소요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
타 계획과의 관계	없음	개별계획보다 우선
시행계획	추진방안(연도별 목표 없음)	연도별 목표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역계획	없음	기본계획과 지역계획간 연계 강화

-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부문별·사업별 분절적 제도 운영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 * 69조('08) → 80조('09) → 81조('10) → 86조('11) → 93조('12) → 97조('13) → 106조('14)
 - 국민소득 2만불 돌파 등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생활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안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사회 활력과 국민 행복을 저하
 - *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는 10위권, 행복 순위는 32위(OECD 국가 삶의 질 구조 연구, '12.7)
 - *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 경제부문은 양호하나, 사회통합(복지지출 등)은 취약(기재부, '12.5)
 -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효과적,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설계 필요
 -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 이를 통해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국정운영방향을 실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추진 경과 》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13.1.27, 시행)으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 추진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13.2~11월, 보사연)
 - 그간 5년간 사회보장 분야(소득보장, 고용·일자리, 교육, 사회서비스 등) 정책평가 및 향후 5년간 핵심과제 발굴 추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기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민관합동기획단 구성·운영(‘13.5~12월)
 -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절차 등 추진계획 보고(‘13.5.14)
 - 민관합동기획단 및 분야별 TF 구성·운영(‘13.5~12월)
 - 민관합동기획단 총괄분과 회의(‘13.5~11월, 9차)
 - 민관합동기획단 분과장 회의(‘13.6.5, 8.13)
 - 민관합동기획단 분과별 회의(‘13.6~11월)
 - * 총괄분과 외 전달체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 등 7개 분과 운영
- 사회보장기본계획 초안 작성 및 정부 내 협의
 - 사회보장기본계획 초안 부내 협의(‘13.12~‘14.1, ‘14.5), 부처협의(‘14.1~2, ‘14.5)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4.5.20)

1. 사회보장정책 변천 과정

□ 제도 도입기('61~'87)

- 성장을 통한 극빈층 빈곤탈출 목적으로 생활보호법('61), 의료보호법('77) 등 공적부조와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등 사회보험 제도 도입
- 아울러, 사회취약 계층인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률 마련
 -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제도 확대기('88~'99)

- 복지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더불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국민연금 도입('88), 4대보험 전 국민 확대, 영구임대주택을 통한 주택복지정책 등 시작
- 문민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 복지구상' 발표, '삶의질과 복지'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
-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한시적 생활 보호 제도와 공공근로사업 실시

□ 제도 정착기('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확대('00), 건강보험 통합('00) 등 사회통합과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위한 제도 도입
- 사회투자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05),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07), 사회서비스 바우처('07), 노인장기요양보험('08) 등 제도 도입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확대
- 국가와 사회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제할 때 개인이 일을 통해 능동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로장려세제(EITC, '09) 시행

2. 주요 성과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주요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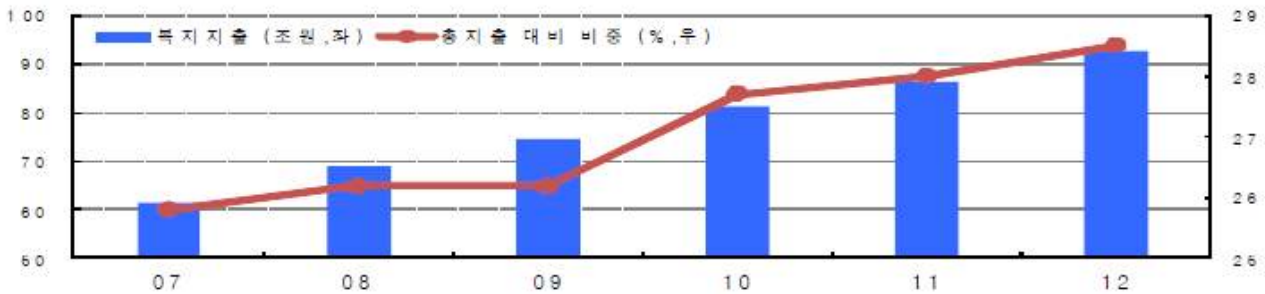
-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 고용보험('95), 국민기초생활보장('00), 노인장기요양보험('08), 기초노령연금('08) 등 주요 제도를 도입

<주요 복지제도 도입현황 >

사회안전망	주요 제도	시행
1차 안전망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 '77년 시행, '89년 전국민 확대
	• 산재보험	• '64년 시행, '00년 1인이상 사업장 확대
	• 국민연금	• '88년 시행, '99년 전국민 확대
	• 고용보험	• '95년 시행, '98년 1인이상 사업장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 '08년 시행
2차 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 정부수립 후 각종 사회복지시설 확충, • '06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 '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 '00년 시행('61, 생활보호법 제정)
3차 안전망 <공공부조>	• 의료급여	• '77년 시행, '00년 확대 개편
	• 긴급복지지원	• '06년 시행
	• 기초노령연금	• '08년 시행
	• 장애인연금	• '10년 시행

□ 제도 확충과 함께 복지에산도 빠르게 증가

- 2008~2012년 복지지출 증가율(8.1%)은 총지출 증가율(6.1%)을 상회



- 부문별로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노인·청소년 부분의 증가율이 최고 수준

* 노인·청소년 : ('07) 7,000억원 → ('12) 41,000억원 (연평균 40.1% 증가)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도입 등으로 보육·가족·여성 부분의 증가율이 높은 상황

* 보육·가족·여성 : ('07) 12,000억원 → ('12) 34,000억원 (연평균 22.7% 증가)

□ 확대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만0~5세 영·유아 전계층으로 확대

* 수혜아동수(유치원비·양육수당 포함) : ('08) 996천명 → ('12) 2,248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08.7),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08)214천명→('12)342천명 , 기초노령연금 : ('08)290만명→('12)389만명

○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확대

*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소득 월 266만원('11) → 월 379만원('12)

-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도입('10.7)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 ('10) 21만명 → ('12) 31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 ('10) 29천명 → ('12) 38천명

- 취업 애로계층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제공

* 참여자 수(명) : ('09) 9,082 → ('10) 25,228 → ('11) 63,967 → ('12) 74,787 → ('13) 102,710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 주거 등 지원 강화

-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LC) 도입('10)

* 금리(%) : ('08.2) 7.8 → ('09) 7.3 → ('10) 5.7 → ('11) 4.9 → ('12) 3.9 → ('13) 2.9

- 보금자리주택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무주택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07) 48,800억원 → ('11) 67,700억원, 약 18만3천가구

-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완화 등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암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10→5%, '09.12), 희귀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20→10%, '09)

□ 복지전달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10.1)으로 복지자원의 누락, 중복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확충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참고)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정책 〉

정부별 (대통령)	3,4 공화국 박정희	5 공화국 전두환	6 공화국 노태우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이명박 정부
	(1960~1980)	(1981~1987)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정책기조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사회보험	산재보험(1964)			고용보험(1995)	산재/고용보험적용 확대(2000~05)		
	건강보험(1977)	건보 확대	전국민건강보험 (1989)		의약분업(2000) 건보통합(조직 2000, 제정 2003)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공공부조 국가보훈	공무원연금(1960) 국민연금(63 분리) 사학연금(1975)		국민연금(1988)	국민연금 확대	전국민 국민연금 기반구축(1999)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인하 등 2007)	「공무원연금법」 개정(2009)
	생해보호제도(1982) 국가보훈(1982) 의료보호제도(1977)	생보대상자 직업훈련(1981) 영세민종합대책 (1982)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1987)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택 공급(1989)		경로연금(1998)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2000)	「기초노령연금법」 (2007)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 2004) 장애수당확대(2005) 보육 확대(2004)	기초노령연금(2008) 장애인연금(2010)
사회 서비스	가족계획사업(1982)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발표 (1978)	노인복지기반미련 (1981) 재가노인복지사업 (1987)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구성(1989) 장애인등록제도 (1988)	공중보건, 건강증진정책 확대(1995)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1995)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1998)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대응(2005) 사회서비스일자리 (2004)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 다문화가족지원센 터(2006)	5세아 누리과정, 0~2세아 무상보육 (2012)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확대(ALMP, 2008)
교육비 지원							튼튼한 학자금 대출(OL, 2010) 맞춤형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2012)
조세지출							근로장려세제 (EITC, 2009)
참고사항	「군사원호법」 (1950, '61폐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급자 특별법」 (1962, '84폐지) 「의료보험법」 (1963) 「국민복지연금법」 (1973)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 복지법」(198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1986) 「국민연금법」 전 부개정(1986)	장애인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률(1990)	「삶의 질 세계화 국민복지기본구상」 발표(1995) 「고용보험법」 (1993) 「지역보건법」 (1995) 「국민건강증진법」 (1995)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제시(1999)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인전망 기본틀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0) 「국민건강보험법」 (1999) 「건보재정건전화 특별법」(2002~06)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004.2) 「미진 200」 발표 (20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일부 복지사업 지방이양(200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2006)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장애인차별금 지법」(2012)	「휴먼뉴딜」 발표 (미래기획위원회) 원전노령연금 수급자 발생(2008) 예·취복지기반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2) 「협동조합기본법」 (2012)

자료 : 최병호 외,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p.35에서 재인용.

-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빈곤층 생계보장 미흡하고, 노후 대비가 부족한 현세대 노인 빈곤율이 심각(45.1%; OECD 13.5%)
 - *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 중 비수급자 약 117만명 (보사연, '10년 빈곤실태조사)
 - 사회보험의 짧은 도입기간, 낮은 적용범위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각종 위기시 계층 하락의 위험에 노출
 - * 기초수급자 전락사유 : ①실직(29%), ②수입감소(22.2%), ③의료비(18%) 順
 - * 국민연금 수준 : 65세 이상 노인중 수급자 20%, 연금액 236천원(필요자금의 12.9%)
 - 임시·일용 근로빈곤층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상당한 규모
 - * 비정규직의 62%, 자영업자의 34%가 국민연금 미가입(통계청, '10년)
-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서비스 질 문제도 지속
 - 생애주기에 따라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는 영역 존재(건강관리, 간병 등)
 -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중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건강 포함)은 4.9%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서비스 7.9%, 현금 10.9%)의 62% 수준 ('07년)
 - 민간 공급자에 서비스 공급을 주로 의존하여 왜곡된 공급 행태 발생,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 질 관리 소홀
- 사회정책 분야간 통합·연계 결여로 인해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거시문제와 국민불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
 - 복지, 교육, 노동 분야 등의 각 정책이 정부조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현안 해결 및 부분적·단편적 해법에 치중
 -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등 전달체계 개편 성과가 있으나, 사업 간 칸막이로 인해 각종 급여·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체감도 제고에 한계

[참고] 제1~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의 평가

□ 경 과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등 사회보장정책의 제 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 2차 계획:5개 분야 124개 과제; 3차 계획:16개 분야 163개 과제
- 특히, 제3차 계획에서는 문화, 교육, 고용, 여성 등 관련 부처의 복지 관련 제도 등을 포함하여 범부처적 장기비전 수립

□ 평 가

- 정책발전 과정에서 시의적절한 중점과제의 발굴 미흡
 -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 위주 지표 부재로 과정(투입) 중심의 관리와, 소요재원에 대한 언급 부재 등으로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곤란
 - * '1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시 53개 중점과제 중 우수 이상을 받은 과제는 38개(71%)
 -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과제로 인해 중산층 대부분이 배제되어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에 한계
- 5년간의 추진과제가 확정·제시된 후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른 계획의 개선·보완 미흡
 -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와 시행과제간 적합성과 연계성 고려 미흡
 - * '11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용역에서 사업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된 사례, 해당분야의 정책방향과 시행과제간 연계성 부족 등에 대한 지적
-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관련 복지제도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음
 - 정책간 정합성 및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계획이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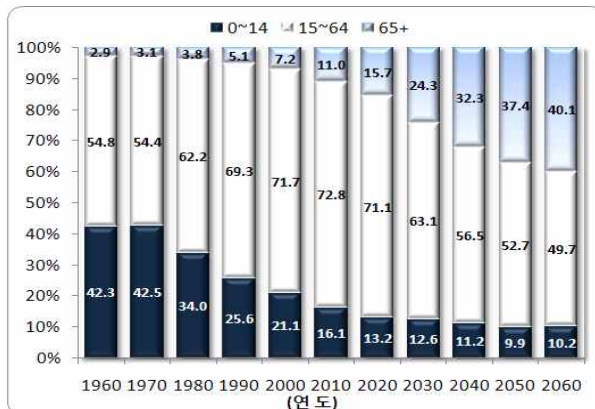
Ⅱ.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1. 향후 5년간 정책 여건
2. 국민입장에서 본 불안요인

1. 인구구조의 변동 및 사회적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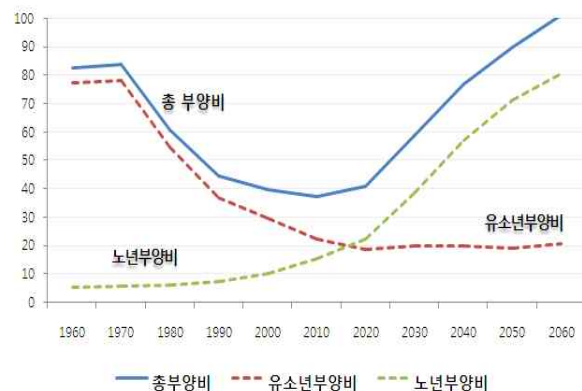
- '17년은 고령화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해가 됨
 -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31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
 - * 합계출산율(명, 통계청) : ('05) 1.08 → ('10) 1.23 → ('11) 1.24 → ('12) 1.30
 - '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로 진입하고, 유소년(0~14세) 인구의 감소로 '17년경 인구역전 현상도 발생 가능
 -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 ('10) 68.4명 → ('17) 104.1명 → ('30) 193명
- '20년 이후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본격적으로 직면할 전망
 - 인구감소에 따라, 총부양비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복지지출은 증가해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
-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높지 않은 '인구보너스(Bonus)'시대가 지속될 전망
 -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 젊은 세대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

<인구구조 전망>



* 출처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인구구조에 따른 부양률 변화 추이>



2. 경제적 · 사회적 불안

□ 복지지출의 지속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확대

○ 최근 소득분배의 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 상대빈곤율(% , OECD) : 네덜란드 7.2, 프랑스 7.2, 스웨덴 8.4, 독일 8.9, 한국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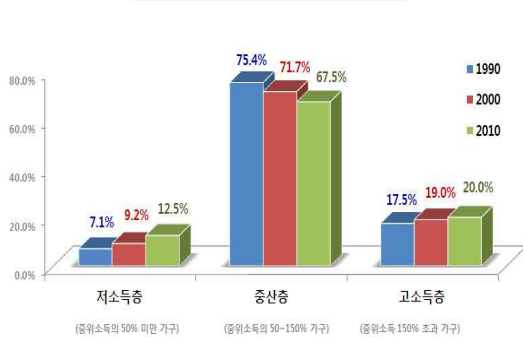
○ 특히, 1인가구(빈곤율 50.1%), 취업자 없는 근로연령층 가구(빈곤율 55.1%), 65세 이상 노인층(빈곤율 49.4%) 등의 취약계층에서 빈곤이 더욱 심화

□ 중산층 규모의 감소 및 가계지출구조의 변화

○ 중산층 가구 비중은 지난 20년간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 가구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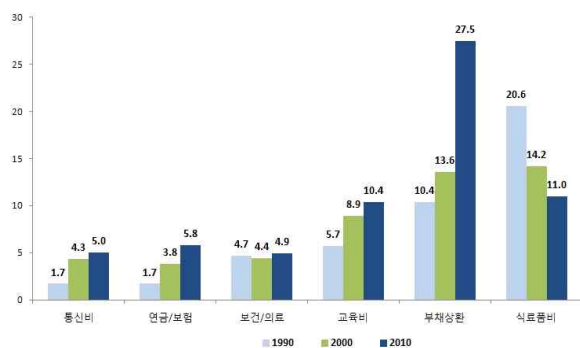
○ 중산층 가구의 인적구성도 변화(제조업/남성 외별이 → 서비스업/맞벌이)되었으며, 가계부채 급증, 사교육비 부담으로 적자가구 비중 증가('90. 15.8% → '10. 23.3%)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2인 이상 비농가, 가처분 기준(통계청)

<중산층 가구 지출항목 비중>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11

□ 고용여건의 악화, 노동시장의 이중화 가중 등 고용불안 심화

○ 완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분배개선 효과 (trickle-down effect)는 점차 약화되어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우려

* 청년실업율(%) : ('08) 7.2 → ('10) 8.0 → ('12) 7.5

○ 비정규직 비율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더 좋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고 고용불안도 상존

* 비정규직 비중(% , 통계청) : ('04) 37.0 → ('10) 33.3 → ('12) 33.3 → ('13.8) 32.6

*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정규직=100, 통계청) : ('07) 63.5 → ('10) 54.8 → ('12.8) 56.6

* 사회보험 가입비율(정규직/비정규직, '13.3) : 국민연금(81.3%/40.0%), 고용보험(80.5%/43.9%)

* 비정규직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 50.8%(정규직 22.5%, 통계청, '13.3)

3. 성장잠재력 저하

- 향후 우리 경제는 특별한 계기 없이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세 예측
 - 선진국의 경기회복, 완만한 내수증가로 2013~2017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2.9%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
 - 향후 국내외 금리인상, 선진국 경기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 잠재성장률 전망(KDI, '12.9) : '10년대 4.1%, '20년대 2.8%, '30년대 1.7%

- 민간소비는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 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
 -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소비제약,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 이자지급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2013~2017년 연평균 2.7%)는 경제성장률 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

- 대외여건 개선, 완만한 내수 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소폭 개선
 - 2013~2017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1.4%(36.1만여명) 증가해 지난 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1.0%(25만명)에 비해 0.4%p 개선
 - '14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감소하고, 인구고령화,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사회서비스 부분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 * 전체 일자리 중 보건및사회복지업 비중('12): 한국 5.7%, 미국 12.8%, 일본 11.2%
 - 그러나,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 확대로 취약계층이 증가할 가능성
 - * 자영업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DTI)는 146.1%로 상용근로자(83.7%)보다 높음(통계청, 2013)

〈 참고 : 2013~2017년 국내 경제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 증가율	2.6	3.5	3.7	3.9	3.7
민간소비	1.9	2.6	3.0	3.3	2.9
실업률	3.2	3.1	3.1	3.0	3.3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4. 복지지출과 재정여건의 한계

□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여 보건복지 지출 증가율이 일반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8-'12 증가율
총지출(A)	262.8	301.8	292.8	309.1	325.4	342.0	5.5
보건복지지출(B)	68.8	80.4	81.2	86.4	92.6	97.4	7.7
비중[A/B]	26.2	26.6	27.7	28.0	28.5	28.5	2.1

* 2011년까지 세출결산 기준, 2012년 및 2013년은 확정세출예산 기준

-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고용, 가족·보육 등 생활 안정 정책 관련 지출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불안정성 지속

- 경기부진, 감세정책 등으로 '08~'11년 평균 총조세수입(국세+지방세) 증가율(4.8%)은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7.3%)의 2/3수준

* 총조세수입(조원) : ('01) 121.1 → ('05) 163.4 → ('08) 212.8 → ('10) 226.9 → ('11) 244.7

- 향후 조세수입은 경기 회복세 등으로 경제위기시 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

* 국세수입(조원,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 : ('12) 205.8 → ('13) 216.4 → ('14) 238.9 → ('15) 259.1 → ('16) 280.4

□ 복지지출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지속

- 복지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2.5배 빠른 속도이고, 향후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시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OECD STAT 2010 기준) : 한국 14.2%, OECD 평균 6.3%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문제 등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재원분담 및 지자체의 복지재정부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

* 최근 0~5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갈등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①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규모

○ (총규모) GDP 대비 9.8%('13년) → 29.0%('60년)

(단위 : %)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GDP 대비 %	9.8	12.9	17.9	22.6	26.6	29.0

○ (증가속도) 최근 10년에 비해 점차 완화되나 여전히 빠른 속도

구분	'99~'09	'13~'20	'20~'30	'30~'40	'40~'50	'50~'60	'13~'60
연평균증가율(%)	11.7%	11.2	8.8	6.2	4.9	3.7	6.7

-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과 GDP 증가율 격차) 향후 '10~'30년 기간(3.86p)도 OECD 평균(2.09p, '99~'09)보다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점차 감소할 전망 (1.10p, '30~'60)

○ (사회보험)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일반재정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년에는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80.2%를 차지

(단위 : GDP 대비 %, 구성비)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사회보험분야	6.3(64.6)	9.1(70.4)	13.3(74.4)	17.5(77.5)	21.2(79.5)	23.2(80.2)
일반재정분야	3.5(35.4)	3.8(29.6)	4.6(25.6)	5.1(22.5)	5.4(20.5)	5.7(19.8)

②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별(9개) 구성

○ (지출 규모) 보건·노령 정책영역은 GDP의 6.5%('13) → 24.7%('60)

- 유족, 근로무능력, 실업 정책영역은 '60년에 증가하나 폭은 미미하고, 가족(0.8%→0.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영역(0.6%→0.5%)은 다소 감소

* 유족(0.2% → 0.8%), 근로무능력(0.5% → 0.9%), 실업(0.3% → 0.7%)

○ (지출 구성비) 보건·노령 정책영역은 68.1%('13) → 85.9%('60)

- 근로무능력(5.5%→3.3%), 가족(8.6%→2.0%), 적극적 노동시장(6.6%→1.6%), 실업 정책영역(3.0%→2.4%)은 감소

- ❖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60%)이 높고, 불안정 원인으로 불충분한 소득(33%), 직업불안정성(24%)을 주 사유로 응답(보사연, '12)
- 생활의 걱정거리로 일자리(27.1%), 노후(26.7%), 자녀교육(20.4%), 건강·의료(17.3%) 順

□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2인이상)의 소득은 지난 5년간(2008~2012년) 약 16% 증가하였으나, 교육, 주택, 건강 등 가계지출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
 - * '08년 이후 연평균 교육지출 6.2%, 주택 및 유틸리티 5.4%, 건강지출 4.9% 증가(골드만삭스)
 - * 가계소비지출 구성('12, 통계청) : 식료품 27.8%, 교육비 15.1%, 주거비 12.7%, 의료비 5.8%
-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68.1%)을 갖고 있는 상황
 - * 소득 3분위 적자가구 비중(통계청) : ('03) 9.4% → ('12) 14.4%
 - ** '12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58.5%가 거주주택 마련 등을 위해 평균 6,147만원 금융부채 보유

□ 세대별 취업현황 및 유형은 다르지만 고용여건의 악화는 공통적인 현상

- '08년 이후 청년층(15~29세)과 여성의 고용율은 각각 40%와 50% 전반에서 정체
-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3세로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비정규직 취업과 자영업 진출 확대로 취약계층의 증가 우려
 - *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및 부실채권 비율은 '12.5월 기준 1.17% 및 0.98%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 기록(금융감독원, '12)

〈 연령별 임금근로자 비규정직 비율(통계청) 〉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20~29세	29.6	33.3	32.8	30.9	31.2	31.0	31.7	31.3	31.6	30.5
30~39세	26.3	32.1	30.4	29.8	29.8	26.7	25.2	23.3	24.3	23.1
40~49세	31.2	35.9	36.3	34.1	34.1	31.6	32.3	29.8	30.5	29.1
50~59세	40.0	43.1	42.8	41.9	42.6	39.6	40.6	39.3	39.6	37.6
60세 이상	65.9	67.7	66.7	69.0	66.0	65.7	72.7	69.6	70.5	70.5

주: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시간제근로자+비전형근로자

□ 노후준비 부족으로 은퇴 후 불안 가중

- 40세 이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61.5%이며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36.5%), 부동산(14.1%), 개인연금(14.0%) 순으로 나타남
- 특히, 60대 이상 은퇴 연령의 경우 노후 준비가 부족(47.4%)하여 노후빈곤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11년 기준 한국 45.1%)

<은퇴하지 않는 가구 대상 노후 준비상황>

(%, 세, 만원)

예상 은퇴연령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				
			아주 잘되어 있다	잘 되어있다	보통이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66.0	134	194	1.7	7.3	36.6	33.8	20.6

* 출처 : '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금융위원회·한국은행

□ 보육·교육 부담 증가

-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우리나라 부모의 기대교육 수준은 높은 편

<부모의 기대교육 수준,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2010	1.1	5.8	66.9	10.0	16.2
2012	0.8	6.6	68.6	9.4	14.6

<기대하는 교육 목적>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녀의 취미나 소질 개발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 유리
2010	44.7	9.2	32.0	12.1
2012	50.6	9.5	30.5	8.2

* 출처 :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

-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교육비 부담 주 요인은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로 나타남

<교육비에 대한 인식(30세 이상, %>

	부담 스럽다	부담 정도		보통	부담 스럽지 않다
		매우 부담	약간 부담		
2012년	73.0	31.6	41.4	21.0	6.0
30~39세	63.8	20.2	43.6	30.0	6.2
40~49세	73.2	30.9	42.4	20.6	6.2
50~59세	76.7	37.6	39.1	18.0	5.4
60세 이상	77.4	42.0	35.4	15.0	7.6

<교육비 부담 요인(30세 이상)>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학원비 등)	교재비 (책값 등)	하숙, 자취, 기숙사비
2012년	30.8	64.5	1.3	3.2
30~39세	4.6	93.2	1.1	1.1
40~49세	21.3	75.2	1.4	2.2
50~59세	55.9	37.0	0.9	6.0
60세 이상	69.0	24.8	4.1	2.0

* 출처 :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

□ 건강 및 의료비 부담 가중

○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질환이 되었으며, 가계 의료비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

*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344만명(전체인구의 27.1%)이며, 진료비는 17조 3,741억원(전체진료비의 36.3%)를 차지 [’12년 건보 통계연보]

- 기대수명 증가(11년 기준 81.1세, OECD 평균 80.1세)에 비해,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길고 아픈 노후’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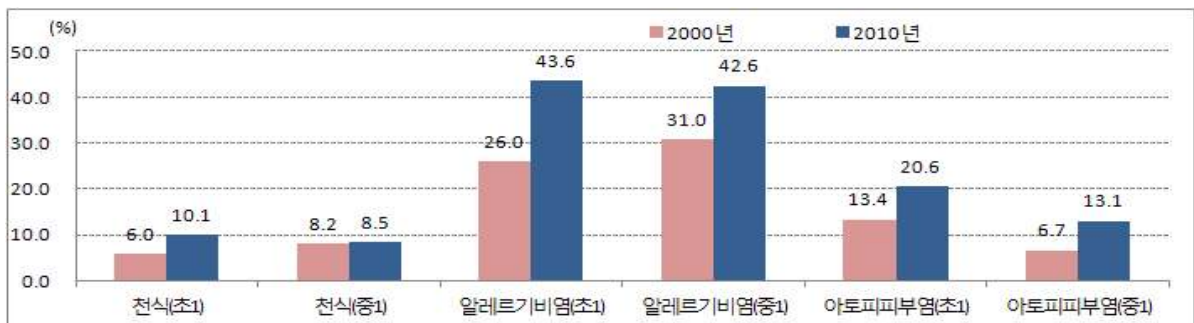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복합유병율 68.3%(보사연, ’12)

○ 직장·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10명 중 7명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 한번이라도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도 9.1%에 달해 정신건강도 악화

* 연령별로는 10대(12.1%), 50대(9.3%)가 높고, 경제적 어려움(39.5%), 가정불화(13.6%), 외로움(13.0%)이 주 요인(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

○ 환경의 영향으로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도 증가 추세

〈초·중학생 아토피질환 유병률¹⁾ 변화: 2000, 2010〉



주: 1) 유병률: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1년동안 각 질병에 대해 증상을 보인 아동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질환 유병률 조사』, 각 년도

○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아, 가계부담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률 격차도 큰 상황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증감(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한국	38.4	48.6	58.2	19.8
	OECD	73.3	71.3	71.8	-1.5
1인당 국민의료비(\$)	한국	325	771	2,035	1,710(526%)
	OECD	1,164	1,888	3,268	2,104(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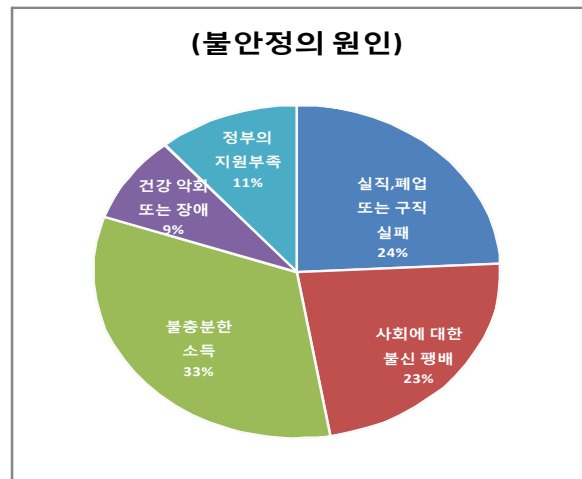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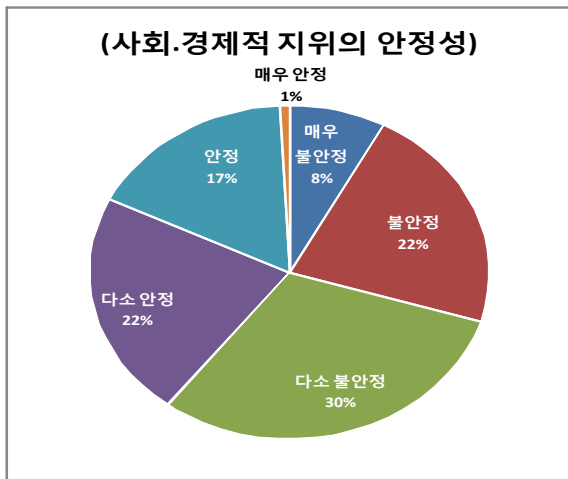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2,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I

-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의 복지인식 분석)
- 조사시기 및 표본 허용오차: '12. 11. 21~ 12. 7, 95±3.1%
- 대상: 일반국민 1,000명(전화), 전문가 100명(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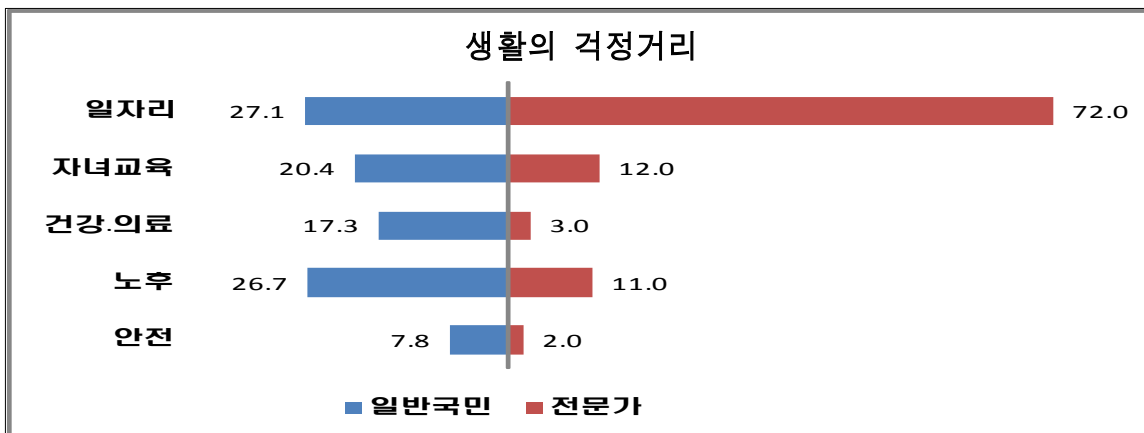
1 사회·경제적 지위의 안정성

- 일반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 하다고 응답
- 불안정의 원인으로서는 불충분한 소득, 직업 안정성, 사회에 대한 불신을 주 사유로 응답



2 걱정거리

-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생활하는 데에 '일자리'를 가장 크게 걱정, 그 다음으로 노후와 자녀교육 順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 삼성경제연구소(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 ○ 조사시기 : '12. 4. 23~ 4. 30, ○ 조사방법 : 임의전화설문(RDD) 방식으로 1,000가구 전화 인터뷰
-----------	--

1 생애주기별 안정

-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 지원'
- 연령에 따라 젊은층은 보육지원, 중고령층은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

구분	일자리 지원	보육지원	주거지원	의료안전망 강화	노후보장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계	38.0	19.9	8.1	5.4	14.6	14.0
20~29세	20.0	36.0	12.0	4.0	12.0	16.0
50~59세	40.6	12.9	10.2	6.6	16.4	13.3

2 분야별 지원방안

- 은퇴 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노인형 일자리 제공'으로 응답

구분	기초 노령연금 인상	노인형 일자리 제공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조성	사회적 유대 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응답률(%)	8.6	53.9	16.5	5.2	5.7	10.1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을 선정

구분	노인돌봄/장애인활동 지원	출산관련 비용지원	방과후 교실 지원	주택관리비 보조	문화, 스포츠, 여행비 지원	이동금식 지원
응답률(%)	37.6	25.1	10.3	11.3	6.9	7.7

- '직업훈련'을 실업자에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으로 응답

구분	직업훈련	실업급여 기간 연장 및 급여증액	창업과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공공근로 및 단기 일자리 확대	가계안정 자금 대출	정신 및 건강돌봄 서비스
응답률(%)	42.6	7.4	27.6	12.5	6.0	3.9

-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등록금 경감' 응답

구분	방과후학교 지원	교내 도서관 증설	취약계층 사교육비 지원	실업계 고교 장학금 지원	대학등록금 경감
응답률(%)	25.9	13.6	15.1	9.0	36.4

-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근로빈곤층 사회보장' 응답

구분	학교생활 적응지원	대학입시 특례	장애인 고용지원	독거노인 돌봄	근로빈곤층 사회보장	새터민/결혼 이민자 지원
응답률(%)	24.3	3.9	11.7	9.2	32.6	13.8

Ⅲ. 기본 방향

1. 비전 및 정책 목표
2. 핵심 가치 : 맞춤형 고용-복지
3. 사회보장체계의 운영원칙
4.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의 모습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

- | | |
|-------------|--|
| 정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고용-복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보장

□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이 보장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생활영역별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 균형 보장
 - ▲ (생애주기별) 영유아·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양육, 실업, 질병, 노령 등 기본욕구 보장
 - ▲ (생활영역별)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보장
 - ▲ (가구특성별)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가구 등 취약가구에 나타나는 특수욕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재정여건 하에서 우선적 보장

□ 모든 국민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 제공
- 복합적 문제가 있는 모든 국민이 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에 대한 투자, 경력단절 방지, 취약계층 고용 안정 등과 더불어 중산층의 자아실현 경로로서 소질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투자 강화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우리 경제에 맞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되, 혜택과 부담의 균형으로 미래세대 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

□ '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 맞춤형 고용·복지는 단순한 생계보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
 - '일'은 소득을 위한 노동의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삶의 의지, 사회적 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활동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지향
- 고용·복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여성 경력단절 방지, 취약계층 고용안정 등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이나 장애인의 자아실현의 경로로서도 맞춤형 고용-복지를 지향

□ 삶의 주기를 함께 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빈곤, 실업, 돌봄, 주거, 질병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그 위험요인을 경감
 - 공통적인 기본욕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개인·가구별 상이한 특수욕구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수요를 세분화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적·분절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새로운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
 - 복지수요의 다양화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긴밀하게 연계
 -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에 더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인 민간영역의 새로운 제공 기관까지 아우르는 공급기관의 다변화

□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지원

- 소극적인 소득보장 중심에서 벗어나 현금급여와 예방적·적극적인 사회서비스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 추구
-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생활영역별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평생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향

□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의 공정성

- 복지급여 지급 대상 선정에 있어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취약계층의 특수욕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과잉급여 등을 줄이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설계와 운영

□ 세대간,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

- 한 세대 내에서 함께 내고 함께 받는 복지를 지향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부담을 더 지는 방식으로 계층간 공평성 확보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복지 전략을 위해 차세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세대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방안 마련

□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되, 개인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
- 민간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 개인은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또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적 참여
 -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조직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 연계 모색

4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의 모습

□ 전국민 : 모두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선진사회가 됩니다.			
·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16.5%	25%	안전행정부
· 생활체육 참여율	45.5%('13)	60%	문화체육관광부
· 평생학습 참여율	35.6%('12)	40%	한국교육개발원
❖ 고루고루 혜택 받는 복지국가 실현합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9.6%('09)	12%	OECD
·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	35.2%('11)	33%	OECD

□ 아동/청소년 :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 아동안전사고사망률*(10만명 당)	4.2명('12)	3.7명	통계청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8.5%('12)	1.6%	교육부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9.8%('11)	20%	보건복지부

* 자살, 타살 제외

□ 청·장년층 : 생애 고비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 출산율	1.19('13)	1.3명	통계청
· 보육료 지원대상	128만명('12)	139만명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39.1%('12.9)	70%	보건복지부
· 육아휴직자 수	7만명('13)	10만명	고용보험DB
·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33.9%('12)	50%	교육부
❖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 고용률(15~64세)	64.4%('13)	70%	통계청
· 청년실업률	7.4('13.5)	6%	통계청
· 60세 이상 정년기업	37.5%('13)	70%	고용부

□ 노년층 : 보다 활기찬 노후를 맞이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 65세 이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48.1%(‘13)	40%	통계청
· 국민연금 수급률	28.2%(‘12)	33%	보건복지부
·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7.8%(‘13)	10.0%	통계청
❖ 다양한 의료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립니다.			
· 건강수명	71세(‘11)	75세	WHO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5.8%(10)	7%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 생계걱정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 보다 신속·편리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	0.04만호(‘13)	14만호	국토교통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	12.9%(‘13)	13.4%	여성가족부
·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3.1점(‘11)	3.4점	장애인실태조사
❖ 다양한 정부지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합니다.			
·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12)	40%	보건복지부

* 매년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참고】 복지정책 관련 최근 OECD 권고

- * 자료 :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2011),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2013)

<1>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개선

□ 소득분배 및 빈곤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세제 누진성 강화 및 저소득층 선별 지원 확대 등 소득계층별 맞춤형 복지 필요

○ 한국은 조세와 공적이전(현금급여)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소득재분배 효과는 34개 OECD 회원국 중 32위, 빈곤개선 효과는 34위 기록

○ 이러한 양상은 소득수준에 따른 세제의 누진성* 및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급여의 선별적 지원** 등이 미약한 데서 기인

* 소득1분위 계층과 10분위 계층은 직접세로 각각 12%, 10% 지출(시장소득 대비)

* 정부의 총 현금급여 지원액이 소득하위 20% 계층과 상위 20% 계층에게 각각 20%씩 동일하게 귀속

<2> 복지제도의 재정건전성 유지

□ 개인별·가구별 복지욕구에 따른 차등지원 강화로 복지지출의 효율성 확보 필요

○ 현재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GDP 대비 9.6%, 32위), 인구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최근 10년간('00~'09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

○ 사회보장의 확충과 함께 재정건전성 유지 또한 중요한 과제

IV. 주요 정책과제

IV-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IV-2. 일을 통한 자립지원

IV-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과제 범위 〉

- ◆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불안정한 고용, 노후빈곤, 교육비·주거비 부담 증가, 양극화 심화 등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적이므로 단일한 계획 또는 정책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
 - *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 ◆ 현재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경제·금융 정책, 적극적 고용 정책, 주택 시장 안정, 교육 개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별도의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과제범위 설정
- ◆ 사회보장기본계획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하고 있는 분야별 계획이 다수 존재
 - 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 분야의 다른 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성격 및 지위·위상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방향을 대표하는 분야별 정책과제로 범위를 한정

IV-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IV-1-1.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 ①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②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③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성 과

- 그간 출산·자녀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 ▶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임신·출산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함에 따라 국민만족도 향상
 -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양육 수당('09)·누리과정('12) 신규 도입 및 확대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대
 - *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 ('08) 716천명 → ('10) 879천명 → ('12) 1,350천명
 - * 평가인증유지율 : ('08) 31.4 → ('13.11) 69.7%, 국공립시설 수 : ('07) 1,748 → ('13.2) 2,234개소
 - ▶ 아이돌보미 사업, 방과후 초등돌봄 등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 * 지역아동센터 : ('07년) 전국 2,618개소, 76천명 → ('12년) 4,036개소, 108천명
 - * 드림스타트 : ('07년) 전국 16개소, 4천명 → ('13년) 211개소, 65천명
 - ▶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방과후 활동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 청소년수련시설 : ('92) 150개 → ('07) 668개 → ('10) 721개 → ('12) 753개
 - * 통합지원체계(CYS-Net) : ('07) 68개 → ('13) 196개

한 계

- ▶ 정책의 수요도는 높으나, 맞벌이 등 실수요층 맞춤형 설계와 지원·관리 인프라가 미흡하여 정책체감도가 낮음
- ▶ 미숙아 출생, 신생아 장애 발생률 및 고위험 임신·분만의 모자건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

정책 상황 분석

- ▶ 종일제 중심의 무상보육 지원에 따른 가수요 발생, 영아의 시설쏠림 현상 발생, 맞벌이 등 실수요층의 역차별 문제 부각

* '12년 영아 시설이용률 : 한국 62%, OECD는 평균 30%를 권고

- ▣ 아동·청소년 정책은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지원체계도 분절적·단편적인 지원

- ▶ 아동·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 유해환경 증가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연계망 미흡

정책 환경

- ▣ 가족의 지속적 분화와 여성의 취업증가로 돌봄서비스 수요 증대

- ▶ 전통적인 대가족은 줄어들고, 핵가족과 맞벌이 가구 보편화

* '11.6월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507만 가구로 유배우가구의 43.6%(통계청, 2012)

- ▶ 30~40대는 가족정책으로 자녀양육 지원(33.8%), 일·가정양립 지원(25.2%) 선호

* 출처 :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여성정책연구원

- ▣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욕구 급증

- ▶ 아동·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청소년(9~24세) : ('90) 13,553천명 → ('00) 11,501천명 → ('12) 10,197천명

- ▶ 청소년 자살, 안전사고,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의 증가

* 15~19세 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경우 : ('01) 13% → ('12) 32%

* 청소년인터넷 중독률(한국정보화진흥원, '12) : 10.4%

* 학교폭력 피해 응답율(학교폭력 실태조사, '12) : 8.5%

- ▶ 가족해체·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요보호 아동·청소년 증가 우려

* 이혼 가구 : ('90) 17만 가구 → ('00) 31만 가구 → ('10) 127만 가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산모의 출산연령 증가와 다태아 출생률 증가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 출생은 지속 증가
 - * 35세 이상 고령산모 : ('00) 42천명(6.7%) → ('05) 46천명(10.6%) → ('11) 85천명(18.0%)
 - * 2,500g 미만 저체중아 출생수(100명당) : ('00) 3.8명 → ('05) 4.3명 → ('11) 5.2명
 - 하지만, 출생아수 감소,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의 통합적 시스템 미흡
-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조차 없는 시군구가 11곳
 -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 등 비수익 분야와 취약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의 문제로 민간투자가 기피됨으로써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로 확대

나. 정책 과제

①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및 고위험 산모, 태아, 신생아의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
 - '14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미숙아,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지속 추진

- '18년까지 미숙아 출생 추세를 고려하여 부족한 병상 추가 지원(500~800병상)

* '12.10월 말 기준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수는 1,444병상임(심평원)

○ 고위험 임신부의 진료에 대해 질병의 중증도, 가정내 부담정도, 치료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의료비 지원('15)

- 기준,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세부실행방안 마련('14)

* 분류기준(예시) : 조기진통, 분만중 과다출혈 등

②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여 거점 산부인과로 육성

-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 지원

* 분만 산부인과(개소) : ('13) 9 → ('17) 12

* 외래진료 산부인과(개소) : ('13) 2 → ('17) 24

○ 분만 취약지 배후도시(인근 생활권 내)에 거점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취약지 대상 분만서비스, 산전진찰, 산후관리, 이송 지원 등 실시

* 순회진료 산부인과(개소) : ('14) 10개소 → ('17) 12개소

가.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출산 전후의 많은 지출요인으로 인해 가구 경제가 취약해질 우려
 - 일시적 지출요인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상승시켜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도록 유도
 - 임신·출산분야 정책과제로 산후도우미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 기혼여성(20~44세)의 임신·출산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보사연, '12) : 산후도우미 등 지원(69.7%), 산전진찰비 지원(17.3%), 불임부부 지원(13.1%) 순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필요
 - *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타 가족생활 지원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보사연, '12) : 다자녀 가정 주택 지원(52.3%), 다자녀가정 취업지원(47.7%)

나. 정책 과제

①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기준 단계적 확대
 - * ('13) 신선배아 4회 → ('14)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 일정소득 이하의 0~12개월 영아 부모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4.하반기)
 -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규약 및 기존 정책방향*과 맞추어 질병, 취업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제분유 지원
 - * 조제분유 광고 금지(축산물위생관리법), 모유수유 교실 운영, 공공시설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등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기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혜대상 확대 추진
 - * ('14)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65천명)
- 식품패키지 제공 및 영양교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 추진

③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3종 백신)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본인부담제(현재 1회 접종시마다 5천원)를 폐지하고, 대상백신을 13종까지 확대('14)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생백신), 폐렴구균

- 질병 특성과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④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일정소득(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자녀장려세제(CTC) 도입, '15)
 - * 현재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료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제도, 자녀세액공제 시행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확대(5%→1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06.8.18(신설)	'09.9.17	'10.2.23	'10.10.8	'13.5.31
국민주택	3%	5%	10%	10%	10%
민영주택	3%	3%	3%	5%	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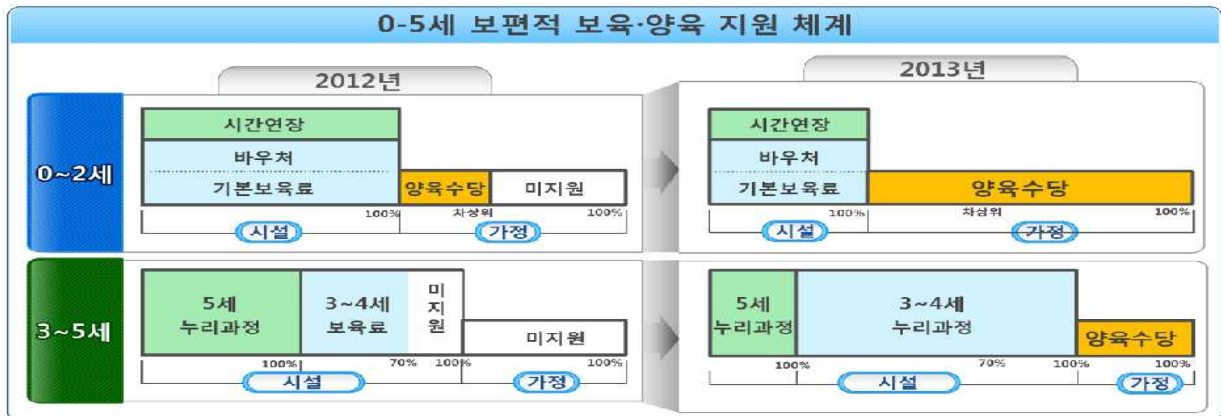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1

무상 보육 및 무상 교육 확대(0~5세)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의 틀 확립
 - 보육료 지원 확대('08, 차상위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 '13, 전계층)
 - 유아학비 지원 확대('08, 차상위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 '12, 5세 전계층 → '13, 3~5세 전계층)
 - 양육수당 도입('09) 및 확대('09 차상위 → '13 전계층)



- 다만, 무상교육·보육 확대에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추가보육료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여 정책 체감도 저해
 - * 유치원 납입금('14.2월 정보공시) : 만 3~5세 평균 월 19.3만원 추가 부담 발생
 - ** 추가보육료('13 시도수납액) : 만 3-5세는 표준보육비용 대비 낮은 단가 지원으로 민간·가정시설 이용 부모는 평균 약 5만원 내 추가 부담 발생
 - *** 기타필요비용('12 보육실태조사) : 만 0-2세 6만원/월, 만 3-5세 16.4만원/월
-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0~5세 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시행되었으나, 지원규모 및 시설이용 부모와의 지원격차 등으로 영아의 시설 쏠림 존재
 - * '12년 영아 시설이용률 : 한국 62% (OECD는 평균 30% 권고)

나. 정책 과제

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 '14년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및 각계 의견수렴, 현실 보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및 단가 적정화 추진 검토
- *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표준보육비용 개요〉

- ◇ (개념) 만 0~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 하에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구성항목)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교재교구비(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교재비, 소모품), 급간식비,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등), 시설비(시설 설치비, 시설유지비)

- 만 3~5세 누리과정 단가를 '14년 22만원에서 '16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추가보육료* 및 사립유치원 추가 납입금**을 점진적으로 축소

- * ('13년, 전국평균/월) 3세 3.6만원, 4세 2.0만원, 5세 2.1만원
- * ('14.2월 정보공시/월) 3~5세 19.3만원

-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 지원 검토

- * (유사사례) 저소득층 4대 학비지원사업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②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의 균형을 통해 0~2세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 조정 검토

- * 양육수당 10~20만원 인상 시 시설이용자 중 11.8%가 “시설→가정양육” 전환 ('12년 양육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양적 재정투자 확대로 보육시설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나 시설 유형별 등에 따라 일부 불균형 존재
- 재정여력 부족, 기업의 설치·운영비 부담 등으로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등 우수한 품질의 공공인프라가 부족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13년 말〉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43,770	2,332	1,439	868	14,751	129	619

-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부모는 국공립, 직장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에 더 큰 관심
- 그간 양적인 재정 지원은 큰 진전이 있었으나 급속한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개인 중심의 공급체계 형성
- 민간 보육시설의 질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 서비스 수준은 개선되었으나, 부모의 만족도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
 - * 어린이집 대상 조사 결과 94%가 평가인증이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 응답('09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
 - *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5점 만점, '12년 보육실태조사) : 국공립(3.85) > 민간보육시설(3.65)
- 보육인력의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수준 등 열악한 처우가 우수인력의 현장 이탈과 보육서비스 질 저하의 핵심원인으로 작용

나. 정책 과제

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을 '17년까지 농어촌,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50개소씩 확충

- 지자체 참여유인 제고, 현실적인 설치 비용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면적 확대 등 기준 검토

* '17년까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직장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3% 수준 확보

○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만족도 제고 및 체감도 증진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1,492개소, '13년 기준) 단계적으로 확충

- 보육서비스 품질과 관련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공성 및 높은 보육서비스 질 담보

< 공공형 어린이집 >

- ◇ (제도 개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월 116~875만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 ◇ (선정 요건) 평가인증 90점 이상,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는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점수, 부채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운영 기준) ① 보육료 부모부담분* 未 수납, ②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 지급('14년 월 147만원 이상)토록 의무화, ③ 상세정보 공개(평가인증 점수, 급식상황, 강사 인적사항 등)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 '17년까지 의무사업장의 7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등 추진

- 기업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완화 및 설치비 지원 확대

* 건물 신·증축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영유아보육법 특례 신설)

** 직장어린이집 신·증축 시 해당면적만큼 과밀부담금 감면(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보육수요는 많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실효성 강화

③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 강화

- 보육성과 및 수요자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점수제를 등급제로 전환 하는 등 평가제도를 내실화 하고, 의무평가제도를 도입('15)하는 등 품질평가 체계 강화
 - 단기적으로 평가결과 공개 강화, 범위반 시설 인증 취소 등을 통한 저품질 기관 감소 유도
 - 중장기적으로 의무평가제 도입 후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육아종합지원센터('14년 72개소)를 전국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결과 품질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보육과정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품질관리 지원 강화

④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진입(양성체계 및 결격사유) → 근무(보수교육) → 퇴출(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등 단계별 엄격한 자격 관리 및 전문성 지원강화
 - 아동학대자 등 결격사유 강화,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사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방안 마련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부합하는 근로환경 개선 및 급여 인상 등 처우 현실화
 - 0~2세(월 15만원)와 3~5세(월 30만원) 담임교사 처우개선 격차 단계적 해소
 - 휴가·보수교육 등 불가피한 기간에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보조교사 채용 유도

* '14년 대체교사 428명 채용계획, 3~5세반 보조교사 1일 4시간, 월 70만원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양육서비스 수요 증가
 - *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시간제 보육 41.8%, 시간 연장보육 34.4%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 ('12년 보육실태조사)
- 아울러,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육아지원 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가정 내 양육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 필요
 - * '양육 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은 경우'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2.2%, 22.2%('12년 보육실태조사)
 - *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놀이방, 아동도서관, 보육 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 (KDI, 2013)
- 부모의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종일제 보육시간 제공으로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제한
 -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들은 안전 및 보호활동에 유리한 개별 양육방식 선호
 -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 중 영아의 경우 '너무 어려서 적응 애로(69.5%)'가 가장 높음 ('12년 보육실태조사)

나. 정책 과제

①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정양육을 원하는 전업주부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보육수요나 단시간 보육수요 등에 대한 시설보육 서비스 제공
 - 외출, 병원이용, 단기취업 등 단기·비상시 수요에 대응하는 일시보육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적 확대
 - * 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38.4%가 일시보육이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육아정책연구소, '11년)

-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시설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추진
 - * 가정양육과 단시간 시설보육이 같이 필요한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양육수당과 함께 월 80시간 어린이집 이용권 부여(시간당 4천원, 부모 1천원 자부담)
- 맞벌이 가구의 야근·출장 등으로 인한 돌봄수요 충족 위해 야간·휴일보육 강화
 -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 실시 기관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
- 장기적으로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전업주부·맞벌이·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가구의 보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 이용단가를 현실화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공급기관으로 인정하여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
 - * 돌보미 월 평균 대기 가구('13.11) : 시간제 870가구, 종일제 349가구
-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강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 * 시범사업(가사추가형과 보육교사형) 후 본 사업 실시('14.하반기)
- 영아의 경우 종일제 돌보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아 양육은 가정양육으로 점차 유도
 - * ('13년) 만 0세(생후3개월~12개월) → ('14년) 만 1세(생후3개월~24개월)
-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와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시간 축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우선순위〉

	저소득	일반가정
취업모	1순위	2순위
전업주부	3순위	4순위

③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확대

- 정규시간 외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대폭 확대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확대
 -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 등)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 제공
 - 기관간 칸막이로 인한 지역별·사업별 수급 불균형, 대상 중복 등 해소를 위해 돌봄협의체 운영
 - 부처별 돌봄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④ 유보통합 추진

-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의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되, 학부모의 요구가 큰 교육·보육 서비스 질 향상 과제를 단계적·순차적 추진
 - △ (1단계) 서비스 질 향상 기반 구축 우선 추진('14):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정 보공시 등 연계 통합 방안 마련
 - △ (2단계) 규제 및 운영환경 정비 등 추진('15): 결제카드 통합, 이용시간 및 교육 과정,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등 방안 마련
 - △ (3단계) 관리부처와 자원 등 통합 추진('16~):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 의 단계적 해소방안, 관리부처 및 자원의 통합
- 국무총리 산하 유보통합추진단(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과제별 통합 추진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3-1

청소년의 종합적 역량 개발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급증,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 보장기여금 증가로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 중요성 증대
- 그러나, 학업대비 단체활동, 봉사활동 참여 부족 등 아동·청소년의 소질과 창의성을 계발할 기회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2012년 청소년통계, 통계청

- 학업부담 등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증가하고 인터넷중독* 증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

* 학업중단 청소년(교육부, '12) : ('05) 54,995명 → ('09) 71,769명 → ('12) 74,365명

* 청소년인터넷 중독률 11.7%(한국정보화진흥원, '13)

- 청소년 자살은 인구 10만명당 13.0명('1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보다 높으며, 11.2%가 지난 1년간 한번 이상 자살 충동
- 가정해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은 증가하나 지역사회 지원체계는 취약한 실정
 - *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원체계 부족'(18.4%), '낮은 자존감'(12.9%), '불규칙한 생활태도'(12.5%), '낮은 학업성취도'(11.5%) 등으로 응답(경희대, '13.9)
 - *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상담지원'(22.4%), '진로지도'(20.0%) 순(경희대, '13.9)

나. 정책 과제

①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교육 제공

-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상담교사 확충, 직업체험 확대 등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14)하고, 커리어넷(종합진로정보망) 및 워크넷 직업진로를 활용한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 진로교육 자료 개발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지원: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13), '교과통합 원격연수(초등용)'('13)
- 학생의 소질, 창의성 계발 및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배치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 '17년까지 전국 1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배치
- 전인적 성장, 신체와 정서의 균형발달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체육 활성화
 - * '13.10월 말 현재 2,713교에 체육전담교사 3,940명 배치

②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

- 학교나 집 주변에서 청소년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동아리 등 청소년 전용 인프라 확대 및 청소년 자원봉사 기회 확대
 -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직업체험 등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 부여
 - * 토요 문화학교 : ('13) 570개 → ('18) 1,100개
 - * 자원봉사 : ('13) 276만명 → ('17) 335만명
- 지자체, 지역문화시설 등에 문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체휴일제('13년 시행), 가족 중심 체험학습 등 실시

③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 학업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굴·개입체계 구축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학업복귀·자립지원) 확대 실시로 재도약 발판 마련
 -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 연계를 통해 위기 학생의 조기발굴·개입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 196개소 → ('14) 200개소
- Wee스쿨,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일제 프로그램 제공
 - * 전일제 프로그램 : ('14) 시범사업 → ('17) 단계적 확대

④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

- 인터넷중독 이용습관 전수진단을 통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체계적 발굴 및 개인·집단상담, 병원 치료연계 서비스 지원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중독 전담인력 배치
 - *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치료협력병원을 연계, 상담 및 치료 지원
 -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운영으로 인터넷중독 정도에 맞는 맞춤형 치유서비스 지원
-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자살 고위험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대상 : 초1·4, 중1, 고1 학생 대상)를 통한 고위험군 학생의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운영('13~)
 - Wee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확대·강화 등 학교 밖 인프라 지속적 확충·개선
 - *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입원진료 축소→학교폭력 가·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강화) 및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우울증, 자해 등 자살위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를 연계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 강화
 - * 청소년 동반자 : ('13) 985명 → ('14) 1,000명 → ('15~) 지속적 확충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폭력·학대의 확산 및 심각화 추세 지속

- 학교 폭력이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손상으로 이어져 학생 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피해학생의 46.4%가 ‘힘들었다’고 응답('12)

* 피해학생의 24.2%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큰 폭으로 감소이나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

- 어린이 안전사고는 질식, 감염, 아동학대, 성폭력 등 사고 유형이 광범위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연도	'05년	'07년	'09년	'11년
사망자	8.2명	6.2명	5.4명	4.2명

* OECD 주요국가('05년 기준) : 독일 3.7명, 영국 3.3명, 스웨덴 2.7명

- 특히, 아동 사망사고의 주요 요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강화 필요

* 사망의 외인 중 운수사고 비율이 1~9세는 38%(1위), 10~19세는 35%(2위)(통계청, '12)

나. 정책 과제

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Wee 센터 설치(~'14)하고, 모든 시·도 교육청에 Wee 스쿨 설치('15~)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을 '16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대처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등 6개 모듈을

역할극, 집단상담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14년, 502개교 시범운영)

** 공립대안학교 확대 : ('13) 5개 → ('15) 10개 → ('17) 17개(모든 시·도)

②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어린이보호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보·차도 분리 및 교차로 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및 적용대상 확대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16년)하고, '16년 이후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
- * '13년 법적용 38,000개 → '16년 66,000개 → '18년 120,000개

〈환경안전관리 기준 주요 내용〉

- △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시설물에 사용하는 목재에는 크롬, 구리 등 방부제를 사용할 수 없음
- △ 시설 및 바닥재에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번식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등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

- 각종 범죄, 교통사고, 불량식품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14~)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식약청)',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어린이보호구역(경찰청)' 등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관리 추진
-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 위주로 CCTV 확대 설치
-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범죄예방,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1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제도 등 제도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으로 아동은 줄어들고 있으나, 취약·위기계층 아동은 지속적 증가
 - 맞벌이 가구, 이혼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자녀 양육기능 약화
 - * 방과후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초등학생 84만명(24.3%), 3시간 이상 혼자 있는 경우 30만명('11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이혼 가구 : ('90) 17만 가구 → ('00) 31만 가구 → ('10) 127만 가구
 - 이혼, 경제적 이유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아동 방임·유기·신체학대 등 증가
 - * 학대판정 : ('01) 2,105건 → ('12) 6,403건
 - 빈곤아동의 증가추세에도 빈곤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
 - * 18세 미만 아동의 상대빈곤율(보사연, '12) : ('08) 10.6% → ('10) 10.1% → ('11) 10.3%
- 우리나라는 2년내 비준을 목표로 '13.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서명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고,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 및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 국외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 인증을 상호 보장하는 국제협약으로 미국 등 90개국 가입

나. 정책 과제

①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 확대

- 전국 시·군·구로 확대된 드림스타트*(13. 211개소)의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정·연계 기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한 계층의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사업의 종류 및 지원체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아동복지 서비스 종합조정체계 마련

○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대상 확대(문화누리카드, '14), 스포츠강좌 통합 등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기초수급가정 아동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제교육·후원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실질적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매칭금액(월 3만원 이내) 상향 지원 검토

○ 국토교통부(주거), 고용노동부(취업),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차원의 자원연계, 민간 사회공헌 연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활성화 추진

③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 위기아동에 대한 일련의 보호절차(발굴·상담·판정·보호·사후관리 등)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관련기관* 통합·조정 및 지자체 책임 강화

- 특히 아동의 원(原) 가정 분리를 최소화하고, 대안양육 제도(가정위탁제도, 공동 생활가정, 아동생활시설 등)가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아동복지심의위,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CYS-net 등

○ 아동학대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심리 치료, 학대 재발생 모니터링 등 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 헤이그 협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原)가정보호-국내입양-국제입양' 순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입양절차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입양원의 책임 강화

* 입양 진행 주체를 기존 민간입양기관 중심에서 민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 : (지자체, 중앙입양원) 입양대상아동결정 및 보호, 결연 등 / (민간입양기관) 예비부모 발굴 및 입양사후관리

IV-1-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①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② **주거안정 대책 강화**
- ③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성 과

■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

- ▶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09),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수준별 차등 실시('09), MRI 보험급여 확대('10), 노인틀니 급여 적용('12), 초음파 급여 적용('13) 등 서민들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강화
- ▶ 보금자리주택 확대, 주택구입·전세자금 장기저리융자 지원 등 주거지원 확대
- ▶ 누리과정 도입, 든든학자금(ILC) 도입('10),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12)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 : ('08) 7.8% → ('09) 7.3% → ('11) 4.9% → ('12) 3.9% → ('13) 2.9%
 - * 국가장학금 : ('12) 17,500억원 → ('13) 27,750억원 → ('14) 34,575억원
- ▶ 미소금융, 바뀐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대한 저리 및 무담보 지원 강화

한 계

■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으로, 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한계

- ▶ 의료, 주거, 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높은 일반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

정책환경

■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 지난 40년간 소비지출은 연평균 6.6%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최근 5년 통신, 교통, 의료 등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
-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추세
 - *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중 지난 20년간 3배 급증(국회예산정책처, '11)
- ▶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가계부담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가구 소비에서 교육비 비중(국회예산정책처, '11) : ('05) 11.8% → ('20) 13.9%

1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
 - 그동안 재정투입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의료기술 발달, 비급여 증가 등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4% 수준에서 답보상태
 - * 보장률 : ('07) 64.6% → ('08) 62.2% → ('09) 64% → ('10) 63.6% → ('11) 63%
- 고령화 심화, 경제침체 등으로 의료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음
 -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보사研, 국민 복지인식 조사, '12)
 - * 건강보험 보장수준 향상(25.8%),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17.2%), 공공 의료체계 확충(16.1%), 건강보험재정 안정화(15.7%) 순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암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를 최우선으로 선정
 - * 중증질환 보장확대(32.3%), 만성질환자 부담경감(22.9%), 노인성질환 보장확대(18.3%) 순

나. 정책 과제

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

〈보장성 강화 세부 추진일정〉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약품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	영상검사(PET 등)	방사선치료	검사(유전자 검사 등)
수술		수술행위	및 교육상담료
치료		심장·뇌수술 재료	일반 수술재료
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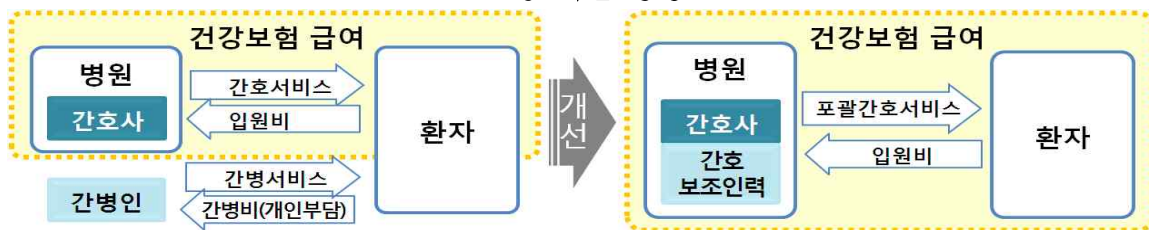
* '13년 초음파검사, 심장질환·크론병 등 MRI검사 旣 적용

-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 지원
 - 3년마다 선별급여 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 조정
-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 추진('17~)

②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선택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남은 선택진료도 진료의사의 기준에 따른 수가제도 등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하여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
 - 선택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하여 환자 부담 완화하고 환자 선택권 제고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통상 6인실)을 4, 5인실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상급종합 병원에 한하여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토록 의무화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상 비율 확대 : (현행) 74% → (개선) 83%
 - * 상급종합병원 중 상위5개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 (현행) 59% → (개선) 70%
- 간병을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간호인력 확충에 맞추어 단계적 시행 추진
 - * 한국·대만 외 사적간병 없고, 간병인 고용에 약 2조원 연간 부담 ('10 간병 실태조사)

< 간병 개선 방향 >



③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 5년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 * 그간 '05~'08년 보장성확대계획, '09~'13보장성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의료서비스 보장강화, 생애주기별 연속적·포괄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 질환별·계층별 의료보장의 편차 완화 등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공공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아, 가계 의료비 부담 과다로 인한 빈곤 전략 위험 상존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2.1%(OECD 평균 20.1%)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 ('12년, OECD Health Data)
- 중증질환 등 고액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소
 - 재난적의료비 지출을 경험한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02년 1.9%, '05년 2.4%, '07년 2.7%), 이는 영국의 40배, 미국의 3배 이상 높은 수준
 - * '11년 기준 고액진료비(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

<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현황 ('11년, 빈곤실태조사) >

- ▶ 의료비로 인한 재산처분, 전세축소, 사채이용 등 54만 가구가 경험
- ▶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구는 16.3%, 30% 이상은 4.0%

나. 정책 과제

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금액 구분이 충분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높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보호기능이 미약한 현행 상한제를 보다 세분화(3→7단계, '14)
 - 저소득층 상한액은 하향조정(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상향조정(400만원→500만원)하여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상한액의 상대적 감소현상을 막기 위해 '15년부터는 현 정액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성·합리성 제고방안 마련('16~)
 - 2016년까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가 완료되므로, 그 영향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들*간 연계 조정 검토
- * 암환자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지원 등

③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을 통한 보험료 인하 추진('13~)
 -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300만원→500만원) 추진
- 임의계속가입제도*(2년) 지속추진을 통해 실직·은퇴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13.5~)
 -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2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 「직장가입→지역가입」 자격 변동시 보험료 증가 세대 46.2%

④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등 의료의 질적 수준까지 반영한 정신질환 수가 차등제 적용방안 검토('14)
 - *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13.6~’14.7)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장기입원 등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기관 적정성 심사 강화
-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의 의료 필요도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질환도 함께 증가하여 국민의 건강 질 악화 우려

*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344만명(인구의 27.1%, '12년 건강보험 통계)

○ 흡연, 음주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 투자는 미흡한 실정

* 성인여성 흡연율 ('05) 5.7%→('10) 6.3%, 성인남성 고위험음주율 ('05) 23.2%→('11) 26.0%

* 외래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알코올·인터넷게임·도박·마약) 333만명(6.7%)

□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환경성 질환도 증가 추세

○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양산(주요 질환의 약 80%는 환경적 위험인자와 관련)하며, 특히 민감·취약계층의 경우 높은 환경성 질환 유병율 발생

* 최근 15년간('95~'10) 어린이와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은 각각 2.2배, 3.2배 증가 ('11.5, 질병관리본부)

* '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환경성 질환자의 9.7%, 천식 환자의 15.9% 차지 ('10.2,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정책 과제

①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기능 강화

○ 생활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국가건강검진을 성별·연령별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전업주부 등 검진의 사각지대 해소

- 검진대상 확대,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검진항목 마련, 검진주기 차등화 등 성·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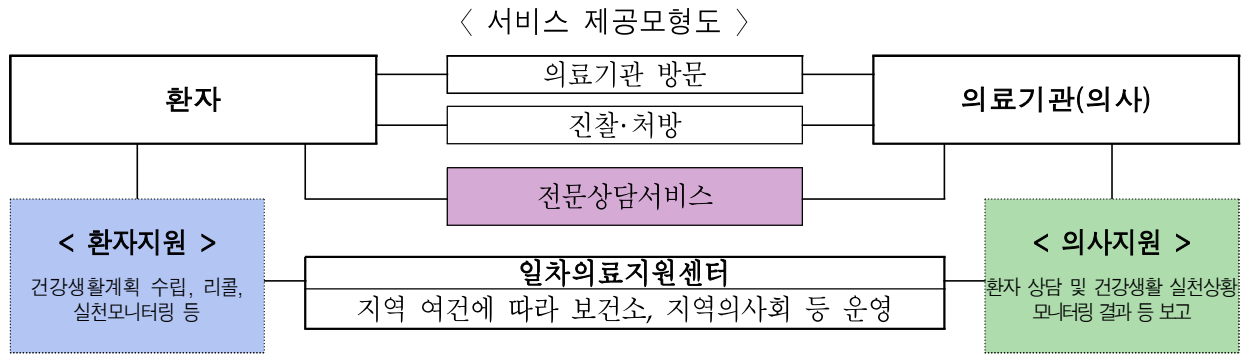
-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증진 포괄보조금 확대 추진
-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도시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지역보건법 개정)

② 건강 위해요인 관리 강화

- 금연상담 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전화 등) 제공 확대, 담배제품 규제 (경고그림 도입 등)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 금연정책 강화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공중이용시설(학교, 의료기관 등)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등 주류에 대한 규제 강화
-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알코올 중독예방·관리 기능 강화
- * 모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코올 중독 전담인력 배치 검토
- 중독 예방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
- 4대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통합적 중독 예방 근거 마련('14)
- 국립병원 기능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중독관리팀 설치, 알코올상담센터를 지역 거점 통합관리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지역사회 중독 상담·재활 기관*간 연계 강화
- * 인터넷 중독대응센터(7개, 안행부), Wee센터 상담사 지원(45개에 45명, 문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0개, 여가부), 건강가정지원센터(149개, 여가부) 등

③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

- 일차의료기관 의사를 통해 추가적인 맞춤형 교육·상담서비스와 만성질환자의 자기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서비스 제공
- * 약 3년('14.7~'16년)간 시범사업 및 평가를 거쳐 전국 제도화 검토
- 고혈압·당뇨병 등 프로토콜이 확립되어 있는 질환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 일차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금연클리닉, 영양체험프로그램, 환자자조모임, 운동 프로그램 등 환자가 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



④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제도’ 도입 및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사전 예방
 - * 품목별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 표시기준 마련(‘15)
- 석면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14~’18년 4,700명) 및 석면 노출원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매년 4,000명)
-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가구의 실내 환경 진단 및 개선 서비스 지원(‘14년 2,000개소)

⑤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 연령대별 자살원인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경제적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 * 자살률이 높은 노인, 농촌지역, 고위험군 중심
- 자살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보건·복지전달체계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 * 정신건강증진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 학교보건실(교육부) 등 연계
 - 보건소 방문보건 간호사, 보건진료소장, 노인돌보미 등 주기적으로 취약계층과 접촉 가능한 인력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및 복지연계 강화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129 위기대응상황팀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간 사례관리 협조체계 구축 등 긴급 위기 대응 강화
 - * 중장기적으로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등 자살위기 대응 출동 기관과 연계 강화하여 사후관리 등 자살재시도 예방 및 복지 서비스 제공
- 자살유해정보 차단, 자살예방 공익광고, 민간단체와 협력 등 자살예방 홍보 및 범사회적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전개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 삶의 질 향상과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수요와 의료비 급증 전망

- * 노인인구는 '00년 7%(고령화 사회) → '18년 14%(고령사회) → '26년 20%이상(초고령 사회) 전망
- * 건강보험 지출(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41.5조 → ('20)87.4조 → ('30)162.1조 → ('40)226.0조 → ('50)257.1조

○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의료비 수준은 낮으나, 가파른 의료비 증가(OECD 평균의 2배)가 문제

- * 국민의료비 증가율('00~'09) : OECD 4.7%, 한국 9.1%(OECD 국가중 2위)

□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보험료 지불의사는 낮고, 저성장 경제구조 등으로 수입여건이 어려워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 증가

○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가입자 간의 형평성, 부과체계의 복잡성 등 논란 지속

-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에 과다한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보수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미부과 및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한 부담 형평성 논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연간종합소득 7,200만원을 기준으로 ① 초과자 : 보수월액 ⊕ 보수외 소득 * 보수외소득:사업, 이자, 배당, 보수외 근로,연금,기타 ② 이하자 :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① 초과세대 : 소득 ⊕ 재산 ⊕ 자동차 ② 이하세대 : 재산 ⊕ 자동차 ⊕ 평가소득 * 평가소득 =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산정방식	보수월액 × 정률(5.89%)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2.7원)
보험료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보험료 미부과)	없음 (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보다 형평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성 제기

나. 정책 과제

① 진료비 지출제도 개편 등 지출구조 효율화

-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신포괄수가제 시범시행 확대 등 지불제도 다양화

〈포괄수가제 추진경과〉

- 7개 질환군* 대상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12.7월 병·의원급 시행에 이어 '13.7월 종합병원 이상에 대하여 시행
 - * 제왕절개·자궁수술(산부인과), 백내장(안과), 탈장·항문·맹장수술(외과), 편도수술(이비인후과)
- 모든 질병군에 적용가능한 신포괄수가제*를 개발하고(11년), 중소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대하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중
 - * ('09) 건보공단일산병원 → ('11) 3개 지방의료원 → ('12) 40개 지방의료원

- 현행 가산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산 제도 정비하여 제도 효율화
 - 원가보정 측면의 개선은 상대가치점수 등에 포함하고, 정책적 목적의 가산은 목적달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폐지·수정 추진 검토
 - * 대상(소아, 장애인), 시간대(야간,공휴일), 진료과(전문의), 기관(종별) 등 22개의 가산항목 존재 (약 3.5조원)

②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단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형평성 제고
 - * 전월세 기본공제 확대(300 → 500만원), 15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제외('14)
- 중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형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중('13.7~)
 - 부과대상 소득기반 확대,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득 중심 부과체제로 단계적 개편 추진

③ 건강보험 재정지출 모니터링

-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지출변동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
 -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 감염병·응급진료 등 수익성 낮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수요는 미충족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측면은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해 지방의료원 등 기관이 누적된 적자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기
 - * 적자('12년): 총 863억원 (개소당 25억원), 부채: 총 5,338억원 (개소당 157억원)
-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 21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 낮은 상황

구분	지역명
①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30분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 (8개 지역)	(경기)가평군, (강원)인제군, 고성군, (충남)금산군, 서천군, (전북)진안군, (경북)영덕군, 군위군
②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나 30분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 (13개 지역)	(강원)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충남)태안군, (경남)하동군, (제주)서귀포시, (경북)청송군, 울진군, (전남)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나. 정책 과제

① 현대화된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14)
-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 지역 단위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의료기관 육성
 - (기초) 필수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지역) 지방의료원법 개정 및 의료원별 기능특성화를 추진하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병원 운영 모델 제시
- (권역) 시·도 권역별로 전문진료 분야(암, 심뇌혈관 등)에 대한 최종적 보건의료 서비스가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권역별 전문진료센터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응급의료체계 개선

-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확충하고,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여 심정지 생존율 제고
 - 응급처치 과정상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
-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한정된 자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기능 개편
 -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차등함으로써, 취약지 기관이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여 도서, 산간 지역내 환자 발생시 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이송업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자이송체계 마련
- 전국 어디서나 1시간내 중증외상 진료가능한 외상센터 설치
 - ‘17년까지 권역외상센터의 전국 균형 배치 추진 및 외상전문인력 양성 지원

2

주거안정 대책 강화

2-1

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불안정,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구입이 사실상 어렵고, 자가(自家)가구도 주거마련을 위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주거불안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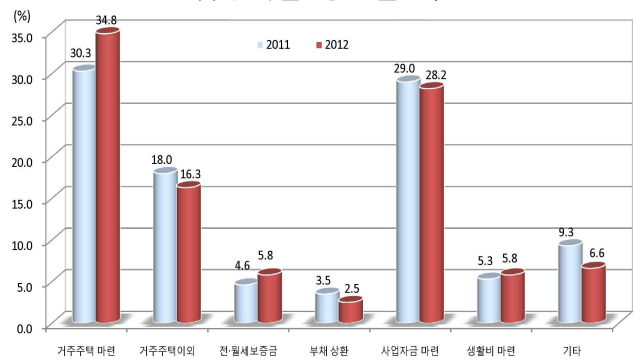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인 경우가 108만 가구(현대경제연구원)

<주거비 부담 및 평균소요 연수>

연도	연소득대비주택 가격비(PIR, 배)	최초 주택마련 평균 소요연수
2006	4.2	8.1
2008	4.3	8.3
2010	4.3	8.5
2012	5.1	8.0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금융대출 용도별 비율>



* '12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 소득 양극화, 반복적 전월세난 등으로 주거복지도 특정 빈곤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사회적 요구로 대두

나. 정책 과제

① 렌트푸어(전세금대출가구) 지원 확대

-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법적근거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13.8~)

* 전세금 반환보증(대한주택보증)과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하여 전세대출 금리 인하(평균 3.7%)('14.1~)

②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가구) 지원 강화

- 연체위험이 있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 주택매각 희망자는 리츠(부동산투자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임대(5년)하는 방식으로 재무적 어려움 감소(한시사업)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되, 원소유자에게 재매입 우선권 부여하고 미 분양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희망임대주택리츠 >

- ▶ (신청자격)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하여 리츠의 해당 주택 취득일* 까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사람
 - * 주택 취득일이란 리츠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 (절차) 대출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공사) 간 삼자합의로 근거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함
 - * 말소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 (매입대상 주택)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로서 해당주택의 단지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
- ▶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감정평가) 수준에서 임대보증금(60%) 및 월 임대료*(40%) 납부 방식(보증부 월세)으로 임대
- ▶ (임대기간) 원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간 계약하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2년간 계약하되,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50세 이상 은퇴자 등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50세)을 낮추어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시행('13~)

* 일시인출한도를 전액활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한도는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08년 이후 100% 상회

* 주택보급률('12) : 전국 102.7%, 수도권 99%, 서울 97.3%

○ 그러나, 무주택 가구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소득하위 5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434만 가구('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무주택 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05) 631만가구, 39.7% → ('10) 671만가구, 38.7%

* 장기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주택매입·전세임대) 재고는 93.1만호('12년말 기준, 국토부)

□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환경 변화

○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임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 월세가구 비중 증가('00. 14.8 → '10. 21.5%) 등으로 서민주거비 부담 가중

* 1~2인 가구 : ('10) 48.2% → ('15) 53.8% → ('25) 62.5%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 ('08) 52.4 → ('09) 53.9 → ('10) 57.1 → ('11) 60.1 → ('12) 63.3

나. 정책 과제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

○ 도심지역 공공건설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을 年 11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간 공급계획>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매입·전세
				공공	민간	
연 11만호	7.0	3.8	1.0	1.2	1.0	4.0

* 행복주택(5년간 14만호)은 건설임대 물량에 포함하여 추진

*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공급계획은 해당연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職住近接)이 가능한 행복주택 14만호 공급('13~'17)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취약계층 위주로 공급
- *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시의 교통유발, 인구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 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 배치하는 도시재개발방식
- 1인 가구의 증가추세를 고려,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주택 비중 확대
- * 현재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 중 원룸형 비중 등 확대

②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급대상 확대 및 임대료 지원 기능 강화
- * 주거비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등을 토대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산정,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 지역에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주거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14년 법개정) 등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③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 소득요건 상향·금리인하 등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 *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 출시('14):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생애최초는 0.2%p 우대 등)로 지원
- * 전세자금 지원 강화('13.6) : 소득요건 상향(4.5→5→ 5.5천만), 지원금리(3.5→3.3%) 등
- 전세→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지원 강화

④ 고령자 특성에 맞는 노년기 주거지원

- 노인의 재가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개조비용 용자로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해당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 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공공장기임대주택 건설시 100분의 5(수도권 100분의 8, 그 외 지역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 추진

5 대학생 기숙사 확충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건립 지원
 - 국립대는 민자(BTL)·재정 기숙사를 건립하고, 사립대는 자체·공공기숙사를 건립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설비용 용자·지원
- 대학생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기숙사 운영 대학의 기숙사비 안정화 추진

3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3-1

교육비 부담 경감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구의 교육비 지출 지속 증가

○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통계청) : ('90) 8.3% → ('00) 11.2% → ('11) 12.6%

○ 초중등 사교육비 부담이 높고, 대학등록금 비용도 높아 가계부담 가중

*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높고(73.0%), 그 원인으로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64.5%)가 가장 높게 나타남 ('12년 사회조사, 통계청)

* 초·중등교육단계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중 : 한국 1.1%, OECD 평균 0.3%

* 자녀를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수준 :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92.6%('12년 사회조사, 통계청)

* 대학등록금 : 국·공립 411만원, 사립 738만원

□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40대 중산층 가구의 가계부담 증대

○ 자녀 교육비를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하여 적자상태인 가구가 82.4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들 중 대졸 이상 학력의 40대 중산층 가구에 해당(31.7%)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2.8월

나. 정책 과제

①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토론과 실습·체험 등 학교 교육의 질과 다양성 강화

- 학교내 선행학습 억제를 위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 강화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시행('14~)

-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밖 사교육 수요 흡수 확대
- EBS 교육서비스 확대*, 시·도 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등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지방학생 등의 교육접근성 제고
- * EBSmath 서비스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단계적 확대('14~)
- 대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수능보다는 학교성적 등 학생부 전형을 강화하고, 쉬운 수능기조 유지 및 대입전형 간소화

2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과 대학자체노력(교내외장학금 포함)을 연계하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완성('15년) 및 지속 추진
-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까지 100% 지원,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 도입) 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 상향 조정

< 국가장학금 지급률·지급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3년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2014년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100%)	(100%)	(100%)	(75%)	(55%)	(35%)	(25%)	(15%)	(15%)

-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인재 장학금'을 신설·지원('14)
-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4년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부터 대학등록금 지원('14)을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 ('14) 1학년 → ('15년) 1~2학년 → ('16년) 1~3학년 → ('17년) 1~4학년
-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여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자의 균복무기간 이자 면제 추진('13.5~)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계 통신비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가입자 수(방송통신위원회, '12) : 이동전화 5,362만명, 유선전화 1,826만명, 초고속인터넷 1,825만명

* 가계소비지출(통계청, '11) : 식료품(27.8%), 교육비(15.1%), 주거비(12.7%), 통신비(7.0%)

* '11년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달러) : 일본(160), 미국(153), 한국(148), 핀란드(133), 중국(30)

□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수준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 %〉

구분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이용률	모바일 정보화*(종합)
전체국민		82.3	78.4	
소외 계층	계	68.7	46.8	27.8
	저소득층	70.1	58.5	46.1
	장애인 농어민	73.0 62.1	55.5 40.2	30.2 25.3

* 출처 : '12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일반국민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 모바일 정보화 수준

□ 소득에 비해 연료비가 빠르게 증가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소득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03~'12년 기간 중 연평균 4.2% 증가, 반면 연료비 지출은 연평균 6.4% 증가하여 저소득 가구의 연료비 부담 증가

나. 정책 과제

① 통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요금이 싼 알뜰폰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 알뜰폰 사업자가 보다 낮은 가격의 대용량 데이터 상품, 이통사와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액제, 수익배분 방식 도입

-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 망적합성 통합시험제공, LTE 단말기의 USIM 이동성 보장 등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 조달환경 개선
-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제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청소년(사용한도)·장애인(영상·음성 다량제공) 등 전용 요금제 강화

② 통신비 지원 확대

-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 완화
-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비용을 분담하여 신규 구축
- *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개소(누적) : ('13) 3천개소 → ('17) 12천개소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 확대('13.9~)
- * 우선돌봄 차상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13.3월 현재 104,737가구)

③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 저소득층의 혹한기 에너지비용 보조를 위하여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지급
- * 제도 법적 근거 마련('14) 후 '15년 동절기부터 지원
-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계부채는 '13.9월말 기준 991.7조원 수준으로 '12년부터 증가속도 둔화 추세

○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구조도 개선 추세

* 가계부채 증가율 : ('10년말) 9.8% → ('11년말) 8.1% → ('12년말) 5.2% → ('13.3/4) 5.4%

* 고정금리 대출 비중(%): ('10년말)0.5 → ('12년말)14.2 → ('13.6월)17.3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10년말)6.4 → ('12년말)13.9 → ('13.6월)17.4

□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재리스크 상존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고,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하여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재무건전성 지표 추이(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가구, 평균기준)

LTI('12→'13년, %): (전체)106 → 108.8 (60세이상)97.4 → 101.8 (자영업)148.8 → 153.8

DSR('12→'13년, %): (전체)17.2 → 19.5 (60세이상)12.7 → 16.2 (자영업)23.1 → 26.3

<소득분위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단위 : %, %p)

구 분	금융부채 /저축액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
1분위	58.1	92.9	15.7
2분위	88.9	114.6	16.4
3분위	70.7	96.6	18.5
4분위	64.1	94.3	16.4
5분위	58.6	109.4	17.1

* '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나. 정책 과제

①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지원

○ 주택금융공사 등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전환을 촉진하는 대출구조 개선 유인체계 강화*

* 공적 기금의 MBS 매입 등 모기지 유통화시장 활성화, 금융기관 대출건전성 규제 강화 등

-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매입한 연체채권(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여타 신용회복제도 및 고용·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②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
 - * '서민금융총괄기구법' 제정 또는 현행 '휴먼에듀관리법' 전면 개정
- 미소금융 지원상품을 금리가 차등화된 단기·소액자금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 유인 강화를 위한 대출상품 구조 검토
 - * (예) 첫 대출은 소액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다음단계에서는 대출금액을 늘리고 금리는 인하 등
-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취업·창업 연계 강화
 -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시 동 지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간 연계 강화
 - * '14년말까지 센터 확대(16→30개), 운영매뉴얼 배포 및 인력·포상 등 인센티브 확충 등

IV-1-3.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 ① 노후소득 보장 강화
- ②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③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성 과

■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국민연금 수급자 지속적 증가, 기초노령연금 도입('08) 등으로 공적 노후소득 보장률도 매년 꾸준히 상승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03) 34만명 → ('08) 110만명 → ('12) 183만명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08) 290만명 → ('10) 373만명 → ('12) 393만명

- ▶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충 및 사회 관계개선 등 유도('04~)

* 일자리 참여로 빈곤률 개선(71.1→ 56.4%) 및 참여 노인의 60%는 삶의 만족도에서 긍정적 변화 경험(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의 공적 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 ('08.7) 21.4만명 → ('09) 28.7만명 → ('12) 34.2만명

- ▶ 치매관리법 제정('11), 종합계획 수립('12) 등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지원체계 마련

* 치매검진(선별) : ('10) 780천건 → ('11) 1,062천건 → ('12) 1,425천건

- ▶ 독거노인, 저소득 치매·중풍노인 등을 위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 ('07) 15만명 → ('12) 19만명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노후 여가·문화활동 지원, 노후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추진

- ▶ 어르신 세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성화에 기여

* 운동 실천율('11년 노인실태조사) : ('04) 39.6% → ('11) 50.3%

* 어르신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05) 10개 → ('12) 1,086개

- ▶ 노후설계서비스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평가지표 마련('12)

한 계

-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 내실화는 미흡
 -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은 구축되었으나 실질적인 노인 빈곤해소에 미흡
 - * 65세 이상 빈곤율('11) : 한국 45.1%, 미국 22.4%, OECD 평균 13.5%
 - ▶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낮은 상황

- 노인돌봄과 건강문제에 대한 수요에 비해 제도적 준비는 아직 미흡
 - ▶ 보편적인 장기요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신체기능 중심의 중등증 노인 위주로 설계되어, 경증의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 장기요양 인정자 34.2만명 중 치매노인은 14.9만명(44%)
 - ▶ 가족해체 등으로 취약 독거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돌봄을 받는 독거노인은 19%(23만명)에 불과하고, 안부확인 위주의 정책 추진
 - ▶ 노인은 이미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이환되어 있어, 질병발견 목적의 건강검진 및 건강수준을 미고려한 운동 프로그램 등은 한계
 -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10년 80.8세)과 건강수명(71.0세)간의 격차가 큰 상황

-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내실화는 미흡한 상황
 - ▶ 한시적인 프로그램 및 분절적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기존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부재 등 한계
 - ▶ 사회활동이 주로 종교, 친목에 집중, 다양한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가 미흡
 - * 여가·사회활동('11년 노인실태조사) : 친목단체 가입(37.8%), 자원봉사(3.9%), 동호회(3.8%), 평생교육프로그램(6.7%), 정치·사회단체(0.7%) 등

정책환경

■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노후 준비도를 보이고 있어 소득보장 등에 대한 복지 요구도가 증가할 전망

▶ 노인의 현재 걱정 또는 고민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것이 많으며, 소득보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고민·걱정 : 건강 악화 51.3%, 경제적 어려움 18.0%

* 선호하는 복지서비스 : 소득보장(31.8%), 의료서비스(26.1%), 수발서비스(18.7%), 여가생활지원서비스(9.0%), 노후주거지원(3.9%) 등

▶ 향후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

* 기대수명 : ('90) 71.3세 → ('00) 76.0세 → ('10) 80.8세 → ('20) 82.6세

■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노인돌봄과 건강에 대한 수요 증대

▶ 고령가구(부부가구+독거노인)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부부가구 : ('13) 6.5% → ('20) 7.9% / 독거노인 : ('13) 6.9% → ('20) 8.8%

▶ 노인의 가장 큰 걱정(고민)은 건강 악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음

* 고민·걱정 중 건강 및 기능 악화 51.3%(1위). 의료서비스 선호도 26.1%(2위)

▶ 치매노인의 증가로('12년 53만명 → '25년 100만명)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0년 8,100억원(노인성 질환 중 2위)

■ 인구 고령화와 아울러 노인의 특성변화도 함께 진행 중

▶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2만명)는 이전 노인세대와 달리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참여 욕구도 높은 상황

* 전문대학 이상 24.8% ,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함 57.5%, 운동하고 있음 68.5%
(출처 :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010)

▶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가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1-1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안과 노인빈곤 문제 심각

○ 국민연금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88년 시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및 평균 급여액이 낮은 수준*

* 전체 노인 598만명 중 200만명(33.4%)이 국민연금 수급, 평균 금액은 31만원

<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

(단위 : 만원)

조사연도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월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	
	본인기준	부부기준	본인기준	부부기준
2010	90.5	159.6	128.0	223.8
2011	112.4	177.3	175.1	272.3
2012	116.6	184.7	179.6	279.5

* 출처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 현세대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노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노인빈곤율 : 우리나라 45.1%, 독일 8.4%, 일본 22%, 미국 22.4%, OECD 평균 13.5%

* 65세이상 인구비중(통계청) : 5.1%('90) → 11.0%('10) → 24.3%('30) → 40.1%('60)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약 106만명) 수준이며,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 희망

* 근로동기 : 생계비마련(48%), 용돈(21.5%), 건강(15.4%), 사회관계(3.7%) 등

○ 일자리 희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충, 건강 증진 및 사회참여 등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필요

나. 정책 과제

① 기초연금 도입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 도입·시행('14.7.1)
 - 대상은 고소득 노인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 연금액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안) 개요>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14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급여액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A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20만원 * 2014년 산식 = (20만원 - 2/3×A급여액) + 10만원 * 국민연금액 등이 30만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 20만원으로 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최하 월 2만원)
재 원	전액 조세

- 기초연금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수준, 물가변동률,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 평가 실시

②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 노인일 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노인의 근로 욕구와 일자리 강도·특성에 따라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10~12개월까지, 보수도 월20만원에서 월30~40만원 수준까지 확대
- 노인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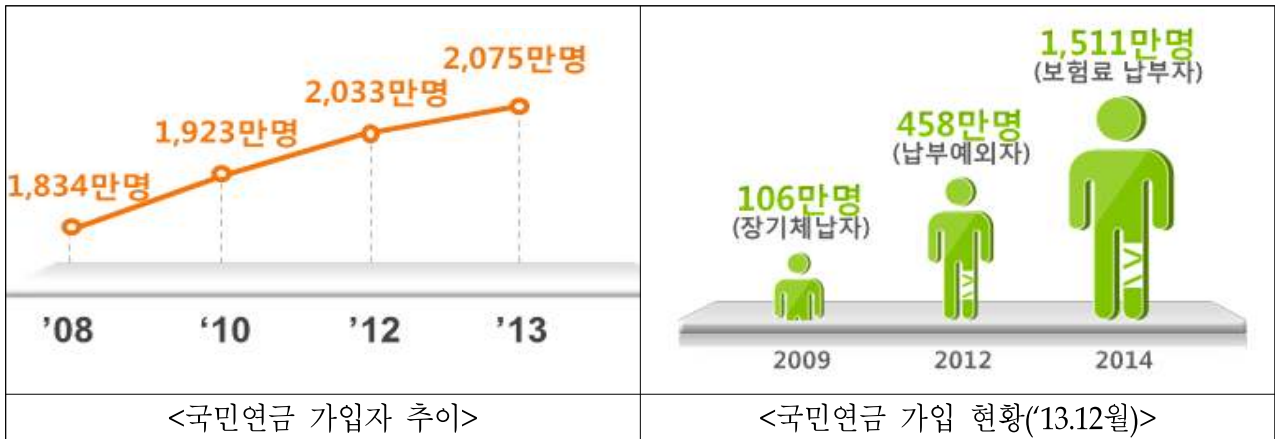
- 광역단위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취업교육 실시('14~)
- * (현행) 기본소양교육(12시간) → (개선) 기본 외, 전문취업교육(2~4주)
-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반영 및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재능활용 일자리 신설('14.하반기)
- 부처에서 관할하는 노인 인재풀을 활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 등 부처 간 협력 강화

◆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례 ◆

- 노인시험감독관(안행부, 복지부, 지자체 등) : 퇴직한 교사, 공무원 등으로 인력풀 구성하여 각종 자격시험에 노인 감독관 파견
- 바다사랑지킴이(해수부) : 유명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 정비
- 안전한 학교만들기(교육부) : CCTV 상시모니터링, 학교급식, 교통지도
- 노인여행전문가(지자체) : 지역사회 축제, 관광지 가이드, 여행정보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시행('99) 이후 가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납부 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노동 구조 下에서, 소득 파악이 어려워 내실있는 가입 관리가 어려운 상황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82.5%('12),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2.7%(OECD는 15.8%)

- 실업자, 저소득층 등 노후 준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급여 수급 곤란

구분	연 소득 (만원)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년)	납부 월 보험료 평균액(만원)
1분위	1,304	12.0%	88.0%	7.77	3.91
5분위	8,127	2.6%	97.4%	15.01	14.71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연금 크레딧” 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는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

- 전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가입 관리 내실화, 노후준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급여 체계 개선 필요

나. 정책 과제

①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내실화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에게도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보장하고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으로 가입기간 확대 유도
 - * 현재는 소득활동을 했던 자가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장애·유족연금 수급 곤란
- 일용근로소득 자료 등 소득자료 공유 확대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자료공유 시범사업(10개 지역) 우선 추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된 가입 희망 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 집중 지원을 위하여 '(가칭)국민연금 가입지원센터' 운영

② 저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월평균보수 130→135만원)
 - * 두루누리 사업 평가(고용부, '14.上) 결과를 토대로 신규가입자 집중 지원 및 高 재산가 지원대상 제외 등 기준 개선 검토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하여 미가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입 유도
 - * ('14년) 85만원 이하 소득 : 보험료 1/2지원, 85만원 초과 소득 : 보험료 38,250원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 도입 검토
 -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 마련은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도입('15 예정)에 따른 공적자료 확보 추진과 병행

③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연령별→소득수준별), 부분연기연금 도입(현재는 전부 연기만 가능) 등 근로유인형 급여제도로 개선
- 국민연금액 물가 반영 시기 변경(4월 → 1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조정(20 → 30%)으로 급여 적정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은퇴기간의 확대, 근속기간의 단축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
 -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노후소득은 퇴직 전 소득의 60~70%로 국민연금과 함께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여 총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
 - * OECD는 한국의 퇴직연금은 생산가능인구의 12%만을 포괄하고 그 중 3%만 급여를 받는 등 한계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강화 필요 권고(OECD 한국 경제보고서, '14)
-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은 구축되었으나, 실질적인 노인 빈곤 해소에 미흡
 - 퇴직연금은 낮은 가입율, 일시금 지급 및 중간정산제도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 미흡
 - * 전체 상용근로자의 39.5%(약 376만명), 전체 사업장의 11.4% 도입('12.7월 기준, 고용부)
 -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으로 20~60대 인구의 30% 수준이고, 가입 유지율(10년 이상 유지율 52.4%)이 낮아서 실제 노후자금 활용은 미흡
 - * 개인연금 가입율('11, OECD) : 한국 12.2%, 영국 18.1%, 미국 24.7%, 독일 29.9%

〈현행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사학/군인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퇴직금)	준공적연금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나. 정책 과제

①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사 연금 적립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실시간 일괄 조회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등의 인프라 활용)

- 개인의 연금 가입 현황 및 예상 연금액 정보 등을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 및 서비스,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

②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 퇴직연금 가입률('13, 고용부) : 300인 이상 사업장 91.3% vs. 30인 미만 사업장 14.5%
- 사내 유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현행 10%)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유인 제공
 - 이원화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추진 검토
-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근로자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 개선

③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 리스크 세분화와 급부 차별화에 기반한 맞춤형 개인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수요의 개인소비자 유인 확대
 -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 개발('14)
-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 등 세제개선
 - 장기간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
 - * (납입요건) 현행 납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한도 연 1,200만원 → 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 (수령요건) 5년 이상 수령 → 10년 이상 수령
 -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확대

④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 만기시 연금 수령 유도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2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2-1

노인 건강관리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치매 등 주요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미흡
 - 급속한 고령화로 '13년 57.6만명인 치매노인이 '24년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은 크게 증가
 -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2년 11,900억원
 - * 사회경제적 총비용 10.3조원('12년) → 18.9조원('20년) → 38.9조원('30년) (치매노인실태조사, '11년)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체기능 중심의 중증 위주로 설계되어 일부 치매환자는 등급을 받지 못하고, 치매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부족
 - * 장기요양 인정자 중 치매노인은 148.9만명(44%) 수준
- 노인 상당수가 건강 손실 및 활동 장애로 노후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
 - 노인 인구 중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복합유병율이 68.3%('11, 노인실태조사)에 이르는 등 노후 개인의 삶의 질 저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 질병 특성에 맞는 급여 확대는 아직 부족한 실정

나. 정책 과제

①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등으로 치매가족 지원 강화
 -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47천~57천명, '14.7)
 -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판정은 받았으나, 3등급 안에 포함되지 못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과 동일한 재가서비스를 제공
- ** 치매가족 휴가제 : 연 6일 동안 치매환자는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맡기고 가족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간병 스트레스를 완화
-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치매 검진주기를 격년으로 확대
 -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찾아가는 무료 치매검진사업 확대('14)
- * 검진연령 확대 : 66·70·74세 → 70세이상 2년에 한번씩 계속 적용('15년 이후)
- 표준화된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및 관련 기관간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13. 14백개소 → '18. 24백개소)

② 고령화 대비 노인의료체계 구축

- 어르신들의 치아건강 제고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재정 소요, 부분틀니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연령 확대 추진
 - * ('14.7) 75세 이상 → ('15) 70세 이상 → ('16) 65세 이상
-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호스피스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노인의료체계 구축
 - 수술 후 회복·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복병원체계 강화
 - 요양시설·재가에서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 되도록 통합서비스(의료+요양+생활) 활성화
 -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확충
- 의무인증제 정착, 안전시설 기준 강화 등 요양병원 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
 - 강화되는 기준은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하여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기준 강화〉

-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기준 강화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돌봄 수요는 증가하나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 노인부부가구 및 독거노인의 급증으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은 약화
 - * 노인인구 : ('00년) 339.5만명 → ('14년) 638.6만명 → ('35년)1,475만명
 - 독거노인 : ('00년) 54.4만명 → ('14년) 131.7만명 → ('35년) 343만명
- 가족갈등 및 부양부담의 증가로 인한 노인학대 등 가족내 폭력 매년 증가 추세
 - * 학대 경험률 : ('08년)10.2%, 517천명 → ('11년)12.7%, 718천명('08년 '11년 노인실태조사)
 - 노인 학대 사례건수 : ('10년) 3,068건 → ('12년) 3,424건 → ('13년) 3,520건
- 65세 이상 노인의 높은 우울증이 타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율의 주요 원인
 - * '12년 기준, 노인들 중 우울위험군 약 22.6%, 우울 진단군 약 8.2% (한국복지패널 조사)
 - ** '11년 기준, 자살 사망률은 65세 이상 10만명 당 79.7명, 80세 이상 10만명 당 116.9명
- 고령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 급증 추세
 - 현재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요양등급 판정자는 2.8만명이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
 - * 수원보훈요양원 등 6개소, 1,200명 입소

나. 정책 과제

①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 건강·사회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3회 유선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기본돌봄서비스' 지속 추진
 - * ('12년) 14.2만명 → ('14년) 20만명

○ 독거노인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관리체계* 구축

* 독거노인 댁에 가스누출·화재감지·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기를 부착하여 위급상황시 소방서에서 출동, 생활관리사가 방문·전화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

○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

- (농촌형)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 (도시형) 독거노인끼리 모임을 구성하고 사회관계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②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가정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 사례 적극 발굴, 피해노인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일시보호 등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노인돌봄미사업 종사자와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조기발견을 추진하고, 일시 거주 시설 제공, 심리치유 및 의료비 지원 등 피해노인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전체노인의 13.8%(764천명)가 학대 경험 있으나, 신고사례는 3,424건('12)에 불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13년 23개소), 상담인력 역량강화 등 추진

○ 사전·예방적 인권보호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돌봄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 시설, ombudsman 간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지역내 인권활동가등을 ombudsman으로 위촉, 시설 출입권 보장, 활동일지 작성 등 역할 수행

** 65세 이상 노인이 아동·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안전여부 모니터링 등

③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

○ 취약계층 노인의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노인 자살예방 연계체계 구축

-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노인사회복지기관을 연결하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 사업 수행

* 농촌·도시 유형별 자살예방 시범사업 : ('13) 2개소 → ('14) 5개소

④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체제로 서비스 개선

- 중앙보훈병원 병상확대(800→1,400병상), 진료·재활·요양 등 효율적 의료 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 기능 강화, 간호등급 상향 추진(4등급→3등급) 등을 통해 지방보훈병원별 특성화된 진료분야 중점 육성 추진

-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 보훈병원 내 '보훈의학 연구소' 설치 추진

* 고엽제관련 질환 연구, 재활·노인성질환·PTSD 등 정신건강 분야 임상연구 등 3개 연구팀으로 우선 추진

- 만성질환,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요양원 건립 확대 등 시설서비스 강화

* 남양주 보훈요양원 건립('14)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및 복지인력 단계적 확충을 통한 가사 간병 서비스 강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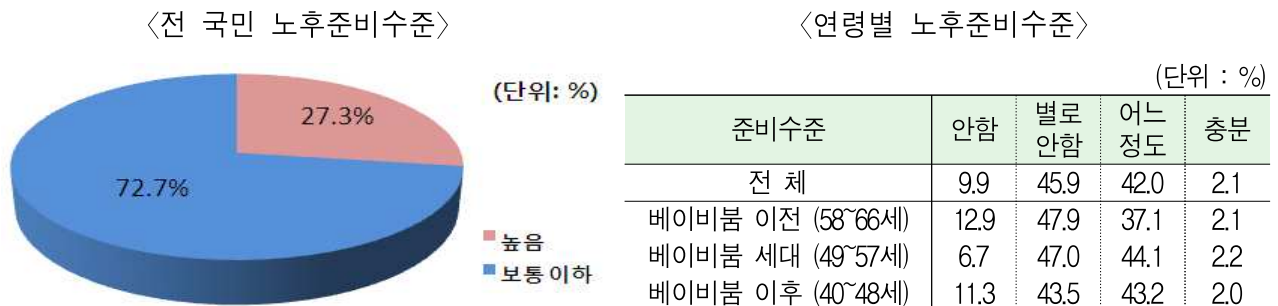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3-1

자기주도의 은퇴 후 준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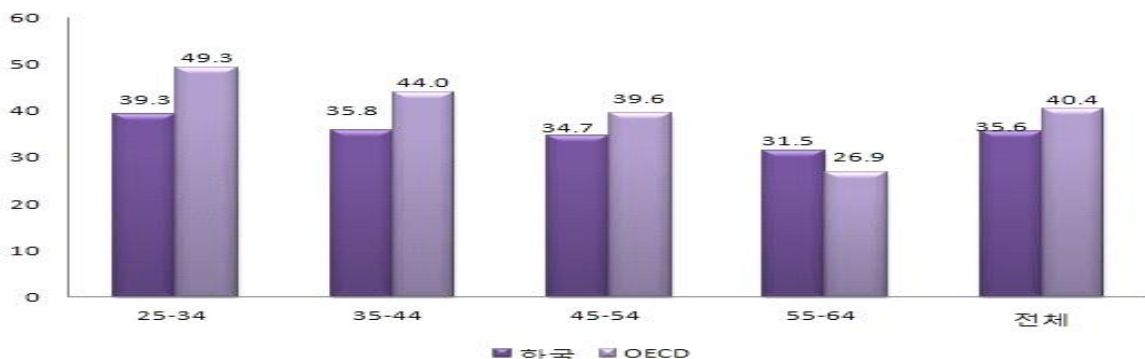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는 미흡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나 대다수 국민(72.7%)의 노후준비 수준과 인식이 미흡
 - 특히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율은 45%에 불과



* 3,070명 대상 <'12. 노후준비지표 실태조사> * 1,086명 대상 <'11.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 또한,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주로 경제적 준비 등 특정영역에 한정
 - 활발하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생애 전과정의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낮은 실정
 - 이는 조기은퇴 또는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재취업·창업 등 생애전환기 학습 지원 평생교육 체제 및 인프라가 미흡한데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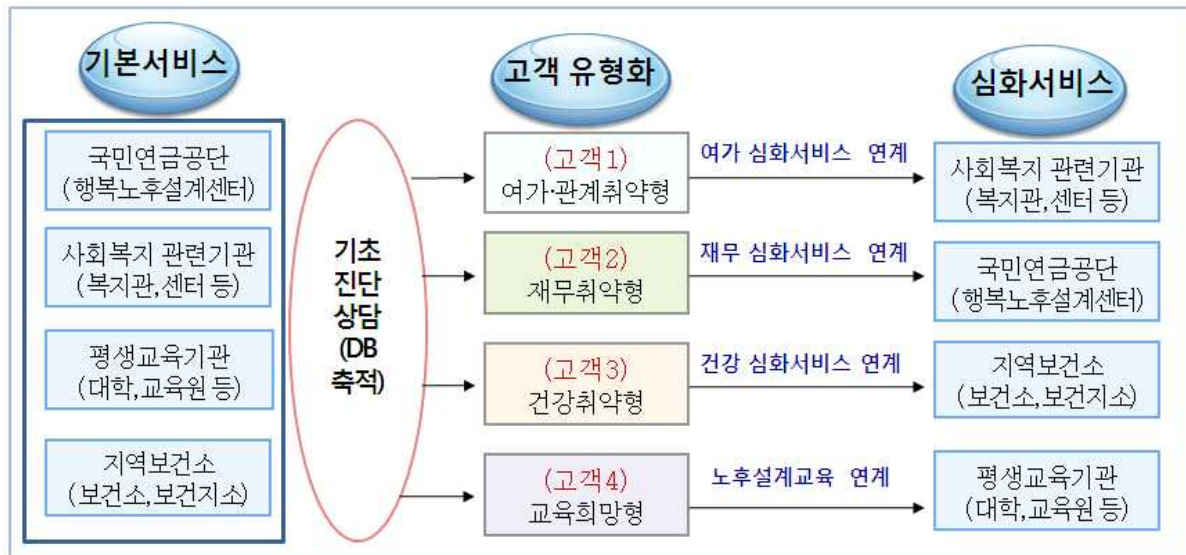
* 출처 : 2012년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나. 정책 과제

① 노후생활 설계 강화

- ‘(가칭)노후설계지원법’ 제정을 통한 기반구축 및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노후준비지표 보완, 마련하고 일선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을 통해 노후설계 교육 시범사업 실시
 - 노후설계지원법을 마련하고 기존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지역노후설계센터로 활용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 대학교 또는 평생교육원,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사회복지관 등
-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의 단계적 확대 등 전국단위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주민자치센터,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고, 종합정보포털 구축 등 노후설계서비스 접근성 강화
 - * 20~30대는 재무설계, 40~50대는 생활체육 인력을 활용한 건강설계 비중 강화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흐름도〉



②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중·장년층 대상 조기퇴직, 창업·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 기회 확대
 - * 방송대 창업·전직·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 ('13) 62개 과정 → ('14) 92개 과정
-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부족하거나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온라인을 통한 학습 접근성 제고
- 직장근로자가 대학·공공훈련기관 등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학습휴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직원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 지원 또는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8조)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 자원봉사 및 여가활동의 프로그램 개발·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참여욕구 대비 실제 참여율은 저조
 - '11년부터 경로당 중심의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정부지원을 시작하였으나, 노인자원봉사 참여율(5.5%)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 *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 미국 24%('12), 호주 27.3%('06), 일본 26%('06)
 - 노인층은 여가경험 및 비용 부족으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행복수준이 가장 낮은 상황
 - * 여가 중심의 노후생활 노인비율은 전체 노인의 39.8%('12년 약 234만명)에 불과하고, 주된 여가활동은 화투·카드(26.9%), 등산(10.5%), 화초가꾸기(10.4%) 순('11년 노인 실태조사)
 - * 노인층과 장년층 행복지수(10점 척도): 5.95(70대 이상) vs 6.59(30~40대) ('10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
-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예비노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부머의 경우, 현재의 여가활동 수준은 낮으나(1년간 문화활동 없음, 전체의 52.2%), 은퇴 이후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83.7%)
 - * 노후의 삶에 사회활동 중요 49.5%, 여가활동 중요 83.7%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적 노년생활 보장 필요

나. 정책 과제

① 자원봉사 기회 확대

- 노령 지식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직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확산
 - * 현재 전국 20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440개 자원봉사단(12천명) 운영중

-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의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 ‘실버문화 자원봉사단’ 양성 및 준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도슨트*(Docent), 문화관광해설사** 등과 같이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 퇴직자 등 인력을 활용 지역의 관광안내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

②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

- 모든 시군구에 노인복지관 설치,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의 여가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어르신 세대의 여가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의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 어르신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14년 411개)을 통해 어르신 세대 문화복지 실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어르신 문화학교	전문강사에 의한 악기, 음악, 연극 등의 문화예술분야 교육지원
찾아가는 문화학교 (전문강사파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시설 등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분야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문화학교 (이수자강사 파견)	어르신문화학교를 수료한 이수자강사가 유치원, 학교, 마을회관, 요양원 등의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분야 교육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어르신들이 지역축제,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배움을 나누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천
어르신동아리 활성화	어르신들의 지속적, 자생적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생활문화전승	어르신들이 간직해 온 생활문화(지식과 경험, 풍습, 공동체 문화 등)가 세대·지역 간에 교류,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
어르신문화학교	전문강사에 의한 악기, 음악, 연극 등의 문화예술분야 교육지원
어르신문화축제	어르신 간 문화교류활동의 장 마련

IV-1-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①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②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③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④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 상황 분석

- (성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정착으로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차상위 법정 지원 등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약 222만명(인구의 4.3%)이 국가에 의해 보호, 빈곤완화에 기여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0만명으로 총인구의 2.8% 수준
 - * 공공부조 지원의 절대 빈곤율 감소효과는 약 2.96%p,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2%p로 빈곤완화에 기여('10. 빈곤실태조사)

- (한계)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집중하여, 긴급지원 등을 통한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
 - ▶ 통합급여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욕구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유인 미흡
 - * 수급자 중 취업자 비중 : ('01) 15.4%, 약 21만명 → ('12) 10.6%, 15만명
 - ▶ 최저생계비 이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사각지대 상존)
 - * 비수급빈곤층(빈곤실태조사) : ('06) 103만명 → ('10) 117만명
 -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탈락이유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 긴급복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소한 대상자, 일회적인 현금지원 위주 지원 및 체계적 사례관리 미흡 등으로 빈곤예방에 한계
 - * 긴급지원 집행액의 88~93%가 의료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긴급지원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혜율이 45.1%('10년)로 빈곤전략 예방기능 미약

- (정책환경) 소득분배 및 빈곤지표 악화 추세 속에서 근로빈곤층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빈곤정책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도시근로자 가구 상대빈곤율 : ('01) 8.2 → ('07) 10.8 → ('11) 10.2% (가계동향조사)
 - ▶ 정책수혜자 욕구 다변화에 따라,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
 - *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는 생계(77%), 의료(17%), 교육(3%) 순이며, 탈수급시 필요한 지원은 의료(66%), 주거(19%), 교육(11%) 순('12. 복지패널조사)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빈곤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개별 욕구에 탄력적 대응 곤란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차상위 법정 지원 등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약 222만명(인구의 4.3%)이 국가에 의해 보호, 빈곤완화에 기여
 - * 공공부조 지원의 절대 빈곤율 감소효과는 약 2.96%p,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2%p로 빈곤완화에 기여('10. 빈곤실태조사)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빈곤층의 욕구도 다변화하는 추세이며 일괄 지원에서 개별 욕구별로 적합한 지원 필요성 증대
 - *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는 생계(77%), 의료(17%), 교육(3%) 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그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약 117만명('10년, 빈곤실태조사)
-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빈곤완화에 기여하였으나 빈곤에 대한 사전예방은 미흡
 -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집중하여, 긴급지원 등을 통한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 미흡
 - * 긴급지원 집행액의 88~93%가 의료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긴급지원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혜율이 45.1%('10년)로 빈곤전락 예방기능 미약
 - 차상위계층의 자격확인이 곤란하고, 각부처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부에서는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도 발생

나.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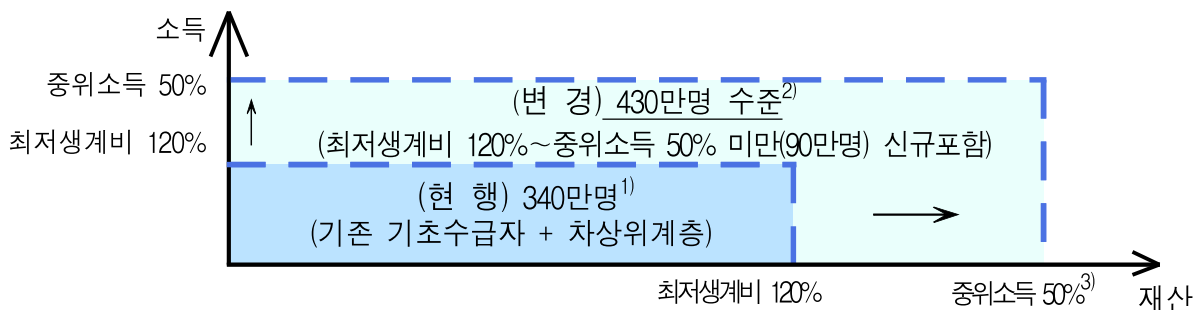
- ①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로 설정을 통해 지원수준 현실화
 - *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 검토
 - 생계·의료·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현실화
 - * 부양능력 판단 기준 : (현행)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준 → (개선)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40% 수준)
 - 교육급여의 경우,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교육부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검토
- 개편 후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급여체계 설계
 - 기초보장제도의 자격·기준(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을 원용하고 있는 관련제도의 정비는 맞춤형급여 개편 이후 시행

② 빈곤정책 대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상대적 빈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빈곤정책 대상 규모 >



1)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빈곤실태조사('10. 보건사회연구원) 참조

2) 중위소득 50%이하는 중산층 규모 추계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제공근 방식) 활용, '10. 가계동향 조사(통계청) 참조

3) 재산기준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50%는 일반재산 보유시 환산액이 해당 소득에 상응하는 재산수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뿐만 아니라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위험계층에 대해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

〈고용-복지 통합지원 대상 범위〉

구 분		현 행		개선(대상 확대)	정책 방향
근로 빈곤층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	중위소득 50% (확대된 차상위층)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능력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제외자 (취업수급자 등)	고용-복지 통합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의 여건에 적합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차상위 지원사업 등 개별지원 확대
 - 빈곤층의 생활실태, 근로유형,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법제화, 정례화 하여 관련 지원제도의 우선순위 조정
 -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사유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검토, 지자체 재량범위 확대를 통해 선제적 대상 발굴 및 지원유도
 - * 현행 긴급지원제도 선정기준 : 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유기·학대, 가정폭력 등(사유), 최저생계비 150% 이하(생계비 120%), 대도시 기준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소득·재산)
 -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을 상시화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발굴 및 자격 확인체계 구축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 ▲ (추진배경)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여 각부처·지자체·민간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 차상위계층 185만명 중 117만명은 사각지대에 해당('10. 빈곤실태조사)
- ▲ (지원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고려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 ▲ (지원사업) 10개부처 20여개 사업, 지자체 84개 사업, 민간 1,072개 지원사업 연계 추진
 - * '13.12월말 현재 129,897명을 발굴하여 타부처 및 민간 복지서비스에 연계

가. 현황 및 문제점

- 생계가 어려움에도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존재
 - 공적지원·민간지원 등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복지사각지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 약 117만명('10년, 빈곤실태조사)
 - *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 41.9만 가구('14.3월말, 한국전력)
 - 위기가구는 생계비 외에 실직, 질병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 *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167건) 사례분석 결과, 위기가구의 40% 이상이 중복문제 경험('13.12, 보사연)
- 현행 복지지원 체계는 사각지대 발굴 및 체계적 지원 미흡
 - 공적지원제도의 신청주의 원칙과 홍보부족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복지지원 신청 곤란
 - 공공부문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시의적절한 파악과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공적지원제도와 민간자원 간 정보공유와 역할분담 미흡

나. 정책 과제

①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 통장·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방문형 서비스 인력* 등으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전국에 구축하여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3천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0천명 등
- 단전·단수 가구 등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위기가구 정보를 행복e음으로 자동 연계 및 DB 구축 추진 (법적 근거 마련)
 -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하여 방문상담, 복지정보 제공 등 주기적 관리
- 보건복지콜센터(129) 상담인력 보강, 상담방식 다양화(영상수화상담, 모바일채팅 등), 지자체 처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보건복지콜센터(129) 기능 강화

②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담당공무원 재량 확대, 긴급지원절차 간소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급여별 최저수준 설정 등 공적 지원제도 개선 추진
- 사례관리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저소득 밀집지역 등 복지수요가 높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복지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업무가 핵심이 되도록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조직 등 지속적 보강
 -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6천여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증원인력은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
- 공적지원과 민간지원 간 역할분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 강화
 - 민간지원은 공적지원이 곤란한 대상자 및 복지급여 탈락자 위주로 연계하되 대상자 정보를 민관협의체에 공유하여 지원 강화 및 중복·집중지원 문제 방지

③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 제고
 - 보건복지콜센터 홍보슬로건 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 지속 전개



- 생활밀착형 복지제도 홍보
 - 복지 종합안내책자(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복지포털, www.bokjiro.go.kr)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하기 쉽게 개편 등

정책 상황 분석

- (성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단계적 확대
 - ▶ 장애인의무고용제('91) 이후 장애인 일자리('07),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08), 장애인연금('10) 등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단계적 확충
 - * 장애인의무고용제('14년 민간 2.7%, 공공 3%), 장애인재정지원일자리('14년14.5천명),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총구매액의 1%), 장애인연금('13, 327천명→'14, 364천명)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교통,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접근성 제고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07) / 장애인활동지원 : ('10) 30천명 → ('13) 60천명
 - ▶ 장애아동 의무교육 확대 및 문화·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등 교육·문화 여건 개선
 - * 의무교육 확대 : ('10) 만5세아, 고등학교 → ('11) 만4세아 → ('12) 만3세아
 - 생활체육 참여율 : ('08) 6.3% → ('10) 8.3% → ('12) 10.6%

- (한계) 장애인복지 제도의 단계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준은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
 - *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의 취업률(60%)의 59% 수준
 -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98만원)은,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 불과
 - ▶ 특히 교통, 공공시설 이용 등에 있어 사회적 차별을 느끼거나 혹은 접근성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
 - * 저상버스 보급률('13) : 전국 시내버스의 16.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13) : 67.9%

- (정책 환경) '13년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약 251만명(잠정)으로 전체 인구대비 5% 수준
 - ▶ 다만, 등록 장애인의 증가 규모는 '10년을 전후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장애인 중 90.5%)가 대부분을 차지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단위: 만명,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78	197	211	225	242	252	252	251	250

-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 및 고용보장, 의료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은 상황

가. 현황 및 문제점

- '10년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11년 23.6만원)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현 급여 수준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추진
 - * 월 평균소득('11년 기준) : 장애인가구 1,986천원, 전국가구 3,713천원
-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의무고용을 상향, 장애인 고용 기업의 시설장비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 장애인의 높은 취업 욕구에 비해 장애인 고용제도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단위 : 천명, '11년 기준)

구 분	만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자			비경제 활동인구 중 취업 욕구가 있는 자(B)	취업욕구가 있는 장애인 (C=A+B)
		계	취업 인구	실업 인구(A)		
인 원	2,540	978	902	76	178	254

* 출처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나. 정책 과제

①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기초급여는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63%(327천명)에서 소득하위 70%(364천명)으로 확대('14.7)
 - ▲ 기초급여 : ('13년) 96,800원 → ('14.7월) 200,000원
 - ▲ 부가급여 : ('13) 최고 8만원 → ('14.7월) 전년동. 단,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 연금 대신 지원받는 기초노령연금의 생계비 차감분 별도 보전

②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 공공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의무고용 목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상향 : ('13) 2.5% → ('14) 2.7%
 -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 상향 : ('13) 2.5% → ('14) 3%

-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의무 고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 의무고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고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 * 장애인의무고용 : 한국 2.7~3%, 프랑스 6%, 독일 5%

③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

-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기업연수(현장직무 체험), 진로컨설팅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고용' 및 청년층 장애인의 사업현장 기회를 확대하는 '시험고용' 제도 활성화
 - * 지원고용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의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 현장훈련 기간에는 사업체 적응, 업무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
 - * 시험고용 : 청년층(15~38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서 3개월이내의 직장체험 연수 기회 부여,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 지급
- 장애학생 취업률 확대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자립생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 * 전공과 : ('13) 369학급 → ('18) 419학급
 -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확대
 - * 특수학교 학교기업 : ('13) 17교 → ('14) 20교 → ('15) 20교

④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등),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복지 일자리 등 공공형 재정지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14년 14,500명)
 - 직종 현황조사·연구, 시장여건을 고려한 민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참여자의 일반고용 촉진 지원
- 참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아울러 장애유형, 지역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직무개발 및 시범사업 직무매뉴얼 제작 등을 통하여 신규일자리 보급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맞춰 공공 및 민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진
 - 현행 장애등급제도는 복지 서비스 이용의 적격요건으로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서비스 필요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참여 욕구 및 교육문화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통,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 전국 저상 시내버스 도입률 16.4%('13),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1~2급 장애인으로 제한
- '06년부터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여 전문재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 지원하여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 지원중
 - 다만, 대부분의 장애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재활치료의 접근성과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 * 장애의 90.5%가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12년 보건복지부백서)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내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

나. 정책 과제

①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 활용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개선해 의학적 기준 외에 장애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로 전환('16)
 - 등록 장애의 판정 기준을 보완하고 80여개에 이르는 개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 등을 반영한 통합적 판정체계로 대체
- 서비스분야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하고, 등급제 폐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는 등급에 따른 신청제한을 우선적으로 폐지('15~'16)

②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제한을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등으로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추진
- 화재, 가스누출, 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을 확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체계 보완과 장애대학생 교육기회 확대
 - * 장애학생 도우미 확대 : ('13) 2,500명 → ('17) 3,000명
 -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13년 272개소 → '17년 280개소)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15),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④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의 수, 도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상버스 도입 확충
 - 전국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13. 16.4% → '14. 18.9%)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단계별 도입 추진('16년까지 법정 도입대수의 100% 도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근거 마련 및 인증 활성화 방안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
 - * BF 인증건수 : ('14) 140건 → ('15) 160건 → ('16) 180건 → ('17) 200건 → ('18) 220건

⑤ 예방 및 의료 재활 강화

- 권역별 재활병원 및 지역의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장애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14. 9만명)
-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재활병원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기반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보급
 - *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복지 센터 : ('14) 5개소 → ('16) 6개소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전국 확대 ('12년 60개소 → '17년 254개소)

⑥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및 학대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강화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 및 구제를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추진

정책 상황 분석

- (성과) 농어업인 소득 보장 및 농촌 복지·교육·문화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 ▶ 공공서비스 확충 및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정·운영
 -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9개 분야 32개 항목('13.9)
 -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업인의 사회보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지속
 - * (건강보험료)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50% 지원
 - * (연금보험료)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기준 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50%를, 초과일 경우 기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정액 지원
 - ▶ 농지연금,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재해보험 시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시 농어촌 특례 적용 등 농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확대
 - * 농지연금 평균 지급액 : 81만원, 지급 가구 총 2,927호('13년 기준)
 - *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총액 : 1조 4,160억원('12년 기준)
- (한계) 도시 근로자에 비해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고, 접근성 문제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도·농간 서비스 격차 지속
 - ▶ 농지연금, 농업재해보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입조건, 제한된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존재
 - ▶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병의원 수 감소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여건이 열악
 - * 의료기관의 8.6%, 병상수의 13.2%, 의사 중 6.6%만 농어촌에 소재('11.12)
- (정책환경) 고령화,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농업인 소득보장 수준을 보다 강화하고, 의료·복지 분야에서의 도·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
 - ▶ 인적·물적자본의 유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 농촌 노인복지서비스 수요('13, 농진청,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 질병예방 및 치료 서비스 41.1%, 방문간호·간병서비스 12.5%, 가정봉사서비스 9.7%, 교통수단 지원 8.8%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근로자가구와 농어업조사가구 간 소득격차 확대 추세

○ 농가소득 정체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 추세이며, 고령농가 증가 및 연령대별 소득수준 차이 등으로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

*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 ('00) 80.5% → ('10) 66.8% → ('13) 62.5%

* 65세이상 인구비율 : (도시) ('60) 2.5% → ('10) 9.2% / (농촌) ('60) 4.2% → ('10) 20.9%

* 농가소득 5분위 배율 : ('03) 9.0배 → ('11) 12.3배

* 농가소득('11) : (60세미만) 44백만원, (60세이상) 25백만원

□ 도농간의 소득격차 등으로 농어촌 지역 빈곤율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

○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궁극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낮은 소득을 유인하고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

〈가처분소득 기준 도농지역별 빈곤율〉

(단위: %)

구 분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소득 미만		
				40%	50%	60%
농어촌	농어업 종사자	2009	10.5	17.2	27.8	41.0
		2010	11.4	20.1	31.5	44.8
		2011	10.2	17.4	28.6	40.7
	농어업종사 이외 자	2009	9.7	14.8	20.6	28.1
		2010	7.8	14.7	20.3	26.7
		2011	11.0	16.7	24.7	31.8
도시	2009	5.1	7.4	12.4	17.9	
	2010	4.2	7.4	12.2	17.9	
	2011	4.6	7.3	12.1	18.0	

* 출처 : 김태완 외(2012). 농어촌빈곤실태와 정책개선방안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 기초생활수급 소득·재산 산정에 있어 일부 농촌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포괄에는 미흡(기초생활수급률 : 전국평균 3.63%, 농어촌 지역 4.33%)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필요

* 국민연금 가입률(가구 단위) : 농어가 62.2%, 도시가구 77.0% ('13, 농진청, 농업인복지실태조사)

나. 정책 과제

① 농지연금 보장 확대

- 지급액 상향 조정*, 담보농지 평가 방법 개선**, 가입비 면제 등 농지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 부담도 더는 방향으로 개선
 - * 월 평균 지급액 81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조정('14)
 -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농업인 선택
-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장치로 정착되도록 지원 및 대상 확대 추진
 -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14.12)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 집중 홍보 추진('14~)

②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재해보험관리 전담기관 지정('14)하는 등 사업기반 확충
 -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7년까지 69개 품목으로 확대('14년 : 59개)
 -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15) 및 신속·공정한 피해조사를 위한 전문손해평가인력 육성('17)
- 농작업 중 안전사고 및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도입 추진
 - * 농업인·농작업근로자 대상 임의가입방식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현행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강화)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14) 및 하위법령 정비('15), 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보험상품 도입 추진('16)

③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특례 확대

- 농어업인 지출비용 추가 인정 등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 확대('14)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능력판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의 농어촌 특례 적용('14.1~)

-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성 소득에 대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추가 인정('14.8)

* 차감대상 직불금 : 경영이양·친환경농업·쌀소득등보전직불금 → 발농업·조건불리직불금 추가

④ 연금·건강보험료 등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기준소득금액의 단계적 상향 추진

- 기준소득 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원액을 정액으로 지원
-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소득금액* 상향 추진

* 기준소득금액 : ('06) 480천원→('08) 620천원→('09) 730천원→('10) 790천원→('14) 850천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50% 지원(농어촌 주민 경감분 22% 포함)
-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정부발의 '12. 10)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인프라를 확대하여 왔으나, 전반적인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기반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

* 30년 이상 주택 비율('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도시 6.6%, 농촌 20.7%

○ 농어촌지역은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 전국 평균 69.6%, 군 지역 52.7%

* 노인복지관 미설치율(보건복지부, '13) : 대도시 4.35%, 중소도시 14.29%, 농어촌 29.76%

○ 도시지역보다 유병율('11년 기준 농어촌 30.4%, 도시지역 22.8%)은 높은 편이나 의료 시설, 의료인력 등 의료 인프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흡

* 전국 1,500개 읍·면 중 약국 없는 읍·면지역('12, 복지부) : 655개

*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수요('12, 농진청, 농촌지표) : 의료시설 확충 30.9%, 우수장비·의료진 20.1%

□ 급속한 고령화, 다문화가족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 수요 증대 예상

○ 도시지역에 비해 독거노인의 비중도 높은 수준이며, 노인돌봄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

* '10년 독거노인가구(비중) : 전체 1,066천호(6.1%), 도시 625천호(4.5%), 농촌 441천호(13.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 농어촌 지역에서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건강관리/ 증진서비스	아동양육/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장애인 돌봄/재활	가사·간병 방문	기타
도시	39.2	16.5	16.0	17.9	5.2	3.3	1.5	0.3
농어촌	39.6	13.7	19.4	17.0	4.0	3.6	2.3	0.4
전체	39.2	16.0	16.6	17.7	5.0	3.4	1.7	0.3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노동 부문)

○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언어생활·교육·한국생활 적응 등 새로운 복지수요 증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07년 298천명에서 '12년 704천명으로 2.4배 증가,
'11년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은 61.5%를 차지

나. 정책 과제

①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

- 노후주택 점검·개량 및 환경 친화적인 주택 보급을 유도하는 한편,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
 - 농촌주택 개량자금의 용자지원 한도를 도시수준으로 확대(50백만원 → 60백만원) 하고, 에너지 절감 농촌형 주택모델('14년, 8종 → '16년, 14종) 개발·보급
 - 비수도권 도시가스 배관 구축 확대('13년, 195개 시·군 → '16년, 212개 시·군)
- 인구에 비해 넓은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성이 강한 읍·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등 주요 사회서비스가 집적된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육성(~'17년, 50개소)

② 농어촌 서비스여건 개선 및 기반 확충

-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각 단위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 ('14) 1개소(시범사업) → ('15) 5개소 7과 → ('16) 2개소 4과 → ('17) 2개소 3과
- 농작업 질환예방 및 환경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13) 5개소 → ('14) 7개소 → ('17) 10개소
 -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
-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농어촌 학교 대상 ICT 활용 학습 체계 구축(스마트기기 보급,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 및 면지역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추진('13~)
 - 농촌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고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 작은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소의 지역 대상 찾아가는 문화 공연 지원 등 농촌 주민의 문화 접근성 제고 지원

- 돌봄·교육 등 지역 복지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17년까지 100개소)
- 대중교통 취약 농촌지역에 마을주민회 등이 주체가 되어 마을버스, 택시 등을 운행하는 커뮤니티 교통 확산
- * 농촌형 교통모델 : 경제성이 낮거나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해 기존의 버스노선을 보완하는 준대중교통

③ 노인,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강화

- 독거노인 등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조성 확대
- 기존 공공유희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전국 확산 유도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해 농가도우미(지자체)를 지원하고,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지역 조기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교육 강화 및 농업·농촌 관련 취업기회 제공
- * 농촌정착 단계별 기초영농교육 및 멘토와 연계한 1:1 맞춤형 영농교육 등 지원
- 사고·질병 농가,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에 독거노인을 추가(14)하고, 경로당 등 고령자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확대
-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강화

④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보완 및 관리 강화

- 상하수도, 대중교통, 복지 등 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를 보완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안전,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9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분석, 제도개선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정책 상황 분석

■ (성과) 사회적 구성의 변화에 맞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시도

▶ 보편적 가족 문화의 하나로 다문화가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0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06) 16개소 → ('10) 171개소 → ('13) 212개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미혼부·모자 지원기관을 설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사업을 도입('09)하는 등 가족기능 유지에 노력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08) 8세 미만 → ('09) 10세 → ('10) 12세

* 미혼부·모 지원기관 : ('09) 6개소 → ('10) 권역별로 17개소

■ (한계) 정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제고는 미흡, 취학자녀 증가와 함께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사례 발생 등

* 취학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52.4%가 자녀교육에 어려움('12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공간, 낮은 양육비 수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부모가족 지원 희망 정책(2012년 실태조사) : 생계·양육비 지원 71.2%, 주거 11.5%, 아이돌봄 4.2% 순

■ (정책환경) 가치관의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전망

▶ '12년 기준 다문화가족은 70만명 내외로서, '2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 수요는 더욱 증가

▶ 이혼가구 증가 등으로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취약가족이 증가

* 한부모가구 추이(통계청, 2011) : 89만('90) → 112만('00) → 159만('10)

* 이혼가구 추이(통계청, 2011) : 8만('90) → 25만('00) → 52만('10)

가. 현황 및 문제점

- 다문화가족은 '12년 267천가구(추정)로 결혼이민자 가구가 대다수(약 221천가구, 82.8%)
 -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정책수요 변화 예상
 - * '09년 20~30대가 71.2%를 차지하였으나, '20년에는 40대 이상 60%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보건복지부)
 - 거주기간이 긴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초기적응 및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취업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 결혼이민자의 58.5%가 취업중, 미취업 주된 사유는 자녀양육(45.1%) ('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취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등 새로운 정책 수요 예상
 - * 다문화가족 자녀 168,583명(만 6세 이하 62.1%, 만 7~12세 23.9%, 만 13세 이상 14%) (12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안행부)
- 아직은 국민의 다문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
 - 실제로 다문화가족은 직장, 상점·음식점, 거리 등 생활속에서 차별대우 경험
 -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문화 등이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 : 한국 36.2%, 유럽 73.8% (출처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1)
 - * 다문화가족 중 여성의 41.1%, 남성의 42.2% 차별대우 경험('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나. 정책 과제

①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의 정착 및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상담, 정보제공, 교육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생활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 다문화가족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기관에 보급·활용('14~)
- 한국생활에 기정착한 결혼이민자와 초기 결혼이민자 간 멘토-멘티 활동, 나눔봉사단 및 자조모임을 통한 다문화가족 잠재역량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전문화된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여성에게 현장연계형 직무훈련,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운영('14~)

② 자녀 교육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13년 201개소, 292명)하여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언어발달평가 및 언어촉진 교육 실시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 확대 ('12년 26개교 → '17년 140개교)
 - * 다문화 특별학급 확대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3)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 강화
 - * 여가부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교육부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개편 추진 ('14년~)
 - * 각급 학교 이중언어강사 양성·배치 단계적 확대('14년 461명, '15년 단계적 확대)

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 제고
 - 교육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문화 다양성 교육 과정 체계화
 -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 교원 연수 참석 : '13년, 31,000명
 - 공무원, 다문화 시설 종사자 등의 다문화 감수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시행
- 일반학생-다문화학생간 상호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교육 내용을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 * 다문화 친화적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 단계적 개발·보급 : ('13) 유, 초1·2, 중 → ('14) 초3·4, 고 → ('15) 초5·6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자가구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부자가구의 규모와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 *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구 비율(통계청) : ('95) 18.0% → ('05) 19.4% → ('11) 23.1%
-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부담 및 사회적 위축 등의 복잡·다양한 문제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어려움
 - *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353만원)의 절반 미만
 - *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경제적 어려움 62.7%, 혼자 부모역할 부담 22.4%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 그러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2% 불과
- 한부모가 되는 경로, 시기, 양육부모 등이 상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존 정책의 한계
 - 한부모가 되는 연속적 과정에서 준비 및 적응을 위한 욕구, 양육자 성별 등 한부모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 지원 희망 정책(2012년 실태조사) : 생계·양육비 지원 71.2%, 주거 11.5%, 아이돌봄 4.2% 순

나. 정책 과제

①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 * '14년 현재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에 대해 월 7만원 지원
 - *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 16.7%, 100~200만원 미만 51.8%, 200만원 이상 31.4%
 - * 부채원인은 생활비(35.6%), 주거비(30.4%), 사업실패(18.9%), 자녀교육비(6.0%) 순
- 미혼모·부자의 초기 위기상황(갑작스러운 출산 등) 대응,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구축

- 한부모지원 거점기관(17개 권역)에 미혼모 대상으로 임신 초기 대응을 위한 원스탑 정보제공 체계 마련 및 전화상담 창구 개설('14)

* 거점기관(17개소) 심리상담 및 위기지원 : ('13) 8,826건 → ('14) 12,000건

② 주거생활 안정 지원

-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지원

*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지원 : ('13) 22호 → ('14~) 매년 66호

- 시설입소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일정금액 이상 자립준비금을 저축한 경우 퇴소유예제도 도입

- 미혼 한부모의 양육 능력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육아방 설치 확대

- 시설입소 미혼모 아동 육아를 위해 미혼모시설 내 공동육아방 설치 추진

* 미혼모자시설 신축·개축, 기능보강시 공동육아방 설치비 지원

③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강화

- 양육비 이행 지원 관련 법률 제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15.3.25. 시행예정

-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 설치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행정기관 형태의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미국의 OCSE, 호주·영국의 CSA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적 개선에 비해 예방교육 등 사전적 예방 조치 미흡
- 범죄 발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다원화된 지원체계로 인한 피해자의 혼란, 피해자 특성별 지원 인프라 부족 등으로 원활한 피해자 지원에 애로
 - * 성폭력 발생현황 : ('11년) 21,912건 → ('12년) 22,933건 → ('13년) 28,786건
 - * 가정폭력 발생현황 : ('11년) 6,848건 → ('12년) 8,762건 → ('13년) 16,785건

나. 정책 과제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체계 강화

-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생애주기별·계층별 프로그램 확충 등 교육 대상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 * 성인권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 및 유관부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예방교육점검, 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 개선 조치* 등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 품질관리 강화
 - * 언론 공표 의무화, 기관평가 반영 요구,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등(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14.7 시행)

②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 법무부 양성 피해자 진술조력인 배치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조정
 - 지속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상담소와 기능 조정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직업훈련비 지원 등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 장애인·미성년·이주여성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확충
 - * '14년도 기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7개),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4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24개),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172호)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간의 노숙인 지원정책 추진결과 노숙인은 최근 지속적 감소 추세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 도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15,785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노숙인(재활·요양시설)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노숙인(자활·일시보호)	3,763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거리 노숙인	959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쪽방주민	-	-	-	6,119	6,394	6,232	5,991	5,891

- 지금까지의 정책이 위기상황에 놓인 거리노숙자에 대한 시설수용을 통한 보호에 집중되었으나 주거지원, 자활을 통한 재정착 지원 필요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37개소, 노숙인자활시설 76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개소

- 노숙인의 90% 이상이 장애인,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결핵 등 질환을 겪고 있어 자활이나 재정착 지원에 앞서 의료지원 필요

* 장애인 60.0%, 정신질환 4.2%, 신체질환 4.7%, 노인성 질환 3.2% 등

나. 정책 과제

①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 강화

- 거리 노숙인이 산재한 대도시 지역중심으로 아웃리치 서비스 팀 기능 강화('14년~)

* 아웃리치 매뉴얼 제작/보급, 아웃리치 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민관합동 거리노숙인 등에게 자립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는 지원주택 시범사업 실시 ('14~)

② 의료 지원 강화

- 노숙인 진료시설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2차 진료기관 지정 등 필요 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 병·의원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 추진

- 거리노숙인을 진료대상으로 현장의료지원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지원활동 전개

IV-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3.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4.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정책 상황 분석

성 과

- 국가지식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개편
-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 공공부문, 사회적 기업, 해외 일자리 부분 지원
-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 강화
 - ▶ 마이스터고를 도입,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특성화고가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하도록 정부 투자 확대
 - * '13년 마이스터고 졸업률 92.3% ('13.4.1. 기준)
 - * 고교 직업교육 투자 : ('08) 13억원 → ('10) 656억원 → ('12) 4,322억원

한 계

- 채용 및 승진 등 인사관리 등에서 학력(별) 차별 관행과 뿌리 깊은 대기업·공공기관 선호
-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기반을 위해 K-Move 센터 등의 청년 해외진출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로 구체적 성과 창출 미비
- 대중소기업간 복지 격차가 크나, 중소기업 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대기업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 등 근무여건 열악한 상황
 - * 퇴직연금 도입 현황('13.9): 30인 미만 13.2% vs 300인 이상 85.3%
 - *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6.7%, 복지: 대기업의 52.6%, 중소기업 취업 기피요인 1위(35.2%)가 장래성 불투명
- 교실에서만 교육하는 학교, 인력양성을 학교에만 의존하는 기업, 인력양성 역량이 부족한 산업계 등 현장과 괴리된 인력양성시스템

정책 환경

- 청년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는 최근 지속적 감소 추세(고용률 '05년 45.3% → '13년 40.1%)
 - ▶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고,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전망에 따라 이에 정책적 대응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최근 지속적 감소 추세

<청년층 인구 및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구분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년층 (15~29세)	청년층 인구	9,926 (25.9)	9,835 (25.4)	9,863 (25.2)	9,821 (24.8)	9,789 (24.5)	9,720 (24.0)	9,614 (23.4)	9,512 (22.9)	9,550 (22.7)
	경제활동인구	4,858	4,622	4,540	4,461	4,376	4,301	4,240	4,253	4,133
	• 취업자	4,499	4,292	4,222	4,154	4,042	4,027	3,930	3,911	3,826
	• 실업자	360	330	318	307	333	274	311	342	307
	고용률 (%)	45.3	43.6	42.8	42.3	41.3	41.4	40.9	41.1	40.1

* 고용률(%)=(취업자/청년층인구)*100

* 출처 : 통계청, '05~'13년, 매년 5월 기준

- 고용률 감소 추세에서 청년층은 고용불안정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불안을 크게 경험

* 2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현대경제연구원, 2013) : ①일자리불안(27.5%)
②높은 체감물가(23.8%)

- 청년층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는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고학력화 및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

* 학력과잉 비율('13년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 %) : 한국(21.2), 미국(19.7), 네덜란드(14.8)

* 노동시장 진입 연령 : ('06) 22.9세 → ('13) 23.5세

- 스펙, 학교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 동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판단할 도구 부재로 스펙 중심 채용 지속

* 대학 전공지식이 현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52.8%에 불과('09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나. 정책 과제

①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

- 직무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부문별로 개발('14)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개편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전면개정 등 추진
 -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15)
-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17년까지 20여개) 및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 ▶ (공공기관)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활용한 능력 중심 채용 권고
 - ▶ (대기업) 기 구축된 역량 중심 채용시스템에 직무능력 평가요소 강화 유도
 - ▶ (중견·중소기업) 채용컨설팅·교육 등을 병행 지원하여 능력중심 채용 확산
- 스펙에 상관없이 열정·잠재력을 가진 청년을 선발,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 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확대('13. 8개 과정 240명 → '14. 10개 과정 500명)
 - 멘토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청년인재은행DB에 등록하여 기업과 취업매칭 지원

〈스펙초월 멘토스쿨〉

[1단계] 청년선발	[2단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3단계] 청년인재은행	[4단계] 취업매칭		
상담을 통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선발, 관심분야 도출	<문화·정보통신 콘텐츠 분야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산업협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 협의회 ☆☆ 산업협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멘토스쿨 ○○○의 소프트웨어개발스쿨 △△△의 스마트앱스쿨 XXX의 정보보안기술스쿨 </td> </tr> </table>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산업협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 협의회 ☆☆ 산업협회	멘토스쿨 ○○○의 소프트웨어개발스쿨 △△△의 스마트앱스쿨 XXX의 정보보안기술스쿨	인터뷰 등 멘토의 평가를 통해 청년인재은행 DB 구축	(2차 멘토) 기업 채용담당자 (평가 및 채용) 심층면접, 역할 연기 등 역량평가를 통해 채용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산업협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 협의회 ☆☆ 산업협회	멘토스쿨 ○○○의 소프트웨어개발스쿨 △△△의 스마트앱스쿨 XXX의 정보보안기술스쿨				

②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안전·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17년까지 2만명 이상)
- 매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 고용제 도입('14)

- 청년인턴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채용과 연계된 채용형 인턴제 확산 유도
 -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청년 선호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인턴제 허용
 - *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의 소득증가 및 자산형성 촉진을 위해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이 완화(7→3년)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③ 청년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수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창업인턴제를 도입('14.5월) 하여 창업기업에서의 실전근무 경험을 제공하고 근무종료 후 창업시 사업화자금 지원
 - * 대학(원)재학·졸업생(졸업후 1년 이내)이 창업기업에 근무(1년+1년 연장)하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지원
 - '대학생 공동창업공간' 장비설치비 등을 지원(5천만원 한도)하고 임대 대상범위 확대(고졸청년 포함)
- 해외 진출 장려를 위한 해외취업장려금 도입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전문가 멘토링, 맞춤형 교육훈련, 해외진출(취업·인턴·봉사 등) 관련 해외일자리 DB 제공 등 해외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14)

가.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청소년(13~24세)의 향후 진로계획 중 취업이 28.6%이며, 특히 19~24세 청소년은 직업(38.7%, 2012년 사회조사)을 제일 많이 고민
 -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성·흥미(33.9%)인 것으로 조사
- 청년구직자가 고교·대학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경우 빈번히 발생
 - * 특성화 고교나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첫 일자리를 잡은 취업자 비율 : 77.1% (한국고용정보원, '13년)
 -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무만족도 및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도 하락
 - * 직무와 전공불일치자의 경우 일치자에 비해 임금이 10~20만원 낮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년)

나. 정책 과제

① 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NCS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 직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 우수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연계, 우수 현장실습모델 발굴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확산
- 국가·전략 산업분야 등에 조기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특성 영역 다변화 및 부처 지원 강화
 - * 마이스터고 현황('13.5 기준) : 공업 31개, 농업 2개, 수산·해운 2개
 - 동일·유사 분야에서 직무를 지속 수행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 국비 연수 및 유학 기회 제공
- 일반고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위탁직업교육기관을 전문대, 폴리텍대, 기술교육원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

②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 분야별·업종별 강점이 있는 대학 등을 현장수요 맞춤형 후진학 거점대학으로 지정
 - * 전문 회소계열(농업, 마사 등) 및 방송대 스마트 후진학부 대상
- 재직자(3년 이상) 특별전형 규모*와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특별전형 편입학 확대
 - *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 : ('12) 2% → ('13) 4% → ('15~) 5.5%
 - ** (현행)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 (개선) 일반고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고졸자 추가

③ 일학습 병행제 추진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 추진('14~)
 -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인력·숙련에 대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육성 지원
 - * 주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수 : ('14) 1,000개 → ('17) 10,000개

④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 취업촉진,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맞춤형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약정(고용계약서 체결)한 자를 선발,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 ** 희망사다리 장학금 ('14) 1,200명
- 산학협력 대상 확대 및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확산
 - 농어업, 지역 협동조합까지 산학협력 범위 확대 및 대학의 신산업 육성 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연구인턴십 등 전공 심화와 현장중심 교육 강화

정책 상황 분석

성 과

-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2) 등 제반 법령 제정
 - ▶ 법정 근로시간의 축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강화
 - * 1주 40시간 사업장 : '04.7월 1000인 이상 기업·공기업 → '11.7월 5인 이상 전 사업장

한 계

- 육아휴직 급여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한계
- 새일 센터 등 이용자가 40~50대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 경력단절 후 재취업률이 낮은 30대 고학력 여성에 대한 지원은 미흡
 - * 경력단절 유형별로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부족
- 새로운 근무형태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인사노무관리 및 적합 직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은 시간선택제 도입에 소극적
 - * 미도입 사유('14.2월) : 적합직무 부족(33.8%), 생산성 저하 28.5% 등
- ▶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미흡, 시간 선택제 이외의 스마트 워크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미흡

정책 환경

- 여성취업 욕구 증대 추세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일·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필요
 - * 여성취업에 대해 84.3%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 노정
 - 40대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나 남성과 격차(20%p 수준)를 보이고 생계형 하향 재취업 결과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상승
 - * 고용률('13, %, 남성/여성) (25~29세) 69.6/68.0, (30대) 90.2/56.7, (40대) 92.0/64.6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여전히 약 3.3%(2,293명)에 불과
 - * 육아휴직 이용자 수(명) : ('10) 여 40,913 남 819, ('13) 여 67,323, 남 2,29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08)되었으나, 단축급여가 지급('11.10)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등의 요인으로 이용실적 저조
 - * 육아휴직 대신 주15~30시간 단축근무하고, 단축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13년 736명 이용(육아휴직자의 약 1%에 불과)

〈시행이 어려운 육아지원 제도〉

(단위 : %)

	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남성육아 휴직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휴직	기타
근로자	100.0	18.7	18.5	16.1	15.9	14.3	16.5
인사팀	100.0	10.8	29.3	3.7	13.0	12.4	17.8

*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13.6월)

-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08)되었으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참여 저조
 - * 가족친화인증기업(신규) : ('08) 11개 → ('10) 31개 → ('12) 101개 → ('13) 288개

나. 정책 과제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 총근로시간을 줄이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추진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14)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
 - * (현행) 12개 업종 → (개선) 26개로 재분류 후 10개 업종만 특례 유지
- 교대제 개편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14) 등 기업의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

② 육아휴직제도 개선

- 자녀 양육기에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 6세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4)
- 휴직으로 인한 기회비용(소득감소) 경감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가정 내 육아 분담 지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로 상향 (상한도 100→150만원 인상)
 - * “아빠의 달 공약”을 남성의 육아참여 유도를 위해 재설계
- 고용불안 등으로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출생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사업주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 * 현재 임신,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시에만 지원(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 지원)
 - 대체인력뱅크 및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
 -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월 40 → 월 60만원), 대기업(월 20 → 월 30만원)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임신중인 근로자(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 (일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15년)

< 기존 (최대 1년) >		< 연장(최대 2년) >
육아휴직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12개월		단축근무 12개월

*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한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14) (상한액 62.5 → 93.75만원)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7년까지 1,300개)

-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증기준 마련 등 중소기업 인증기관 확대
 - 가족친화 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속 발굴·확대
- *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우리, IBK, KB),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조달청) 등
-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및 업무평가지 반영
-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⑤ 유연근무 확산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4)
 - * 장기계좌를 통해 육아, 교육, 안식년, 퇴직준비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휴가(또는 근로시간 단축)로 활용(임금수준 유지)
- 시범운영('14년 2개소) 및 사업평가·보완을 거쳐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연차적 확대
 -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서비스 품질인증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고용률 제고가 고용률 70% 달성의 관건

○ 고용 선진국들도 적극적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

* 네덜란드('94~'99) : (여성고용률) 52.6 → 61.1%, (고용률) 63.9 → 70.8%
독일('04~'08) : (여성고용률) 59.2 → 64.3%, (고용률) 65.0 → 70.2%

□ 경력단절 여성의 64%가 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취약

○ 새일센터 등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나 단순 직종에 편중되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하여 30대 고학력·유경력 여성의 재취업 지원은 부족

〈경력단절여성 - 새일센터 이용자 현황 비교('12)〉

	경력단절여성 현황	새일센터 이용자 현황
연령	30대(56%) > 40대(26%) > 20대(11%)	40대(37%) > 50대(27%) > 30대(18%)
학력	전문대졸 이상 55%, 고졸 이하 41%	고졸이하 56%, 전문대졸 이상 32%

* 자료 : 여성가족부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일제 위주의 근로관행 및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시간제 근로 비율 : 네덜란드(37.8%), 독일(22.1%), 일본(20.5%), OECD 평균(16.9%), 한국(10.2%) (OECD 2012년)

나. 정책 과제

①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 신설(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리턴아카데미)

- 민관협업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직무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비용 지원

-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이용층 다변화
 -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어촌형 등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 ('14년 시범사업 후 개편방안 마련)
- 경력단절 기간이 길고, 새로운 직업을 희망하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국가기간·전략직종의 기업맞춤형 특화훈련 실시
- 새로운 분야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직종 직업훈련 강화
 - 폴리텍 대학 등 전문기술 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 확대 ('14년 74개 과정, 500명)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유형별 직무를 발굴·조사하여 기업에 제시
 - * 은행·병원 등 시간선택제 적합업종 선도사례 발굴 및 전파
- 지역별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 인건비·컨설팅·사회보험료 등 정부지원 확대
 - * 대전·광주(4.24), 구미(5.20), 수원·창원(6.26), 서울(7.2) 인천·청주(9.2)
 - * 인건비 지원한도 확대(월 60만원→80만원), 컨설팅 전담기관 확충,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등)
- 시간선택제 전용 워크넷, 대체인력뱅크 등 채용 인프라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기반 마련
 - * 전일제 →시간선택제 전환시 지원제도 마련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 돌봄, 건강관리, 상담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유망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 치매특별등급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완화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
- △ 금연, 비만, 치매예방 등 주민의 건강욕구를 반영한 통합 건강증진사업 확대
- △ 4대 중독, 자살 등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 △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 대상 '치매특별등급' 신설 추진

- 노후설계,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ICT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 융복합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 돌봄서비스 분야 등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제공기관의 근로기준 관련 법령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률 제고
 - *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유형별 업무 표준안 안내 등
 - 4대 돌봄바우처 사업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 표준안 검토 및 방안 마련
 - 가격규제 완화, 제공기관 육성책 마련 등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제공기관 자생적 처우개선 유도

정책 상황 분석

성 과

-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등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 ▶ 연령에 따른 퇴직·해고 등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반 법률 제정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3.21)
 -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제도 도입, 중고령자 재취업지원 기관 확대 등 제도 및 인프라 확충으로 고령자 고용율 다소 개선
 - * 55~64세 고용율 : 59.3%('06년) → 63.8%('11년)
-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연령차별 금지, 60세 정년제 시행 도입 등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3.21, '13.5.22)
 - * 55~64세 고용율 : 59.3%('06년) → 63.8%('11년)

한 계

- 장년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직자 유형별 특성에 맞춘 고용서비스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중복* 문제도 제기
 - *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장년 일자리드림 프로젝트,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 인재은행 등
-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을 통한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불충분
 - ▶ 50세 중반 이후 대부분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상황(실제 퇴직연령 53세)
 - ▶ 전직지원 및 생애 재설계 지원체계 미흡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재취업 등에 따른 빈곤층으로 전락
 - * 50~59세 상대빈곤율(통계청, 가계조사, '11) : 임금가구(7.6%), 자영업가구(12.9%)

정책 환경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 급속한 고령화로 장년층 일자리에 대한 관심 증대
 - ▶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자리와 노후를 가장 크게 걱정
 - * '고령화 7% → 초고령 20%' 도달연수 : 한국(26년), 일본(36년), 미국(94년), 프랑스(154년)
- 50~64세 장년 고용률이 70%에 근접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
 - ▶ 고령사회 진전('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3%)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17년)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나, 남성·전일제 중심 고용구조로 장시간 근로 만연
-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1,705시간)을 387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에도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12)
 - * 연간 근로시간('12, 시간) : 한국 2,092('13년 2,071), 독일 1,317, 영국 1,637, 일본 1,765, 미국 1,798
 - ** 1인 시간당 노동생산성('12, USD) : 한국 28.9, 미국 61.6, 일본 40.1, 독일 58.3
- 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용 비율은 선진국의 1/10 이하에 불과

(단위 : %)

구 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 근무제	근로시간 계좌제
한국	6.1	3.3	2.0	1.4	미도입
선진국	51.3 (일본, '12)	54.0 (미국, '09)	88.0 (영국, '12)	51.0 (미국, '09)	41.9 (독일, '08)

* 출처 :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13.5)

나. 정책 과제

①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 총근로시간을 줄이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추진
 -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단계적 검토('14)
 - * 규모별 단계적 시행,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확대 등 노사정합의를 통해 산업현장의 부담 최소화 방안 추진
- 교대제 개편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14) 등 기업의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안) >

- ▶ (컨설팅)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종합컨설팅 확대
- ▶ (신규채용 인건비)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
- ▶ (설비투자 비용)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최대 2억원 한도) 및 융자지원(최대 50억원 한도)
- ▶ (임금보전 비용)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하는 경우 50%를 6개월간 매칭 지원(최대 1인당 10만원)

-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4)
 - 장기계좌를 통해 육아, 교육, 안식년, 퇴직준비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휴가(또는 근로시간 단축)로 활용(임금수준 유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선택적·탄력적·재량근로시간제 활성화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2주 → 1개월, 3개월 → 1년

② 정년연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구분	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장
2016.1.1 적용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2017.1.1 적용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60세 정년제 정착을 위해 정년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16~)
- 정년 연장이 노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채용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금직무 체계개편
 - 정년·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 * 대기업(300인 이상) 대상 '정년연장 운영현황 조사' 실시('14~)
 - 임금직무센터 설치 및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모델 개발('14~)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평균 58.4세)과 실제 퇴직연령(53세) 간 격차가 큰 편
 - 장년인구 지속 증가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가 핵심
 - * 고령화 속도(고령화 7%→초고령 20%) : 한국(26년), 일본(36년), 미국(94년), 프랑스(154년)
 - 베이비부머(55~63년생, 733만명) 대량 퇴직에 따라 숙련기술 단절 우려
- 이직 후 생계형 창업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
 - 장년인구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 운영 및 창업 실패*, 저임금 일자리 재취업 등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
 - * 4인 이하 사업장 92.2%, 5년간 사업체 생존율 23~44% 수준
 - * 50대 상대빈곤율('11, 통계청) : 임금 가구 7.6%, 자영업 가구 12.9%

나. 정책 과제

- ①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추진
 - *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내로 조정(40시간 기준 50~75% 수준)
 - 퇴직(예정자)들의 제2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생애 재설계 컨설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하는 취업아카데미 설립 확대
 - * ('13) 505명 → ('14년) 1,000명
 - 중장년 대상 훈련수요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과정 개발
 - 개인별 현황 진단 및 생애 재설계 멘토링,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및 관계부처 일자리 연계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중장년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확대
(14년 28개소)

* 고용센터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취업지원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중장년층 일반에 대한 상담-취업알선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 사회공헌일자리사업(14년 3천명), 산업현장교수단*(13년 303명) 등 퇴직전문 인력의 전문성·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

* 대한민국명장, 기능올림픽입상자 등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선발하여 교육·컨설팅, 숙련기술 등 지원

○ 부처 협업, 민간기업과의 협약 등을 통한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확대

- 제대군인 다수 거주지역 위주로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치 확대

* 전국 거점도시에 7개소 운영 중(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북부, 경기남부)

- 전문 컨설턴트 활용한 1:1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유관기관과 구인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

* 고용-복지종합센터(1개소), 고용센터(82개소), 시·도 일자리센터(234개소) 등

정책 상황 분석

성 과

-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12~)
 - * 차별시정제도를 강화·시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감독 권한 부여('12)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빈곤층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 ▶ 자활장려금, 이행급여('11), 희망키움통장 등을 도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유도
 - * 탈수급율 : ('09) 7.7% → ('10) 9.0% → ('11) 10.0% → ('12) 14.7%

한 계

- 일을 통한 빈곤탈출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서 가시적 성과 달성 필요
 - ▶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
 - *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46%미만(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보호범위는 제한적이며, 반복적 범위반에 대한 처벌도 적음
 -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실효성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부족
 - * 고용보험,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EITC 등

정책 환경

- 소득분배 및 빈곤지표의 악화 추세 속에서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도시근로자 가구 상대빈곤율(가계동향조사, %) : ('01) 8.2 → ('07) 10.8 → ('11) 10.2
-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수도 높은 실정
 -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 170만명,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 9.6%('12년 기준)
 - * 임금체불 등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는 28만명으로 추정('12년)

가. 현황 및 문제점

-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2년 기준 170만 명에 달함
 -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가입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제외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
 - * 법적으로 가입대상이나 실제로 미가입한 경우가 '12.8월 기준 412만명(27.7%)
 - * '12.8월 기준 법적으로 가입이 제외되는 미적용 대상 : 비임금근로자 716만명(17.1%)+임금 근로자 중 적용제외 286만명(16.1%)
- 일자리의 질 저하방지의 중요성 대두
 - 고용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용률이 높아지더라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근로빈곤층이 증가
 - 비정규직 비율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임금 근로자 3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
 - * OECD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기간제) 비율은 23.8%('11), OECD 평균 11.8%
 - * 비정규직 추이(만명) : ('10.8월) 569 → ('11.8월) 599 → ('12.8월) 591 → ('13.8월) 595
 -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내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고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도 미흡,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
 - * '12.10월 현재 2년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537천명) 중 정규직 전환자는 13.9%(75천명) (출처 : 고용노동부, '13년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
- 사내하도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11.7월 제정)의 한계로 인해 근로자 보호에 미흡
 - '10.8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내 도급근로자 수는 326천명으로,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69.4~79.2% 수준으로 낮고, 평균 근속연수는 3.4년에 불과
 - 대기업 중심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증가로 근로빈곤층의 확대 초래 우려

나. 정책 과제

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 * '15년까지 65,711명 전환계획('13년 3만명, '14년 2만명, '15년 1만5천명)
-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도입('13)을 통한 대기업의 자발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시지속적 업무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방법, 전환 후 처우 등 제시)」 제정 및 협약 체결
- 징벌적 금전보상제* 도입,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 및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차별시정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기업의 차별시정 지도
 - * 고의나 반복적인 차별 적발 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최대 3배)을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
 - **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으면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개선

② 적정 최저임금 수준 마련 및 준수

- 최저임금 최저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 최저임금 수준 설정을 위한 기준 마련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저임금(원)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인상률(%)	12.3	8.3	6.1	2.75	5.1	6.0	6.1	7.2

- 반복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되, 배상수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최저임금 미만시 즉시 사법처리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 (현행) 시정지시(25일) 후 미 이행시 사법처리(3년 이내 재 적발시 즉시 사법처리)

③ 저임금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내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원·하청 근로자간 격차완화를 위해 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
 - *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집중 홍보, 가입 회피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통해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자진 유도 : ('12) 412만명 → ('18) 200만명('12년 대비 약 50% 감소)
- 산재보험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노무관행,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현행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휴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토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적용률 제고 방안도 병행 추진
-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추진
 - 현행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을 중심으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 기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 병행

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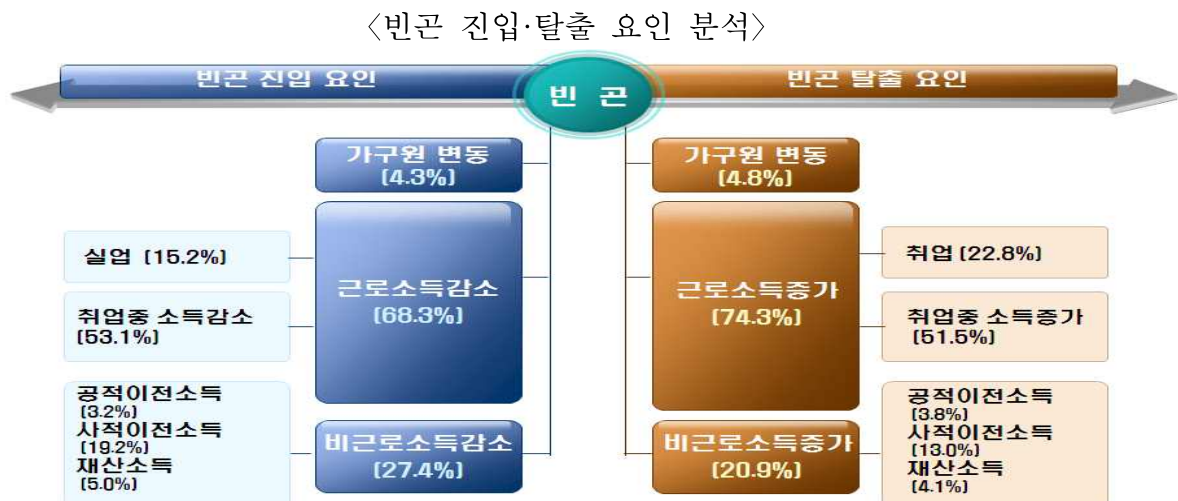
- 세계 각국은 취약계의 자립 지원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활성화(activation)* 및 창구단일화(one-stop service) 등을 통한 근로-복지 연계 추진 중

* 취업알선·직업훈련, EITC, 보육지원 제공 및 구직의무 부과 등

** (英)Jobcentre Plus, (네)Center for Work and Income, (덴)Jobcenter, (호)Centrelink, (獨)ARGE

- 우리나라는 그간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각 제도의 실효성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부족

* 고용보험('95), 자활근로사업('00), EITC('09) 취업성공패키지사업('09) 도입 및 전국 각지에 고용센터 설치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동연구원(2007)

나. 정책 과제

①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근로장려세제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확대하여, 취업시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15)
- 지급 기준(현행 2자녀 최대 2,100만원)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점증구간 및 점증률 확대

- 저소득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중·장년까지 수급대상 확대*

* (현행) 60세이상 → (개정) 50세('16년부터), 40세('17년부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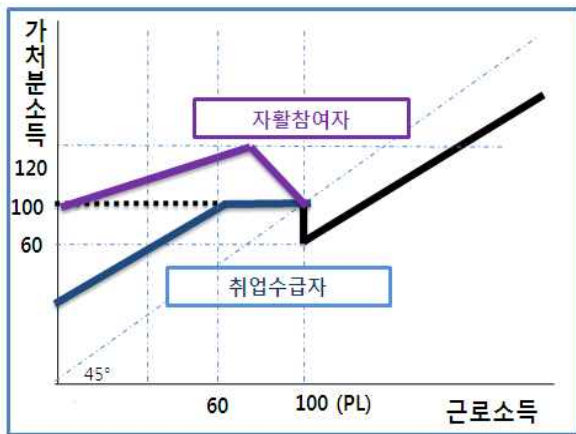
- 취업 시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적용에 따라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등 관련 제도 연계 개편

○ 자산형성지원 사업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60%에서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확대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빈곤탈출 기회 마련

- 민간매칭금 제도개선, 근로소득 범위기준 조정, 맞춤형 급여체계와 연계한 제도 개선 등 내실화 병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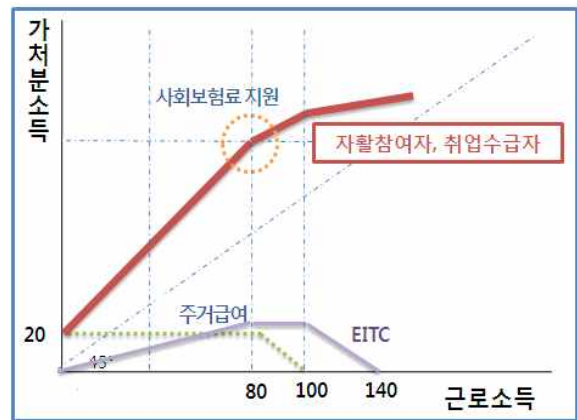
- 자산형성 및 유지를 위한 금융 교육 이수와 취·창업 연계 등 사례관리 강화

[현행]



* 가처분소득=근로소득+보충급여(+자활장려금)
* 현금급여 기준 100만원, 추정소득 기준 60만원, 자활장려금은 자활참여자 최대 30% 지급

[개선]



* 가처분소득=근로소득+주거급여+EITC+사회보험료
* 생계급여 기준 80만원, 주거급여 최대 20만원, EITC 최대 30% 지급

2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 확대

○ 조건부수급자 뿐만 아니라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복지 통합지원 대상 범위〉

구분		현행	개선(대상 확대)	정책 방향
근로 빈곤층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50% (확대된 차상위층)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능력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제제외자 (취업수급자 등)	

- 중소기업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표준훈련비 단가 현행 100% → 120%)을 강화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하고, 맞춤형 훈련지원 강화(현장훈련+이러닝)
- 비정규직 훈련의 지원요율 인상(현행 80~100% → 120%), 자비부담 면제(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인훈련지원 효율화·확대 추진

③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통합 전달체계 구축

-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
 - 통합신청·접수 창구 운영,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급여 및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관리 기능 수행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금융, 보건 등 추가적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상담·접수 인력 등을 함께 배치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 * 고용서비스, 복지 신청·접수 창구 운영, 사례관리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금융·문화 등 추가적 서비스 제공 가능
 - 고용복지센터 선도지역 선정 및 개소('14) 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고용-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17)
- 고용-복지망 연계를 통한 통합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일모아시스템 연계를 통해 참여자 특성(지역, 소득수준, 실업·장애 여부 등)에 적합한 복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 통합 제공
 - 일자리 참여 및 복지급여 수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반복 참여 제한,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등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④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 직접일자리 사업을 사업 목적·성격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가를 통해 사업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 추진('14)
-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성공 패키지 중심으로 재편('15년)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시범사업*(13.9월~, 53개 시군구)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추진(14.5월~, 126개 시군구)

* 근로빈곤층은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배치하여 일반 노동 시장 진입 등 지원

○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행 보조금 지원 방식을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으로 개편

- 지역자활센터를 '탈수급 집중형', '사회서비스공급형', '사회적경제지원형' 등으로 기능을 재설정하고, 형태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 전환

〈 (참고)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

* 밑줄친 부분은 신규제도

생애 분야		영유아 (0~5세)	아동청소년 (5세~10대)	청년 (20~30대)	중장년 (40대~64세)	노인 (65세 이상)	
기본 목 표	소득 보장				국민연금 내실화,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기초연금도입	
	돌봄 교육 문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독거노인 돌봄 강화	
		누리과정 확대		소득연계형 빈곤등록금	평생학습 / 노후준비 교육		
			청소년 역량개발 문화예술교육 확대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일자리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진로 교육	일학습병행제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중장년 취·창업 지원		
	주거				신혼부부 주거지원	렌트푸어 지원	거주주택 개조 지원
						하우스 푸어 지원	
	건강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치매특별등급 신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 비급여 부담 완화					
	학교체육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안전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노인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특 수 목 표	장애인				장애연금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6~64세) 확대, 이동·편의 증진, 예방 및 재활 강화					
	다문화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적응 지원					
	한부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확대			통합 지원 서비스 강화		
	노숙인				주거지원, 고용지원, 거리 노숙 예방지원		
	비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농지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주거·교육·양육·의료 정주여건 개선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주택바우처 도입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VI-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2.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정책 상황 분석

성 과

-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복지재정 확대
 -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장애인 연금 도입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 기반 강화

한 계

- 복지지출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지속
 - ▶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 연금 등 관련 지출 급증이 예상, 이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제기 및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짐
- 복지지출 및 사업수가 확대되었음에도 중복 및 누락,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체감도 낮음
 - ▶ 각부처별로 시행 중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고 정보연계 미비로 중복 및 누락발생
 - ▶ 수급자 선정 정확성 제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원 수요의 지속 증가
- 지방재정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
 - ▶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 의무(매칭비) 증가
 - * 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사업비(지방예산비중) : ('09) 41.8조(30.4%) → ('13) 55.1조(35.1%)
 - ▶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방에서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하 등 문제 제기

정책 환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심화 등 복지수요 확대 및 복지재정 한계가 동시에 예상되는 상황
 - ▶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됨과 동시에, 중산층 비중 전반적 하락 모습
 - ▶ 복지수요 증대, 경기대응 필요성 등 지출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도 지속 증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 지출과 사업 수가 급속히 확대
- '13년 현재 17개 중앙부처에서 총 292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자체에서도 약 4만개의 사업을 시행 중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구분	계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고용부	교과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지경부	기타
사업수	292	126	38	22	21	19	15	12	5	9	25

-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고, 중복 및 누락, 집행단계에서의 과부하 등 비효율 발생
- 또한, 복지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설계·시행됨에 따라 대상·기준·규모 등이 제각각 이어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과 업무 효율화·전산화 저해
-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복지의 중요성 증대

나. 정책 과제

① 사회보장정책 운영방향 수립

- 장기적인 제도 운영원칙 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운영방향 정립
-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 관련 통계 체계화

* 사회보장통계를 심층분석하여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공개

② 사회보장제도 유사·중복 조정 등 효율화 추진

-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 조정 및 기존 사업의 적극적인 조정·연계 병행 추진

- 신규 복지사업 신설 또는 변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는 등 사전협의 제도의 이행력 확보 추진
- 현행 복지사업 중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연계·조정 방안 마련
- 복지사업에 공통 적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13) 및 적용 추진('14~)
- 기존 복지사업은 재정당국 및 사업부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신규 복지사업은 협의·조정체계 활용 및 표준화 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설계 유도

③ 부정수급 예방체계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각 부처 공적자료를 통합·연계하여 활용
 - *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관리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일반법적 근거로서 「(가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총괄 부서 운영('14) 등 인프라 확대
 - 사회보장 관련 빅데이터(행복e음, 각 사회보험 등)를 활용한 부정수급 유형 발굴 및 적발기능 강화
 -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모바일 앱 개발 등 신고채널 다양화, 신고포상금 도입·확대 등 신고체계 정비

④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강화

- 장기요양보험, 보육, 유아교육, 직업훈련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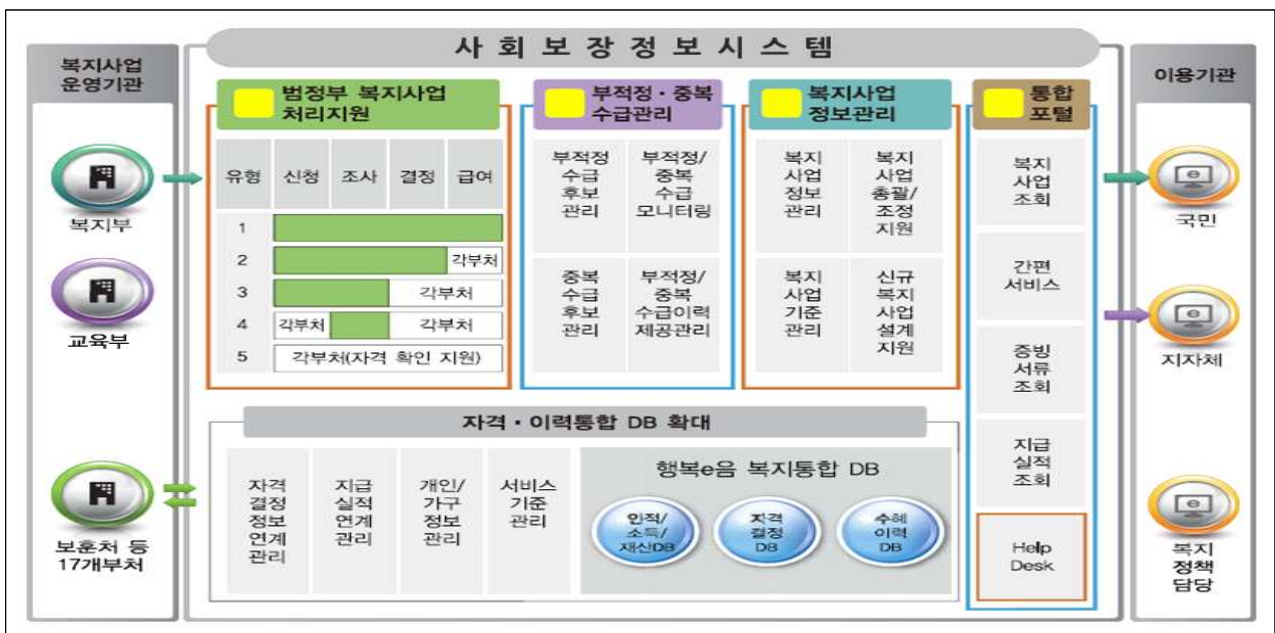
- ▲ (장기요양) 장기요양서비스 받은 내용 통보제 시행('13.12)
- ▲ (어린이집) 부정수급 의심 유형 10종을 추가 개발하여 사전 모니터링 강화('13.12~)
- ▲ (유아학비) 유아학비 담당자 및 e-유치원시스템 사용자 연수 강화('13.11~)
-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 훈련생 연락처 등록 의무화('13.12~)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담합 등 방지 강화
 -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전 예방 모니터링 체계 개선('14)
 -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인센티브 강화*, 기획조사기구 설치** 등 사전모니터링 체계 개선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향 (3,000만원 → 5,000만원, '14.3)
 - ** 현행 부정수급조사과(6개청)를 고용센터와 분리,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개편('15)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성과의 전부처 확산을 위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범정부) 추가 구축('13.2)
- 복지급여 통합프로세스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등 83종의 복지급여 제공(연간 13조원), 통합상담·사례관리 및 민관 복지자원DB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임대주택사업(국토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교육부) 등 범부처 복지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및 편의성 제고('13.12)
- '복지지킴이'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지원(70여개 사업, 150여종 중복유형), '복지알림이' 구축하여 복지사업 정보(중앙부처:360개 및 지자체:12천여개) 제공('13.6)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은 증가했으나, 재원 누수 방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증대
- 수급자 선정 정확성 제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원 수요의 지속 증가
- 부처·기관간 협업, 개방 및 공유를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필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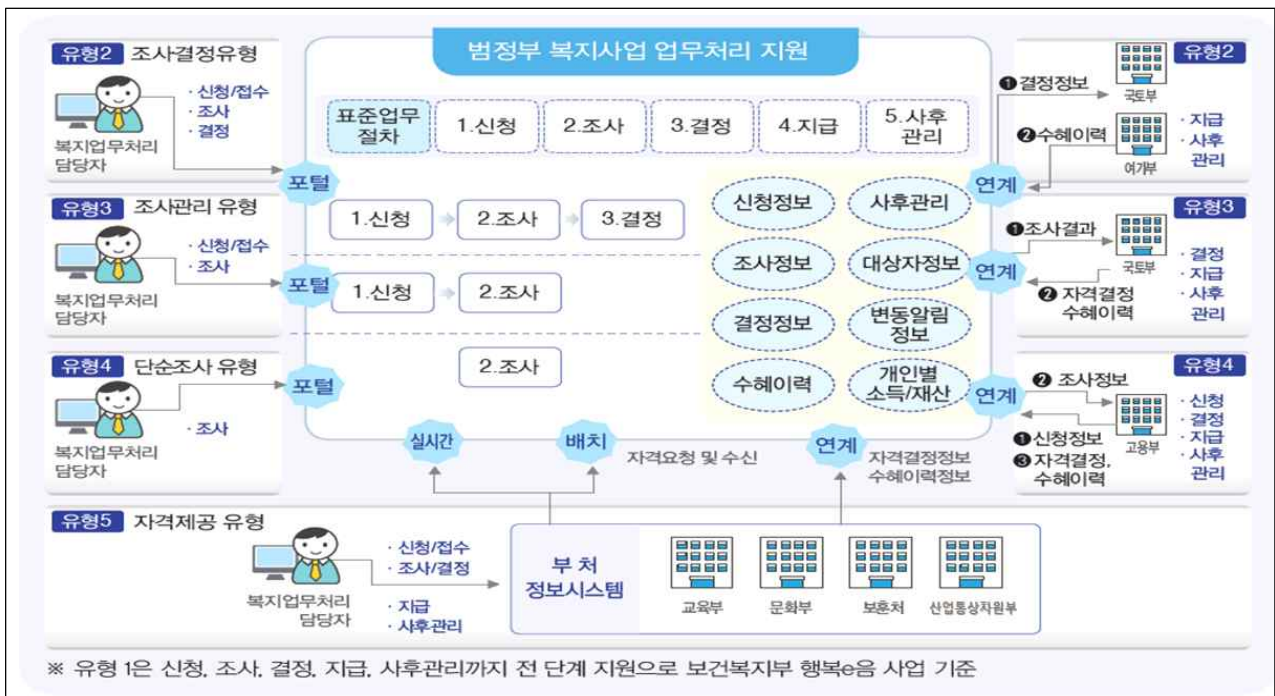


나. 정책 과제

① 복지행정 효율화 지원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14) 및 기초연금제도('14.7) 도입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 개편 등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등을 위한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 학자금 대출·장학금 지원사업(교육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부)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구축('14)
 -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적정 대상자 선정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 도모
 - 향후, 업무처리지원이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이 시급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구축
-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지원을 위한 변동 정보 제공, 중복 사전·사후 확인 시스템 운영 및 대상 사업 확대, 기능 고도화 추진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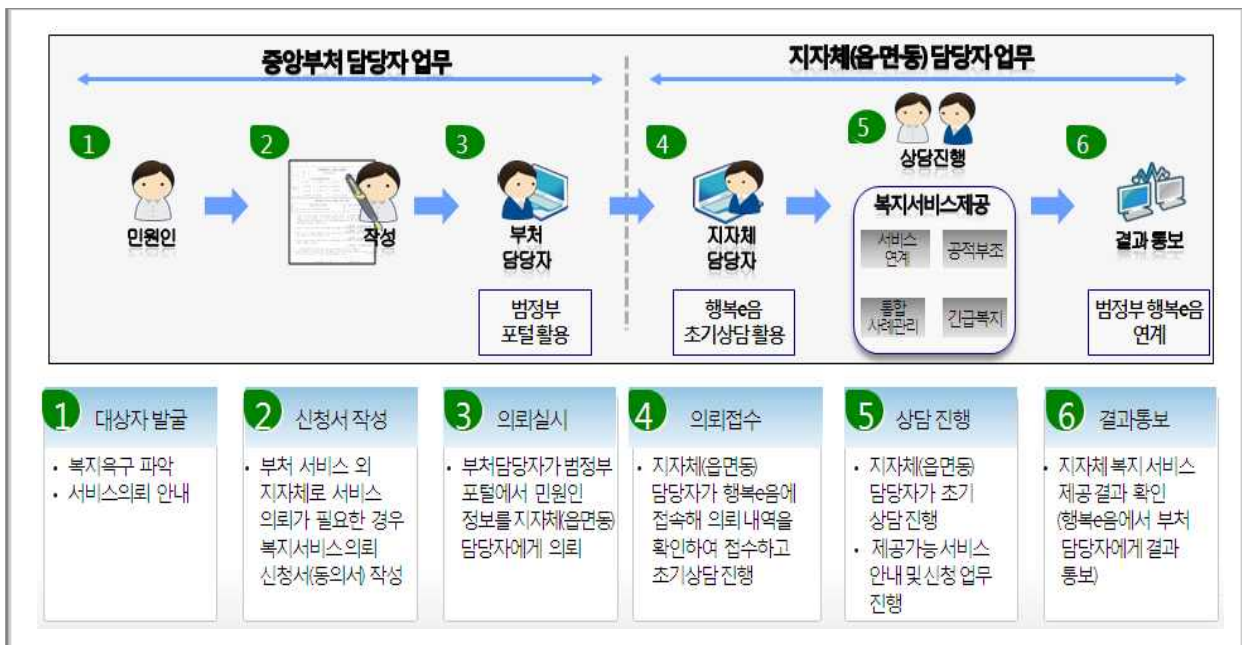


※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부처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반 조성

- 민·관 복지자원 통합DB를 구축,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적의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적 기반 마련 (지자체 등 담당자가 검색을 통해 자원 선정)
 - 지속적 DB 품질평가 및 내용확대, 검색기능 강화를 통해 원활한 자원활용 지원
- 개인의 소득·재산 등의 자료 입력 시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시스템」 구축('15~)
- 대국민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성 향상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고용센터 등 각 분야별 전달체계에서 타 기관 서비스가 필요한 민원인에 대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서비스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활성화 추진 (복지-보건은 旣 구축, '14.1)

〈복지 서비스의뢰 개념도〉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 각종 정보의 범위 및 처리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준 마련 등을 위한 '(가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14~)
-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 교육, 위반사례 처벌기준 강화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실시('14~)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기초노령연금('08)·양육수당('09)·장애인연금('10) 도입 및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증가
 - 지방분권 강화, 복지사업 매칭 확대 등으로 '05년~'13년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13.3%)은 지자체의 전체 예산 증가율(4.9%) 상회

< 연도별 복지재정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복지재정	50.8	56.0	61.4	68.8	80.4	81.2	86.4	92.6	97.4	8.5%
(중앙부처)	24.2%	25.0%	25.9%	26.2%	26.6%	27.7%	28.0%	28.5%	28.5%	-
사회복지예산	12.9	15.3	18.8	23.7	29.2	28.8	30.4	30.9	35.0	13.3%
(지자체)	12.1%	13.3%	14.7%	16.4%	18.6%	19.2%	19.5%	20.5%	22.3%	-

* 출처 : 2013년도 나라살림(기획재정부)

'05~'11년 결산 기준, '12~'13년 예산 기준(안행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지방재정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와 직결된 재산과세 위주(44.1%)의 지방세원과 비과세·감면 증가 등으로 불안정성 지속
 - * 평균증가율 비교('09~'13) : 국세 7.1%, 지방세 4.5%
 -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지방비 부담 의무(매칭비)가 있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 부담 증가
 - * 지방비포함 국고보조사업비(지방예산비중) : ('09) 41.8조(30.4%) → ('13) 55.1조(35.1%)
- 대부분의 복지정책 수립시 중앙과 지자체간 협의가 미흡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제기
 - 의무적 복지지출, 전국민 대상 보편적 서비스 등 복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나. 정책 과제

① 자주재원 확대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 '13년말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13) 5% → ('14) 11%로 인상
- 지방세 체계를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좋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 * '08~'12년 연평균 증가율: 소득+법인세 5.0%, 부가가치세 6.2%, 취득세 △1.7%
 -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고 법인세분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13)
 - *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 * 지방세 비과세 감면률은 22% 수준(국세 13%)

② 국가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 제고

- 보육은 법률상 국가와 지방의 공동책임인 점, 영유아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 * 0~5세 인구 추이: ('08) 279.0 → ('12) 277.8만명(연평균 증가율 △0.1%)
- '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맞춰 기존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편중으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통합

③ 중앙-지방간 합리적 기능 조정

-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15~)

〈영국의 역할분담 및 전달체계〉

- △ 현금급여는 국가사무로 고용연금부와 지역 job center+를 통해 직접 수행
- △ 복지서비스는 보건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 수행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적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일차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 각 연금제도는 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설치·운영중

〈4대 공적연금제도 개요('13.12월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도입	1988년(1999년 완료)	1960년	1963년	1975년
보험료율	소득월액의 9% (직장가입자는 사용자·본인 1/2씩)	기준 소득월액의 14% (국가·지자체와 공무원 1/2씩)	보수월액의 14.0% (국가와 군인 1/2씩)	기준 소득월액의 14%(교직원과 사용자 1/2씩)
노령연금 개시시기	61세('13)	65세(10.1월 이후 임용) 60세(10년 이전 가입) 퇴직 익월('96년 이전)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65세('10년 이후 가입) 60세('10년 이전 가입)
정부재정지원	공단운영비 중 100억 정액지원 농어민보험료 보조	연금부담금 6.7%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연금수지적자분	연금부담금 8.5%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연금수지적자분	연금부담금(2.759%) 퇴직수당부담금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잔여액
가입자수	20,745천명	1,073천명	183천명	277천명
수급자수	3,634천명	363천명	82천명	48천명

* 출처 : 2012년도 예산안 중점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었으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및 제도의 내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
- * 2차례 제도개혁을 통해 적립금 보유기간 13년(2047→2060년) 연장
 - * 현행 제도 유지 시 '44년 수지적자 발생 후 '60년까지 적립금 보유 전망(제3차 재정계산)
-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고급여-저부담' 체계 유지로 인해 기금 고갈 상태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예상

〈중장기 재정전망(수지차)〉

(단위 : 억원)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국민연금	405,228	580,871	781,307	987,767	421,742	-988,910
공무원연금	-13,072	-30,251	-62,518	-	-	-
군인연금	-12,504	-16,782	-21,496	-31,826	-45,140	-63,009
사학연금	10,339	13,901	9,083	-35,768	-	-

* 출처 : 2012년도 예산안 중점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책 과제

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18년(제4차 재정계산) 이전까지 장기 재정 목표 설정

- 현 상황 평가, 외국 사례 연구 및 재정목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등 사전 준비를 통한 위한 사회적 논의기반 마련
- 각계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 재정목표, 각 주체(국가, 국민, 국민연금공단 등)별 역할 등 설정 추진

* 보험료 조정 등의 구체적 재정안정화 방안은 재정목표 설정 이후에 검토

〈재정 목표 설정 전 준비 작업〉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평가 실시
- 외국의 재정목표 설정 사례 조사 및 관련 연구 추진
-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으로 재정목표 설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 환경 조성
- 국민연금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대국민 인식도 제고

○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내 채권 중심의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를 해외·대체투자로 다변화

* 주요연기금 채권비중 : CalPERS(美) 19%, CPPIB(캐) 32%, ABP(네) 39% / 국민연금 61%(국내 57%, 해외 4%)

- 기본방향, 투자전략, 위험관리, 운용기반 강화를 포괄하는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금운용조직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② 직역연금제도 합리적 개선

○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관의 보수격차 등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마련

-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부담 경감
- 공적연금間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객관적·중립적 개선 대안을 검토하고,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대안 마련

정책 상황 분석

성 과

-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조직과 기능을 조정 및 인력 보강 추진
 -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 대책 시행('09.10)으로 지자체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추진
 - ▶ 복지대상자 조사, 급여 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 읍면동을 통한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07)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 계

-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업무부담 가중(복지깎때기 현상) 등으로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 복지욕구 확대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및 인사상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소진현상 발생
 - ▶ 업무의 다양성·복잡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가 요구되나, 맞춤형 교육 기회 부족
- 민간 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관협력 활성화·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계화된 모델 제시 및 기반 강화 필요
- 그간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기조는 재정투자 위주의 사업으로 일자리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에 한계 및 유사 사업* 간 지원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임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등
 - * 중장기적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 일자리보다 고용지원서비스가 효과적(KDI, '13)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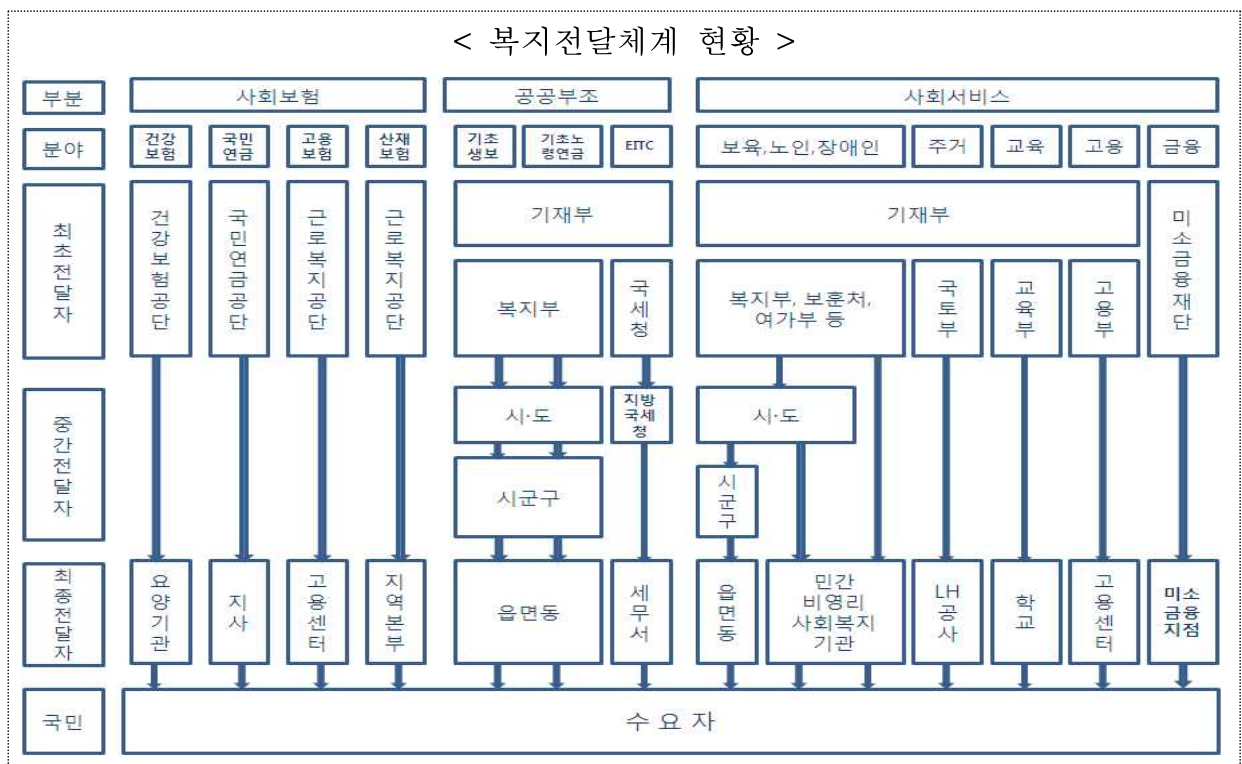
- 복지정책이 확충되고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업무를 담당할 복지 인력 확충 문제 지속적 제기
- 최근 양극화·고령화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충족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제도 확충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 및 업무부담 가중

○ 292개 복지사업 중 지자체를 통해 170개 사업*(58%)이 전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구축('13.2), 통합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로 지자체 역할 증대 예상

* 신청(162개), 조사(156개), 결정(148개), 급여제공(129개)



□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현재 복지업무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3,487개)에 복지담당공무원 평균 2.9명(복지직 2.0명, 행정직 0.9명) 근무

○ '14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국정과제 본격 시행시 복지 행정 업무부담 가중 예상

나. 정책 과제

① 동(洞)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 지자체 사무·기능 조정, 인력·조직 개편, 업무효율화 등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우선 추진(~'14.4)
 - * 기능보강형 개편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지자체는 '13.12월까지 이행계획 수립
- 원활한 기능보강을 위해 일반행정업무 시군구 이관, 복지동장제 도입, 복지인력 최소배치 기준 설정, 행정직·복지직간 협업 등 필요조치 추진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의 주요내용

- ① 일반행정 업무의 본청(일반구의 경우 구청) 이관, 기능 쇠퇴업무 폐지·축소, 단순 제증명 업무 감축을 통한 가용인력의 복지업무 재배치
- ② 복지공무원 확충 대책 이행 철저, 사회복지인력 최소 2명 이상 배치, 동장 복지직 복수직렬 조정 및 동장의 복지행정 책임성·역할 강화
- ③ 보편적 복지업무의 행정직 등 타 직렬 담당, 탄력적 업무분장과 협업강화, 신규자 업무부담 완화 방안을 통한 복지업무 효율화
- ④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고용·보건 등 각 부문과의 연계·협력 강화,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원스톱 맞춤형서비스 제공

-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토대로,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등 확충을 통한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4~)
 -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단계적 확산 추진
 - 전달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 인센티브(안) : 복지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차등 지원, 각종 선정사업(시범사업 포함) 우대, 지자체 평가 반영, 각종 포상 등
- 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
 -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 관련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
 -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원, 사회복지, 주민자치 관련 기능에 대한 실태분석을 거쳐 종합적 개편 방안 마련(10월)
 - * 기능 등에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 검토(예시 : 주민·복지센터)

②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

-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강화를 통해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지역 복지자원 총괄·관리 기능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14.6) 및 단계적 확산('15)

- 지역농협 내 행복나눔센터를 설치, 민간조직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보완 ('17년까지 100개소)

○ 농촌 중심지와 마을을 연계하는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17년까지 선도지구 50개소)하여 배후 마을에 대한 복지·문화 등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 중심으로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공동이용시설 사례〉

- △ (공동생활 홈) 김제시에서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운영비를 지원(127개소, 1,258명 이용 중)
- △ (작은목욕탕) 전북도는 공중목욕탕이 없는 도내 읍면지역에 목욕침대, 점자블럭 등을 포함한 간이 목욕탕을 조성하여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의 삶의 질 개선('13년 : 33개소)

○ 주민주도의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돌봄·교통 서비스 등 지역 복지문제를 마을(공동체)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 서비스 공동체 집중 발굴·육성('17년까지 100개소)

-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에 대한 복지교육을 실시, 마을 복지지도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육성·활용

* 농업기술센터, 농협이 운영하는 영농 교육시 복지사업 프로그램 추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과중
 - 복지제도 확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범부처 활용으로 지자체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부하 가중
 - * 복지에산 : ('10) 81.2조원 → ('11) 86.4조원 → ('12) 92.6조원 → ('13) 97.4조원
 - ** 복지대상자 : ('11) 13,573천명 → ('12) 14,322천명 → ('13) 17,718천명
 - *** 복지사업 : ('06) 67개 → ('09) 100개 → ('10) 106개 → ('13) 128개
 - 그러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3.12월 기준, 현원 27,040명(복지직렬 14,184명)으로 읍면동당 평균 3.2명*이 근무하는 상황
 - * '13.12월 기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1,207명(3,487개소)
 - 이에, '11.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 마련 추진
- 사회복지민원상담 업무의 환경에서 야기되는 특수성과 위험성 발생
 -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 확대와 함께 늘어난 사회복지업무 스트레스 및 인사상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소진현상 발생
 - * 사회복지공무원의 우울증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정상 판정 39%(2,248명), 가벼운 우울상태 22.9%, 중등도 우울상태는 23.7%, 심한 우울 상태는 14.2%(노동환경연구소, '13.5)
 -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체에 대한 묻지마식 돌발적 폭언과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 기물파손 피해 등 민원인에 의한 폭행과 폭언 피해 빈발
 - * '10.1~'13.3 흉기 사용 등 총 5,349건 피해상황 발생
 - 이에, '민원인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안('12.8)' 및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11.7)' 등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복지현장에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미흡
- 복지업무 다양성·복잡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기법의 활용이 요구되나, 맞춤형 교육 기회 부족
 - 특히, 읍면동장 등 복지관리자의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 * 복지담당 전문지식 부족 67% (출처 : 보건복지담당 자자체공무원 교육훈련실태 연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0)

나. 정책 과제

① 복지인력 확충 추진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담당공무원 6,000여명 증원추진('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복지직 1,177명 포함)
 -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동-시군구 기능조정 및 민간연계 강화 우선 추진
 - 기존 행정직 재배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마련(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복지분야 2년간 전보제한 등)
- 향후 복지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과 중장기 복지인력 수급계획 수립 추진
 - 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14년) 결과, 필요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담당 인력규모 산출·확정 및 단계적 충원 추진('15~'16)
 - 본청과 읍면동간·지역간 복지공무원 편차를 감안한 인력확충 및 배치방안 마련

②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장기 근무자 특별승급 확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부여, 전보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인사상 우대 추진
- 개인정보 신변보호를 위한 공용이동전화 지급 등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복지직공무원의 전산망 권한 확대 등 협업 환경 조성
 -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복지사업 시기 분산 등 업무처리시기 탄력성 확대
- 신규직원 선 교육후 배치, 사이버 강좌 개설, 부처합동 집합교육, 동장 등 기관장 교육 실시(연 2회) 등 복지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
 - 2~3년차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 교육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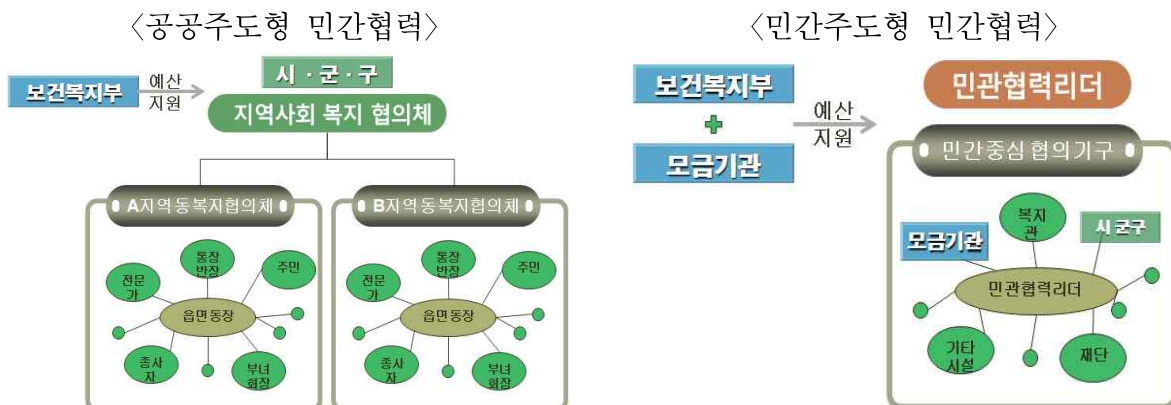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이를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관 협력 활성화·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반 확대 필요
-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따라 자율적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므로 이에 맞게 체계화된 모델제시 등 필요
- 기부금,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
- 현행 법률은 나눔 관련 사항을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분산 규정하여, 다수법률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총괄적 기능 미흡
- 아직까지 감성적·일회적 나눔에 그치는 등 생활 속 나눔 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으며, 재능나눔, 생명나눔 등 새롭게 부각되는 나눔형태를 반영하는 규정이 미비
- *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0.9%로 미국(1.98%)의 1/2 수준

나. 정책 과제

1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가 중심의 공공주도형, 지역사회 리더역할을 하는 민간기관 중심의 민간 주도형 등 민관협력 모델을 두 가지로 유형화('14년 시범사업 실시)
- 여러 부처의 지역조직화 사업수행기관과 연계·협력 추진
- * 안행부(주민자치회, 마을기업), 국토부(마을만들기) 등



- 민간협력 우수사례 적극 발굴·포상, 정부합동평가의 민간협력 활성화 평가지표* 변경 등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률 → (변경안)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실적, 민간자원 확보 실적 등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 보건·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 등도 협력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 참여 범위를 사회보장 전 분야로 확대

- 장기적으로 복지관련 주요 사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지원을 위해 각종 법정 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 등)와의 통합운영 검토

-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분과* 활동의 활성화 추진

* 통합사례·서비스분과, 저소득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여성가족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보건의료분과, 자활(노동, 고용)분과 등

③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나눔기본법」 제정하여 나눔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산재된 나눔정책의 체계적·통합적 추진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 기부금품 관리감독 강화, 정보공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

- 기부금품 사용행위까지 검사범위 확대 및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역을 나눔포털 및 국세정보통신망에 통합 공개

-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 강화

- 기부자 예우 강화, 기부금품 모집 네거티브제(원칙허용, 예외금지) 도입 및 기부금품 사용행위에 대한 검사, 정보공개 등 투명성 제고

- 나눔단체를 총괄 담당하는 별도 독립기구 설립 및 법인설립 관련 요건·절차 개선 방안 장기 검토

* (영국 자선단체위원회 The Charity Commission) 자선단체의 공익성을 심사하고 등록·관리하는 의회 산하기관으로 자선단체 명단 및 회계보고서 공개

④ 나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다양한 계획기부(Planned Giving)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잠재적인 기부수요가 실제 기부로 실현되도록 유도
 - * 미국, 캐나다의 “Charitable Gift Annuity”, 계획기부의 형태로 시행 중
- 개인 및 기업의 자원봉사, 금품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기업-정부-NGO 파트너십 강화, 사회공헌 정보 제공 강화 및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 사회공헌활동을 마일리지화 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점수를 공공시설 이용, 가맹점 할인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정·보상 시스템
- 나눔교육 전문교육장 운영, 전문강사 양성,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NPO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나눔교육 인프라 구축
- 유공자 포상, 분기별 나눔인 선정, 유산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서비스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경쟁체제 형성은 여전히 미흡
 - 제한된 소비자 선택권 및 가격결정구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비대칭 현상발생
 - *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 부족, 제공기관 선택의 지역적 제한, 서비스 단가의 통제로 가격 경쟁이 불가능, 본인부담금 과소하여 품질향상 노력 부족 등
 - 고용지속성 등 자생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미흡*한 실정
 - * 사회적기업과 유사사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간 지원체계의 개별적 도입에 따라 통합·연계체계 미흡 및 비효율성 문제 발생 등
- 지역 및 민간의 자체사업 기획역량 부족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사회 서비스 발굴이 미흡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업이 각 사업별로 개별법에 근거해 품질관리 추진 한계
 - 평가기관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표준성 미비로 분야별 관리 편차가 존재하고, 서비스별로 공개여부 및 범위가 다르고 불충분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

< 복지부 소관사업 평가 현황 >

구분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전자바우처	보육
평가방법	평가(의무)	평가(의무)	평가(의무)	인증(신청)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평가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위탁)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위탁)	한국보육진흥원(위탁)
정보공개	우수(A) 등급 공개(보도자료)	전기관 영역별 수준 공개(홈페이지)	최우수, 우수, 보통(A, B, C) 공개(홈페이지)	전기관 영역별 점수 공개(홈페이지)
평가지표 (13년 기준)	6개 영역 60~100개 지표	5개 영역 98개 기준	6개 영역 48개 지표	5~6개 영역 55~75항목

나. 정책 과제

①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양적 확대 유도

- 사회서비스 가격결정권한을 공급자에게 부여하여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및 제공지역 제한을 완화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의 구축 및 충분한 시장수요 형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
 - * 가격, 공급조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공급자 지원 및 확대 유도
 - 사회서비스 이용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비스 대상 계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필요(needs)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지향
 - 사회서비스 제공범위의 시·도 제한 점진적 완화 및 기초 지자체 사업의 자율적인 통합 여건 마련

②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

- 사회서비스 R&D 내실화, 사회서비스 창업경진대회 등 신규 사업 발굴 노력 강화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기능을 융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ICT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효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 * 아동과 부모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 돌봄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결합 등
-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강화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주기적 전문교육 시행,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역량 강화 지원
 -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구 또는 별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지자체 컨설팅 실시
-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및 공급을 위한 기획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유도

③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 사회복지관, 일선 전담 공무원 등 지역사회기반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재조직화
 - 사회서비스를 공동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한 신뢰관계 및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자치형 사회서비스 공급 촉진
- 마을단위의 공동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사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등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공급의 상호책임성 확보
 - * 행복e음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사회복지사 및 일선 공무원 등의 절차적 노하우 공유

④ 사회적경제주체 지원을 통한 활성화 유도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간소화 및 등록제로 전환 검토, 판로지원 확대*와 지역 파트너십** 강화
 - * 공공부문의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 검토,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및 공공구매 지원센터 설치 등
 - ** 대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자금, 컨설팅 등), 복합공간(판매·홍보·교육 등)설치 등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정부조달 입찰시 가점부여,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등) 개발, 기존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추진
 - 다년간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추진한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지역 내 맞춤형 사회 서비스 개발 및 시행기반 마련을 위한 위탁사업 추진

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감독 강화 및 수요자 선택에 의한 경쟁 촉진
 - 사회서비스 유형별 품질최저기준 마련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관리체계 구축
 - *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필요 시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 시행,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포털 활용 및 서비스 대상선정 통보 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 최소한의 사전적 품질보장장치로서 제공기관에 대한 합리적 등록요건 마련
 - * 등록제가 공급자 확대에는 기여하였으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저품질 서비스 제공기관 등장

V.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연차별 투자계획

2. 재원조달방안

1

연차별 투자계획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중 총 투자 규모(관계부처 제기)는 약 316.2조원으로 추계
(국비, 지방비, 기타 건강보험 재정 등)

* ('14) 48.6 → ('15) 60.3 → ('16) 65.6 → ('17) 69.1 → ('18) 72.6조원

□ 분야별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299.8조
- 일을 통한 자립지원 : 15.1조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1.3조

단위 : 조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316.2	48.6	60.3	65.6	69.1	72.6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73.0	12.7	13.8	15.2	15.6	15.7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119.8	18.1	22.9	24.8	26.3	27.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72.8	9.3	14.2	15.5	16.2	17.6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34.2	5.7	6.4	6.8	7.5	7.8
일을 통한 자립지원		15.1	2.6	2.8	3.0	3.2	3.5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3	0.2	0.2	0.3	0.3	0.3

※ 구체적인 투자계획 규모는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재정당국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소요재원은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
 - 기존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 마련
 - △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를 추진
 - △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적 동의 등 여건 성숙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검토
 - 사회보장정책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 부담 측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정책 수용도 제고

《참고. 외국 사회보장세》

- (프랑스) 프랑스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금 성격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세법이 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사회보장세 납부
 -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 등에 사회보장세 부가
 - 일반사회보장세, 사회부채상환세, 2% 사회세
- (일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국민들이 내고 있는 소비세 5%를 '14.4월 8%, '15년 10%로 단계적 인상
 - 소비세를 확대하는 경우, 확대된 재원은 사회보장의 목적에 사용됨을 법에 명시하고 회계상에 명확하게 구분계리

【복지지출 현황 및 전망】

* 자료 : OECD STAT(2013.11월)

- ① (지출수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6%로써('09년), OECD 평균(22.1%)과 단순비교하면 약 43% 수준

<복지지출의 국제비교(GDP 대비 %, 2009년)>

구분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9.6	29.8	32.1	27.8	22.2	24.1	19.2	22.1
사회복지지출	10.5	30.2	32.4	29.0	23.0	25.0	19.5	22.7

- * (용어) 공공사회복지지출 :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복지서비스 등) +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 : 공공사회복지지출 + 법정민간지출(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등)
- * (참고1) 매년 추계하여 격년으로 OECD 제출('10년, '11년치를 '14년초 제출 → '14년 하반기 OECD 공표)
 - ☞ '10년 기준 추계결과 :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9.2%, 사회복지지출 10.2%
 - ☞ '11년 기준 추계결과 :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9.1%, 사회복지지출 10.4%
- * (참고2) OECD에서 자체 추정된 잠정치(홈페이지 게시)
 - ☞ '12년 기준 잠정치 :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9.3% (사회복지지출은 자료 없음)

- 그러나, 제도성숙도, 고령화율 고려 시 선진국과 단순비교는 어려움

- * 공적연금지출(GDP 대비 %, ()안은 연금제도 도입연도, 2009년 기준) :
 (韓) 2.1(1988년), (英) 6.2(1908년), (스웨덴) 8.2(1913년), (日) 10.2(1939년), OECD 평균 7.8

- 같은 고령화율(11.8%, '12년) 시점을 기준 시, 주요국 수준에 보다 근접

<고령화율이 같은(11.8%) 시점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비교년도	2012	1984	1989	1994	1993
공공사회복지지출(%)	9.3	13.2	11.0	15.3	20.9

- ② (증가속도) 최근 9년간('00년~'09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OECD평균 보다 2배 빠른 속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OECD 평균
연평균증가율	14.7	7.3	7.1	4.4	4.1	2.8	7.2

- ③ (향후전망)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2040년 미국·캐나다 수준(19%), 2050년에는 OECD 평균 수준(22%)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의 OECD 주요국 지출수준 도달 시점>

한국 지출수준(시점)	19%(2040년)	22%(2050년)
'09년 유사수준 국가	미국·캐나다	OECD 평균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부록. 과제별 소관부처

I.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I - 1.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1.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1-1. 임신·분만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①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복지부	1-1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복지부	1-2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복지부	1-3	
②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복지부	1-4	
1-2.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①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난임부부 지원	복지부	1-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부	1-6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복지부	1-7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복지부	1-8	
③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복지부	1-9	
④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새아기 장려금 지원	기재부	1-10	
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1.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복지부/교육부	1-11	
②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복지부	1-12	
2-2.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			
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복지부	1-13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복지부/고용부	1-14	
③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개선	복지부	1-15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1-16	
④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복지부	1-17	
2-3.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양육 지원			
①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	1-18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여가부	1-19	
③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확대	교육부	1-20	
④ 유보통합 추진	국조실/복지부/ 교육부	1-21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3-1. 청소년의 종합적 역량 개발 지원

①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 교육 제공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배치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부 문체부 교육부	1-22 1-23 1-24	
②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전용인프라 확대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가족중심 여가문화 활성화	여가부 안행부/교육부/ 문체부	1-25 1-26	
③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 학업 지원	여가부/교육부	1-27	
④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여가부/복지부 교육부/복지부 여가부	1-28 1-29	

3-2.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

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교육부	1-30	
②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복지/교육/안행/ 경찰청 환경부	1-31 1-32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 학생안전지역 지정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재발방지 제도 강화	교육부 안행부 여가부	1-33 1-34 1-35	

3-3. 아동권의 보호 및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①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 확대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 활성화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복지부 문체부	1-36 1-37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복지부	1-38	
③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보호 관련기관 통합·조정 및 지자체 책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1-39 1-40 1-41	

I - 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1.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복지부	2-1	
②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2-2	
③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	복지부	2-3	
1-2.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복지부	2-4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2-5	
③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복지부	2-6	
④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2-7	
1-3.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기능 강화 생활체육 지원 강화	문체부	2-8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실시	복지부	2-9	
보건소 기능 강화	복지부	2-10	
② 건강 위해요인 관리 강화 금연정책 강화	복지부	2-11	
주류에 대한 규제 강화	복지부	2-12	
4대 중독 예방 및 통합적 관리	복지부	2-13	
③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	복지부	2-14	
④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환경부	2-15	
⑤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부	2-16	
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① 진료비 지출제도 개편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복지부	2-17	
②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	2-18	
③ 건강보험 재정지출 모니터링	복지부	2-19	
1-5. 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① 현대화된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복지부	2-20	
② 응급의료체계 개선	복지부	2-21	
2. 주거안정 대책 강화			
2-1.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			
① 렌트푸어 지원 확대	국토부	2-22	
② 하우스푸어 지원 강화	국토부/금융위	2-23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2-2.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2-24	
②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 주거급여 확대	국토부	2-25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국토부	2-26	
③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국토부/기재부	2-27	
④ 고령자 특성에 맞는 노년기 주거지원	국토부	2-28	
⑤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교육부	2-29	
3.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3-1. 교육비 부담 경감			
①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부	2-30	
②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2-31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	2-32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	교육부	2-33	
3-2. 통신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 낮추기			
① 통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미래부	2-34	
② 통신비 지원 확대	미래부	2-35	
③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산업부	2-36	
3-3. 서민 금융부담 완화			
①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지원	금융위	2-37	
②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	2-38	

I - 3.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1-1.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①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3-1	
②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복지부	3-2	
1-2. 국민연금을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보장			
①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내실화	복지부	3-3	
② 저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부/복지부	3-4	
취약계층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복지/고용/기재	3-5	
③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복지부	3-6	
1-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①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복지/고용/ 금융위	3-7	
②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고용부/기재부	3-8	
③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금융위/기재부	3-9	
④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3-10	
2.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2-1. 노인 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복지부	3-11	
② 고령화 대비 노인의료체계 구축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복지부	3-12	
급성기 이후 노인의료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3-13	
요양병원 서비스 수준 향상	복지부	3-14	
2-2. 노인 안전관리 및 돌봄 체계 마련			
①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복지부	3-15	
②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복지부	3-16	
③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	복지부	3-17	
④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보훈처	3-18	
3.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3-1. 자기주도의 은퇴 후 준비 지원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① 노후생활 설계 강화	복지부	3-19	
② 평생학습 기회 확대	교육부/고용부	3-20	

3-2. 생산적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자원봉사 기회 확대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복지부	3-21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복지부	3-22	
재능·경력활용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문체부	3-23	
②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			
노인여가 인프라 구축	복지부	3-24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3-25	

I - 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1.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1. 저소득 가구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①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복지부	4-1	
② 빈곤정책 대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복지부	4-2	
1-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①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복지부	4-3	
②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담당공무원 재량 확대, 긴급지원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	4-4	
③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복지부	4-5	
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2-1.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①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복지부	4-6	
②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고용부	4-7	
③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 장애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부	4-8	
전공과 확충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확대	교육부	4-9	
④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복지부	4-10	
2-2.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①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복지부	4-11	
②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4-12	
③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 장애학생 학습 지원	교육부	4-13	
장애인 문화예술·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문체부	4-14	
④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복지부	4-15	
BF인증 활성화 위한 무장애시설 확대	복지부/국토부	4-16	
⑤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복지부	4-17	
⑥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복지부	4-18	
3.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3-1. 농어촌 소득보장 기반 강화			
① 농지연금 보장 확대	농식품부	4-19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②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농식품부	4-20	
③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특례 확대	복지부	4-21	
④ 연금·건강보험료 등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복지부/농식품부	4-22	

3-2.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①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			
불량·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식품부/산업부	4-23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육성	농식품부	4-24	
② 농어촌서비스여건 개선 및 기반 확충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농식품부	4-25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농식품부/교육부	4-26	
농촌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지원	농식품부/문체부	4-27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4-28	
③ 노인,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강화			
공용이용시설 조성 확대	농식품부	4-29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양육지원	농식품부	4-30	
취약가구 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농식품부	4-31	
④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보완 및 관리강화	농식품부	4-32	

4.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4-1.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

①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4-33	
② 자녀 교육지원 확대	여가부/교육부	4-34	
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여가부/교육부	4-35	

4-2.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① 자녀양육 부담 경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	4-36	
지역사회 한부모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4-37	
②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여가부	4-38	
③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강화	여가부/복지부	4-39	

4-3.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체계 강화	여가부	4-40	
②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법무부	4-41	

4-4. 노숙인 예방 및 재정착 지원

①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강화	복지부	4-42	
② 의료 지원 강화	복지부	4-43	

II.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1.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1-1.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①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고용부	5-1	
‘스펙초월 멘토스쿨’ 확대	고용부	5-2	
②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안행/고용/복지	5-3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실시	기재부/고용부	5-4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산	고용부/기재부	5-5	
③ 청년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청	5-6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고용부	5-7	
1-2.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① 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기회 확대	교육부	5-8	
②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교육부	5-9	
③ 일학습병행제 추진	고용부	5-10	
④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교육부/고용부	5-11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2-1.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용부	5-12	
② 육아휴직제도 개선	고용부	5-13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5-14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가부	5-15	
⑤ 유연근무 확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용부	5-16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미래부	5-17	
2-2. 경력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①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리턴아카데미	고용부/여가부	5-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 다변화	여가부	5-19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5-20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부/미래부	5-21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5-22	
3.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3-1. 정년 60세 조기 안착			
①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고용부	5-23	
② 정년연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고용부	5-24	
3-2. 퇴직 후 재취업 지원			
①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고용부	5-25	
②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고용부	5-26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확대	보훈처	5-27	
4.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4-1.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			
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고용부	5-28	
② 적정 최저임금 수준 마련 및 준수	고용부	5-29	
③ 저임금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5-30	
4-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①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기재부	5-3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복지부	5-32	
②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 확대	고용부	5-33	
③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통합 전달체계 구축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	고용부/복지부	5-34	
④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직접일자리 사업 통폐합 및 조정·연계	고용부	5-35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재편	고용부/복지부	5-36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	복지부	5-37	

Ⅲ.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1-1.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① 사회보장정책 운영방향 수립	복지부	6-1	
② 사회보장제도 유사 중복 조정 등 효율화 추진 신설 변경 제도 사전협의의 조정 방안 마련	복지부	6-2	
현행 복지사업 연계 조정방안 마련	복지부	6-3	
③ 부정수급 예방체계 구축 부정수급 총괄 부서 운영 등 인프라 확대	복지부	6-4	
④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강화	복지부/고용부/ 교육부	6-5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①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효율화 지원	복지부	6-6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반 조성	복지부	6-7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복지부	6-8	
1-3.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① 자주재원 확대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기재부/안행부	6-9	
② 국가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 제고	기재/복지/안행	6-10	
③ 중앙-지방간 합리적 기능조정	안행부/복지부	6-11	
1-4.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복지부	6-12	
② 직역연금제도 합리적 개선	안행부	6-13	
2.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1.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① 동(洞)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부/안행부	6-14	
②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복지부/농식품부	6-15	
2-2.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개선			
① 복지인력 확충 추진	안행부/복지부	6-16	
②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안행부/복지부	6-17	
2-3.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①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6-18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비고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복지부	6-19	
③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복지부	6-20	
④ 나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복지부	6-21	

2-4.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①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양적 확대 유도	복지부	6-22	
②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	복지부	6-23	
③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복지부	6-24	
④ 사회적경제주체 지원을 통한 활성화 유도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고용부	6-25	
협동조합 인센티브 강화 등 활성화 유도	기재부	6-26	
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복지부	6-27	